

<2024 역사학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자료집>

1920년대 말 일본육군의 군제개혁과 조선군 편제개정 검토

이민성(건국대학교)

1. 머리말
2. 1920년대 말 국제정세와 조선군 사단증설 논의
 - 1) 중국 정세 변화와 조선군 사단증설 시도의 무산
 - 2) 조선군 증병 대책과 만주·조선의 군사적 위상 변화
3. 일본육군 군제개혁과 조선군 편제변화 추이
 - 1) 하마구치 내각의 성립과 군제개혁 추진
 - 2) 조선군 군비정리 및 편제변화의 추이
 - 3) 고사포대의 평양 설치와 국경 헌병대 증강 실현
4. 조선 재향군인 중심의 '치안유지'와 부대유치 움직임의 변화
 - 1) 재향군인 중심의 '치안유지' 대책
 - 2) 부대유치 운동세력의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패전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이하, 조선군)' 잔무정리부(殘務整理部)는 『조선에서의 전쟁준비(朝鮮に於ける 戰爭準備)』에서 총동원체제 이전 조선군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고 구분하였다. 우선 "조선방위"였다. 영역 내의 치안을 확보하고 주요도시 및 요새에 대한 방공(防空)·전비(戰備)라는 의미였다. 다음으로는 "대소련작전이 발생할 경우 관동군의 작전계획에 즉각 대응"하고 "병참·교통계획 중에서 조선이 부담하는 양말(糧秣) 등을 운반"하는 것이었다.¹⁾ 전시체제가 본격화하기 이전 조선군의 임무는 대략적으로 영역 내의 '치안유지'와 '대륙침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륙침략'에 있어 조선군의 작전계획 준비가 관동군에 '대응'하는 예비적 차원으로로서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제국주의 일본, 특히 일본육군의 조선 주둔과 대륙침략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군사적 가치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식민지화 이래 조선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은 영토였다. 제국 일본 방위의 제일선(第一線)이고, 동시에 대륙침략의 첨병이었다. 일본육군은 이러한 군사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조선에 제19·20사단과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확장을 실현하고 군사적 요청지를 장악하였다. 조선군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가능하게 한 무력적 토대로서 치안유지와 함께, 대륙침략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맡은 식민기구였다.

일본육군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군사시설 확장과 더불어, 대륙으로의 침략을 위한 부대편성을 이어갔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의 만세운동과 일본 정부의 통치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 주둔 일본군은 치안유지라는 명분으로 사단 편성 기간을 앞당기는 결정과 더불어 고정원(高定員) 제도를 통하여 병력 증강을 꾀하였다. 게다가 제1차 대전 이후 군비감축에 대한 세계적 사조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육군은 식민지 조선에 항공부대를 증강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

1)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於ける 戰爭準備』, 1946.02

나갔다. 특히 사단 편성기간의 단축, 고정원 제도와 별개로 조선군 항공부대의 편성과 확장은 중국 정세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목표 의식 아래 이루어진 군비확장 정책이라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전자의 두 조치는 치안유지의 맥락에서, 후자 항공부대 배치는 대륙침략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더불어 조선군은 1926년부터 일본육군의 동원계획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즉, 1920년대 조선군 편제는 제국방위에서 대외출병에 맞추어 변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일본육군은 중국 정세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직접 군사 개입을 시도하였다. 조선군도 제20사단 병력 일부를 파견하였다. 다만 파병은 임시적이었다. 정세에 따라 철병 여부가 항시 논의되었으며, 긴장이 지속되었다. 만주 일대에서 일본의 권익감소 우려도 나타났다. 조선 입장에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일본육군에 대해서는 군비감축이 계속되었다. 세계적 군비감축 사조와 관동대지진, 대공황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우회 내각의 대외적 강경기조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였으나, 1929년 성립된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내각은 여전히 군비정리에 관한 방침을 유지하였다.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육군 대신은 군제조사회를 조직하고, 군비정리를 추진하였다. 군비의 확장·정리는 사회적 차원의 영향 혹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을 불러올 것이기도 했다.

1920년대 말 일본육군의 군제개혁과 조선군의 편제변화 논의,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조선군이 치안유지에서 국경수비 강화, 만주 일대 파급력 확대로 대륙침략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임종국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군벌의 충돌과 통합 이후 국민혁명군 장개석의 북벌, 그 사이에서 장작림과 일본의 복합적 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 관동군 등 만주 주둔 일본군이 주도한 봉천군벌 '장작림 폭살사건'의 전말과 만주사변 도발까지 다루어 제국일본이 만주 특수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²⁾ 일본육군 연구에서도 이 시기는 만주사변 전사(前史)라는 측면에서만 주목받았다.³⁾ 이후 1920년대 중반 조선군의 주요 임무가 대륙침략 방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연구⁴⁾, 혹은 전환의 기점을 중일전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⁵⁾ 정리하면, 만주사변 직전 일본육군의 마지막 군비축소 과정에 조선군의 편제변화는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부대 유치청원을 포함한 조선 지역사회의 맥락 또한 마찬가지다. 군사적 차원에서 대륙의 국제적 정세에 따라 제국 차원의 조선·만주의 군사적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편제변화 논의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만주사변 이전 마지막 군비감축 과정에 이루어진 조선군 편제 개편논의 방향과 실현, 이를 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국 차원에서 대륙침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의 조선군의 위상, 그리고 복합적으로 전개된 사회적 움직임을 살피겠다.

2)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I』, 일월서각, 1989.

3) 藤原彰·서영식 역, 『日本軍事史 上』, 제이앤씨, 2013;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戦史叢書(99) 陸軍軍戦備』, 朝雲新聞社, 1979.

4)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22;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5) 조건,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5.

2. 1920년대 말 국제정세 변화와 조선군 사단증설 논의

1) 중국 정세 변화와 조선군 사단증설 시도의 무산

본 장은 하마구치 내각 성립의 배경으로서 중국 정세의 변화, 조선 사단증설 시도의 무산과정을 다룬다. 이에 조선군 증병의 대안으로 검토된 내용을 통하여 조선과 만주에 대한 제국차원의 위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국일본은 육군 6개 대대를 만주에 파견한 이래로 일본 거류민 보호와 철도 수비라는 명분 아래 만주 특수권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대륙에서 여러 군벌세력이 대두하였다. 군벌의 충돌과 이해집산은 일본의 만주 특수권익 유지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⁶⁾ 특히 1926년 장개석과 국민혁명군이 대두, 일명 북벌의 시도는 일본 영사관과 거류민, 해군 육전대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이를 ‘남경·한구 사건’이라고 한다. 여당 정우회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외무대신의 ‘협조외교’를 ‘굴욕’이라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1927년 4월 20일 정우회 총재로 영입된 다나카 기이치가 새롭게 내각을 수립하였다.

다나카 내각은 만주 주둔 관동군 일부를 산동성 일대에 출병하여 대륙정세에 대응하였다. 제1차 산동출병이었다. 1927년 5월 28일의 일이었다.⁷⁾ 다만 출병 계획은 초기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다나카, 군부의 신중론 때문이었다. 본토 사단 포함 약 6,000명이 청도를 경유하여 내륙의 제남(濟南)까지 파견될 계획이었으나, 약 2,000명의 만주 주둔군만 동원되었다. 제남 진출도 철회되었다.⁸⁾ 강경책을 요구한 것은 여당 정우회였다. 정우회 소속 외무차관 모리 카쿠(森恪)는 만주 일대의 권익 침해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기 원했다. 「대지정책강령(對支政策綱領)」을 통해 ‘동란(動亂)이 만몽(滿蒙) 지역에 파급되어 일본의 만주권익이 침해될 것 같다면 일본 정부는 누구든 권익을 단호하게 방호’한다고 하였다. 봉천 총영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내각 방침이 정우회 편중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정우회의 강경론은 확고했다.⁹⁾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국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가 조선사단증설을 실현하고자 했다. 총독은 육군 군비확장에 대한 식민지의 ‘자발적 여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여론 구축 과정에 반발여론은 검열하고, ‘내선융화’를 강조했다. 사회 일반이 제국의 군사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심지어 총독은 지역사회 유력자, 특히 평양의 부대 유치운동 세력에 개입했다. 총독은 파편화된 지역의 부대 유치운동의 노선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선(全鮮)’을 표방한 군비확장 여론을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총독의 ‘조언’에 따라 ‘조선병비충실기성회’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식민지의 ‘자발적’ 군비확장 요구 여론, 육군·다나카 총리의 호응으로도 조선 사단증설은 실현할 수 없었다. 재무당국 및 여·야당 정치세력은 한 목소리로 조선사단증설을 반대했다. 재정부담 때문이었다.¹⁰⁾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요구한 정우회의 반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 초 총선거에서 야당 민정당에 사실상 대패하였기 때문에 조선군 증병은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¹¹⁾

6)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朝雲新聞社, 1979, 쪽.

7) 小林道彦, 『近代日本と軍部 1868~1945』, 講談社, 2019, 380쪽.

8) 藤原彰·서영식 역, 『日本軍事史 上』, 제이앤씨, 2013, 235쪽.

9) 小林道彦, 2019, 382쪽. 이를 계기로 정우회 내부의 분규가 일어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등 자유주의파와 모리 카쿠 등 관료파의 대립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10) 이민성, 「1928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성격」, 『한국문화』 9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11) 1928년 2월 2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우회는 중의원 217석을 얻었다. 제1야당 민정당은 216석을 얻었다. 사실상 여당 정우회의 패배였다(衆議院·參議院 編, 『議會制度百年史 帝國議會史 下卷』,

조선군 증병에 대한 여·야 정치세력의 반대 이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다. 야당 민정당은 군비감축이라는 세계적 사조, 그리고 재정정리 필요를 내세웠다. 정치적으로 문화정치에 근간을 둔 조선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여당 정우회는 세수 증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였다.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어 “인망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정우회 입장은 선거 패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우회는 대외적으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의심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¹²⁾ 대외적 강경론을 내세워 산동출병을 강행하였던 입장이 전환된 것이다.

정우회 입장 전환에는 1928년 초 선거 패배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 상황, 특히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1928년 4월 이래 재개된 국민혁명군의 북벌로 인하여 일본 여론은 격앙되었다. 산동성 거주 일본인 거류민 보호가 관건이었다. 정우회는 ‘거류민 생명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 파견을 주문하였다. 결국 ‘내지’ 사단이 출병하여 양자 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¹³⁾ 국민혁명군은 일본의 침략을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제남을 벗어나 북벌을 지속했다. 일본은 ‘거류민 생명재산 보호’보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만주권익 침해’를 우려해야 했다.

다나카 내각은 국민혁명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봉천군을 회유, 본래 주둔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만주권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해관 방면에서 국민혁명군 및 봉천군 모두의 무장해제를 예고하였다. 만주 진입을 막고 일본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발표였다. 봉천군 장작림은 일본과 협의하여 봉천으로 후퇴하였다. 그런데 관동군은 별개의 계획을 수립·실행했다. 장작림을 살해하고, 아들 장학량을 옹립하여 만주를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¹⁴⁾

1928년 6월, ‘장작림 폭살사건’이 발생하였다. 관동군의 장작림 살해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장학량은 예상과 달리 국민당과 타협하였다. 만주에는 중화민국 청천백일기가 게양되었다. 무력에 의한 만주 직접 장악이라는 관동군 계획이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¹⁵⁾ 국제사회 비판까지 더해졌다. 군부는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행하였다. 강경파 대부분은 요직에서 배제되었다. 우가키 가즈시게 등 비교적 온건파가 육군 중앙을 장악하였다. 즉, 정우회의 강경론은 1928년 이래 정치적 열세 및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¹⁶⁾ 조선군 증병이 “일본의 영토적 야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건 이후 다나카 내각은 대중국 협조외교를 개시하였다. 조선군 증병 실현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륙 정세와 제국의 입장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선병 비충실기성회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의 군비확장 여론은 세계대전의 발발을 바라는 것과 같은 극단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기성회 간담회에 참여한 와타나베 사다이치로(渡邊定一郎)는 중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군비감축은 서

1990, 191~192쪽.)

12) 「朝鮮警備充實에 民政黨側은 絶對反對」, 『中外日報』, 1928.06.25.

13) 小林道彦, 2019, 388~389쪽.

14) 藤原彰·서영식 역, 2013, 235~236쪽; 小林道彦, 2019, 392~394쪽.

15) 藤原彰·서영식 역, 2013, 238쪽. 장작림 폭살을 주도한 고모토 다이사쿠 대령과 다르게, 관동군 수뇌부는 그를 철수시킨 이후 일본의 괴뢰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모토 대령은 상부 방침과 다르게 직접 그의 폭사와 더불어 직접 출동을 통한 점령을 피하였다고 한다. 조선군 파병 공병 제20연대가 장작림 폭살에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동군과 조선군은 군사활동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藤原彰·서영식 역, 2013, 236쪽; 김상규, 2022, 99~100쪽.).

16) 小林道彦, 2019, 393~395쪽.

구 열강의 술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구의 백색인종에게 압박 받는 동양 10여 억의 유색 인종을 위해서 조선에서의 군비확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¹⁷⁾ 그럼에도 이러한 ‘인위적’ 여론에 대한 실상은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었다. 언론은 “조선에 증사문제가 일어나도록 총동한 것은 조선 각지에 산재한 일본인”이며, 그들의 목적은 “조선의 경비를 충실”히 하는 것보다, “물자적 이익”이라고 비판하였다.¹⁸⁾ 결국 조선을 대표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노골적 전쟁정책, 군비확장 요구는 국제정세와 내각의 정책기조 전환으로 성취될 수 없었다.

2) 조선군 증병 대책과 만주·조선의 군사적 위상 변화

1928년 7월 야마나시 조선총독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쿄에 건너가 다나카 총리대신과 군부 당국을 찾아 사단의 증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나카 내각의 외교방침의 전환과 여야 정치 세력의 변화로 실현이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조선에 독립수비대를 설치하거나, 혹은 경찰관을 증원하자는 요구였다.¹⁹⁾

먼저 독립수비대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총 6개 대대를 북부와 남부 지역에 나누어 배치할 계획이었다. 각 대대는 매년 2개 씩 설치하여 1931년까지 완비를 예정하였다. 건축비 등 임시비 총액은 약 800만 엔, 6개 대대의 경상비는 약 300만 엔이었다. 내년도 경상비는 약 90만 엔, 임시비 할당액은 약 300만 엔으로 계상하였다. 각 대대를 나누어 배치한다는 분산 방침을 취하였으며, 조선군 증병의 명분은 조선의 ‘경비’였다. 군비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야마나시 총독과 육군 측은 사단의 증설 대신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한 독립수비대 안건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찰관 약 1,000명 증원의 명분도 “사상취체와 치안유지”의 “구급책”이었다. 조선군 증병은 ‘치안유지’ 차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음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육군성의 방침이다. 1928년 5월 25일 작성된 「昭和4年度予算編成方針の件」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육군성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성은 기본적으로 ‘중요정책’으로 선정된 것들 외에 신규 사업 요구는 국한하도록 입장을 정하였다. ‘중요정책’ 외에 책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극력 긴축방침”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규 요구사업의 추진비용만 하더라도 예상 재원보다 수천만 엔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축으로 줄어든 비용을 신규 ‘중요 정책’으로 전환하여 충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하였다.²⁰⁾

한편 육군의 군비확장 계획에는 조선군 증병과 더불어 만주 독립수비대의 증설 문제가 포함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시라카와 요시노리 육군대신은 다나카 총리와 조선 증병 문제에 대하여 일단 보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군 증병 문제는 ‘내지’ 사단의 이전이 아니라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재정문제로 인하여 보류해야 했다. 다만 만주 주둔 독립수비대 신설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이것이 조선군 증병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 협의하였다. 제국 차원에서 대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 만주를 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²¹⁾ 결론적으로 두 계획 모두는 보류되었으나, 조선 문제는 경비 차원

17) 이민성, 2019, 71~72쪽.

18) 「朝鮮에 増師할 必要가 잇나」, 『中外日報』, 1928.06.25.

19) 「山梨總督の要求を容れ獨立守備隊六大隊常設, 南北朝鮮各六ヶ所に配置, 三ヶ年の繼續事業として本年内に二ヶ大隊, 來年度陸軍豫算に計上す」, 『朝鮮時報』, 1928.07.05.; 「조선에 설치할 독립수비대 3개년 계획의 예산안이 대장성에 제출되었다」, 『中外日報』, 1928.07.04.; 「山梨 총독의 초조, 増師운동에 실패하고, 다시 당면의 구급책이란 이유로, 경관 천명 증치에 분주」, 『中外日報』, 1928.07.04.

20) 「昭和4年度予算編成方針の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819100、密大日記 第4冊 昭和3年 (防衛省防衛研究所)

21) 「朝鮮増兵은 保留기로 決定」, 『中外日報』, 1928.07.07.

으로 인지되어 총독부 예산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²²⁾

육군이 군비확장의 중점을 조선보다 만주에 두기 시작한 판단은, 7월 말 미나미 지로 참모차장의 발언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미나미 참모차장은 조선을 거쳐 만주로 넘어가는 길에 언론과 만나 자신의 용무와 국제 정세, 그리고 조선군 증병문제에 대하여 발언했다. 부산을 거쳐 특급열차로 북행, 경성에서 2일 간 머문 후 봉천·여순·청도·제남을 시찰하고 돌아올 일정이었다. 미나미는 자신의 용무가 군 중앙의 의견을 만주 일대의 군부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장학량과 회견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개석의 남군 병력 감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중국 주둔 일본군의 병력을 한동안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 대륙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미나미는 조선군 증병 문제에 선을 그었다. 대륙 정세에도 불구하고 조선군 증병은 불가능했다. 조선군 증병 문제는 총독과 조선 내 유력자에 의한 진정이 있었으나, 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미나미가 조선군 증병이 ‘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조선군 증병의 근본적 원인이 “경비문제”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나미는 통치 책임자인 총독이 결정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게다가 “산업입국(産業立國)”을 중시하고 있는 오늘날 증병의 실현은 용이하지 않으리라 하였다.²³⁾

육군 중앙은 대륙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것은 중국 주둔 일본군의 증병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인지하였다. 조선군 증병 요구는 “경비문제”를 위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때문에 경비문제는 육군이 아닌 총독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육군의 군비확장이 조선보다는 만주·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조선총독, 그리고 조선 내 유력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육군당국은 조선군 증병보다 만주 주둔군의 증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각의 정책기조 전환과 더불어, 육군 중앙의 군비확장 방침의 우선순위도 만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3. 일본육군 군제개혁과 조선군 편제변화 추이

1) 하마구치 내각의 성립과 군제개혁 추진

1929년 7월 2일 다나카 내각의 총사퇴와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이 성립되었다. 다나카 내각의 총사퇴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장작림 폭살사건’ 사후대책에 대한 천황의 불신임, 그리고 야마나시 조선총독이 연루된 뇌물 사건(1928년 7월 조선총독부의옥사건) 등 여러 의옥사건이 발생하여 정우회 내각에 대한 신뢰가 다방면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민정당 총재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의 주요 인사는 대장대신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와 외무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육군대신 우가키 가즈시게 등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표방한 ‘이노우에 재정’,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제협조를 주장한 ‘시데하라 외교’의 전환, 그리고 육군 내 온건파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우가키 가즈시게의 육군대신의 취임이 내각 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기조는 육군, 특히 관동군의 폭주를 막으면서 육·해군 군비정리를 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시데하라 외무대신 주도의 국제 협조 아래 세계 무역시장으

22) 「朝鮮軍充實計畫, 財源難で遂に斷念, 警備力の充實については總督府で考慮する」, 『京城日報』, 1928.07.25.; 「朝鮮軍備充實計劃 財源難으로 斷念 警備力の 充實에 對하여는 朝鮮은 單獨히 考慮, 『每日申報』, 1928.07.26.; 「朝鮮常備軍의 明年度實現は財源捻出困難」, 『朝鮮時報』, 1928.07.27.

23) 「朝鮮兵力充實은 難問」, 『中外日報』, 1928.07.31.

24) 北岡伸一, 『日本の近代5 - 政党から軍部へ 1924~1941』, 中央公論新社, 2013, 117쪽. 다나카 기이치는 9월 29일 협심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다. 이누카이 쓰요시는 다나카를 이어 정우회 총재를 맡게 되었다.

로의 복귀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중시하였다.

하마구치 내각은 만주에 대한 배타적 권익장악을 관철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입장에서는 중국 전체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무역을 신장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산업을 합리화하여 일본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금 해금 정책과 국제 금본위 체제로의 복귀를 통하여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무역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행·재정정리와 긴축재정 방침은 그 기초적 수단이었다. 육·해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노우에 대장대신은 “자신과 우가키, 시대하라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육군의 폭주는 있을 수 없다.”고 자신하며 긴축재정을 예고하였다.²⁵⁾

하마구치는 취임 후 시정방침에서 10대 정강을 발표하였다. 대체로 민정당의 기본입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군비정리 관련 내용은 ‘군축의 촉진’과 ‘재정의 정리긴축’을 꼽을 수 있다.²⁶⁾ 우가키 육군대신도 비공식적으로 육군 군비정리를 단행하겠다고 하였다. 군비정리 및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는 군제조사회(軍制調査會)를 설립하였다.

우가키는 이미 한 차례 육군대신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 1925년 ‘우가키 군축’으로 불리는 육군의 대규모 군비정리를 시행한 주체이기도 했다.²⁷⁾ 그는 ‘현재 육군의 난국은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입각(入閣)하였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군비정리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며 사단의 대륙방면으로 이주, 근위사단과 교육총감부 폐지, 항공전력과 화력 보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육군의 대규모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만 하마구치 내각에서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²⁸⁾

우가키 군제개혁 구상에서 조선군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내지’ 사단을 대륙방면으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래 만주 방면 주둔 일본군의 규모는 6개 독립수비대와 함께 1개 주차(駐箭) 사단이 위치했다.²⁹⁾ ‘주차’는 ‘내지’의 병력을 주기적으로 교대하여 주둔하는 방식이다. 일본육군은 ‘주차’ 방식으로 ‘한국주차군’과 ‘조선주차군’을 운영한 바 있었고, 이를 상설사단으로 바꾸었다. 즉, 우가키의 만주 ‘주차’사단 상설화는 조선 상설사단의 설치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내지’ 사단의 이주 또한 조선사단 증설 방법으로 검토되었던 방안이었다. 우가키의 계획은 조선사단의 증설 시도이력을 참고하여, 일본육군의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며 질적 측면에서의 군비확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군비확장의 방편으로 채택된 만주 주둔 일본군의 증강은 곧, 조선군이 만주에 비해 제국 차원의 대륙공세를 위한 거점으로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제국차원에서 대륙 공세의 최전선으로 만주가 주목받았다. 조선의 군사적 가치는 제국의 방위 거점, 혹은 경비 문제를 포함한 치안의 유지 차원이 중요했다. 물론 이것이 조선군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국 방위 거점으로서 조선의 ‘안정’은 곧 조선군이 만주 주둔군과 협응하여 중국·소련 등 대륙 정세에 대처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이전 조선군의 임무에 대하여 “관동군의 작전계획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완비하는 것이었다는 지적은 이러한 1920년대 말

25) 小林道彦, 2019, 400~401쪽.

26) 衆議院·參議院 編, 『議會制度百年史 帝國議會史 下卷』, 1990, 236~237쪽.

27)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시기 육군대신으로 입각한 우가키는 육군 4개 사단의 삭감을 관철하고 그 비용은 군비 근대화에 쏟고자 하였다. 사단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군인에 대한 취직을 위하여 중학교에서 교련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총동원체제 구축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영기간을 2년 반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총동원의 배경으로서 예비 병력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北岡伸一, 2013, 151쪽.)

28) 北岡伸一, 中央公論新社, 2013, 164~165쪽.

29) 山田朗 저·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어문학사, 2019, 182쪽.

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제국 차원에서 조선과 만주의 군사적 위상 조정이 곧 조선군의 역할 축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역으로서 조선은 군사적으로 '제국 방위'의 거점으로서 중요해졌다. 제국 상황의 변화는, 기존 일본 육군의 군비확장 기조에 편승하여 부대 유치를 요구했던 조선 내 유력자 집단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가키의 계획은 1925년 추진된 '우가키 군축'의 맥락과도 연결된다. '우가키 군축'은 평시 육군 20개 사단 중에 '내지' 사단 4개를 폐지하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병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병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재영기간, 복무기간을 줄여 비공식적인 예비 병력의 숫자를 늘이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른바 예비역, 당시로는 재향군인(在郷軍人)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재향군인은 평시 사회질서 유지나 치안유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쟁이 발발 시에는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³⁰⁾ 우가키는 대륙 사단을 이주와 동시에 재영기간을 단축할 구상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우가키 군제개혁의 항공전력 보강 문제에 관해서 조선군 관련 사항은 '우가키 군축' 당시 「對空防禦機關に關する研究」에서 언급된 고사포대(高射砲隊)의 설치를 주목할 수 있다. '우가키 군축'에서 새롭게 도입이 시도된 대공방어기관의 하나인 고사포대는 대공조명대, 공중장애물 중에서 "밤낮으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공부대의 주력"으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육군은 세계열강의 항공전력 및 대공방어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고사포대를 꼽았다.³¹⁾

다만, 과거 1920년 제1차 대전의 교훈을 배경으로 성립된 국방비조차 그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전쟁에 본 무대인 유럽에 위치하지 않아 군사기술의 진보에 뒤쳐졌다."면서 1920년 국방비 성립이후 '야마나시 군축'과 '우가키 군축' 과정에 예산 실행이 뒤로 밀리거나, 삭감되었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가키 군축' 당시 고사포대 신설을 포함한 항공·전차 등 신병기 채용을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조차 삭감과 순연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었다.³²⁾ 즉, 1920년대 일본정부는 관동대지진·대공황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하였고, 대신 장비 개선을 '계속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완비는 미루어지고 있었다. 우가키는 일시에 단행된 비용 감축과 장비 개선의 지속적 지연으로 인한 육군의 불만 축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29년 하마구치 내각에서의 우가키 군제개혁은 완전히 새롭게 수립된 것이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 군축을 목적으로 한 비용정리와 함께 편제개편이 소규모나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927년 평시편제 개정 8회, 1928년 4회, 1929년 3회 등 장비개선과 군비정리가 이루어졌다.³³⁾ 우가키는 다만 그 방향과 속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며 대륙 방면에 대응할 전력을 갖추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가키는 군제조사회 개최와 함께 '군국 장래를 위한 최선의 방책 입안'과 '제국 현하의 사상과 산업, 재정을 고려하여 국군 제도시설에 근본적 개선정리 연구 및 심의'를 주문했다. 제국 일본이 처한 국제정세와 긴축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군사 시설의 경제화와

30) 전시 예비 병력이자 사회 통제의 기간으로 주목받은 재향군인은 조선에서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1) 「對空防禦機關に關する研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0073308300、大正13年3月制度調査に關する書類 共5 . 其2 . 制調資料 (防衛省防衛研究所)

32) 「過去に於ける軍備と國家財政との關係」, 『時局兵備充實の急務』, 1933, 86~99쪽(「過去に於ける軍備と國家財政との關係」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120934400、時局兵備充實の急務 (防衛省防衛研究所))

33)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1979, 118쪽.

능률화, 기술적 충실 등을 주문하였다.³⁴⁾

이후 1931년 4월 군제조사 결과 군제정리안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5월 군비개선안이 결정되어 구체안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단의 경량화, 그리고 잉여 재원을 통한 기계화 병단 설치 및 항공대 증설 추진이었다. 1개 보병 사단은 본래 2개 여단, 각 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1개 사단은 4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개편하여 1개 사단을 3개 연대로 구성하는 3단위 체제의 사단경량화를 계획하였다. 이를 경사단(輕師團)이라고 한다. 경사단 체제 개편으로 과거 폐지되었던 4개 사단이 복구되어 총 20개 경사단을 구축하고, 전국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 중에는 3개 사단을 조선과 만주, 대만에 두기로 하였다.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육군 내부의 자원 마련을 통해 추진한 계획으로, 3개 사단을 조선과 만주, 대만에 각각 두는 계획을 수립하여 천황에게 상주할 예정이었다.³⁵⁾ 다만 이러한 군제개편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규모와 더불어 전략 단위 개편, 사관구 변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 저하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정세는 비상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우가키의 군제개편의 실행은 보류되고 말았다.

2) 조선군 군비정리 및 편제변화의 추이

1920년대 전반을 거치며 육군 군비정리 및 군제개편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우가키 군제개혁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이에 1920년대 말 육군 차원에서 자체적 군비절감과 더불어 대장성을 통한 육·해군 국유재산 조사와 비용정리에 관한 의견이 중앙에 제출되었다. 국유재산 조사와 비용정리 의견 대상에는 식민지 조선 또한 포함되었다. 대장성은 육·해군이 보유한 조선 내 군용지를 조사하고 비용정리 의견을 제출했다. 대장성의 비용정리 의견은 조선군 군비정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었다.

1929년 1월 대장성은 表조선(제1반) 실사위원 大口喜六 남작 池田長康, 裏조선(제2반) 실사위원 藤田四郎 河野秀男을 조선에 파견하여 육·해군 소관 건물 및 군용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특별위원장 자작 青木信光에게 제출되었다.³⁶⁾ 대장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육·해군 국유재산은 마산 중포병대대 기지부터 시작하여 대구의 제80연대, 대전 제80연대 제3대대 등 보병부대 기지와 숙소 등 조선 전체에 분포하였다. 그 범위는 예하 기지, 숙소뿐만 아니라 조선군사령부와 조선헌병대사령부와 휘하 각종 여단·연대 건축물과 연병장 등 각종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리의견이 제출되었다.

일본육군의 조선 내 소유 재산에 관한 대장성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사위원은 대체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지 대부분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군용지가 많았기 때문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게다가 방치되어 있는 군용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대전연병장은 9,756평에 해당하는 부지 대부분을 수전(水田),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작 연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평수는 670

34)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1979, 119쪽. 다만 육군은 우가키의 군제개혁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마구치 내각의 우가키가 정당 친화적인 입장에서 군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와 같이 군비정리를 관철한 후 정당 총재로 영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과거 육군의 핵심 인물이었던 다나카 기이치는 정우회 총재로 영입되어 총리대신까지 지낸 바 있었다. 우가키 군제개혁에 대한 의심은 우가키가 “육군을 정당정치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자아냈다. 우가키는 군제개혁 목적이 기술적 개선에 있으며, 경비 절감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小林道彦, 2019, 408쪽.).

35) 小林道彦, 2019, 409쪽.

36) 「朝鮮所在主要國有財産實地調査報告書」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8072095600、昭和財政史資料第3号第28冊(国立公文書館)

평에 불과했다. 조선육군창고 평양지창은 군용지 4만 1,151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평수는 772평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약 2% 미만 에 불과했다. 나머지 98%에 달하는 군용지 중에 약 3만 평, 72% 정도는 민간에 경작지로 대부(貸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평양부 산수정(山手町)의 육군 군용지는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평양공회당 및 도로, 소학교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면 모두 잡종 재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군용지가 시가지를 끼고 있거나, 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 판명되는 경우 토지를 이전 매매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본 대장성 조사에 따르면 육군 소관 조선 내 군용지 대다수는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필요한 토지보다 과대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용지 대다수는 대장성 조사결과 비용정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정리와 별도로, 1920년대 말에는 ‘우가키 군축’ 과정에 계획되었으나 계속하여 미루어지고 있었던 조선군 편제개정이 추진되었다. 조선군 고사포대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사포대는 일반 항공부대의 운영과 다르게 방공(防空),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병기로 등장하였다. 기존 보병을 상대로 하는 야포병의 운용과는 그 내용이 달랐다. 이에 1924년 고사포대 도입 논의와 1929년 조선군 고사포 부대의 평양 부설 과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24년 2월 22일 육군 군비개선을 위해 조직된 제도조사위원회는 「고사포대신설안(高射砲隊新設案)」을 작성하였다. 일본육군의 군비정리와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적 개선 시도에 따라서, 확보 재원의 일부를 방공시설인 고사포대 설치에 투입하고자 한 것이다. 고사포대 설치의 취지는 “장래 전투에서 적의 공습을 받을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주요도시의 대공방어를 위해 고사포대가 필요하였다. 기존 편제에 야포병연대가 존재하였으나 고사포대의 편제방식과 교육, 용법은 모두 야포병과 취지가 달랐다. 따라서 고사포대는 야포병연대에 부설하지 않고, 독립부대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 설치지역은 ‘내지’와 조선의 요지였다.³⁷⁾ 1923년 육군이 조선 내 방공을 맡은 지역은 진해·마산·부산, 경성, 평양, 원산, 신의주였다.³⁸⁾ 고사포대 설치 근거가 ① 도시방어 ② 비행부대와 연합 연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 조선 고사포대 설치가 유력한 지역은 ① 경성(용산) ② 항공부대 주둔지 평양이었다.

언론은 고사포대의 설치 목적과 주둔 지역을 전망하였다. 일본 본토에서는 후쿠오카, 도요바시, 시모시즈, 도쿄 중 2개 지역에 설치될 것이며 부대 규모는 약 1개 대대가 될 것으로 보았다. 유력한 곳은 도쿄와 하치오지(八王寺) 부근, 도요바시 시외가 꼽혔다. 일본 본토 주요도시 에 고사포대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본 것이다.³⁹⁾

『경성일보』는 조선군 고급참모 오카의 말을 빌려 고사포대의 설치 취지와 제원 등을 전망하였다. 고사포는 적 공군 방어용으로서, 구경 7.5cm 양각(仰角) 80도 제원의 유효 사격거리 8,000에서 1만 미터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고사포 종류에 대해서도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조선은 이동식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선 내 유력한 설치지역으로는 용산을 꼽았다. 설치 명분으로는 조선이 “대륙과 접하는 공계(公界)에 가장 위험이 많아” 특종 포대 설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제국 방위의 제일선으로 조선의 군사적 가치를 주목한 것이다. 고사포 부대가 용산에 설치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로는 야포병연대가 유일하게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고사포 1개 연대가 설치될 것이라는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

37) 「高射砲隊新設案」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0073310000、大正13年3月 制度調査 に関する書類 共5 . 其3 . 幹事会議案 (防衛省防衛研究所)

38) 「陸海軍防空協定の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2030152900、大正12年 「軍事機密 大日記 3/6」(防衛省防衛研究所)

39) 「飛機に備へる高射砲隊設置」, 『朝鮮新聞』, 1925.01.05.

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후에도 언론은 여전히 용산 제26야포병 연대에 고사포대 부설을 예상하였다.⁴¹⁾

육군 제도조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고사포대 설치안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규모와 편제, 주둔 기준이 조금씩 변하였다. 1924년 3월 20일 회의에서는 초기 신설안과 달리, 고사포대 1개 대대에 2개 중대를 편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이를 조선에 배치한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4월 17일 회의에서는 고사포 2개 대대 신설로 그 규모를 늘리고, 1개 중대를 조선 야포병대에 부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대대 편제도 3개 중대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다. 부대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야포병과 고사포병의 편제와 훈련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독립부대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본래 독립대 편제의 고사포대 일부를 야포병연대 부설로 조정했다고 보인다. 이후 고사포 1개 대대에 4개 중대를 편제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조선 야포병대에 고사포 1개 중대를 부설(附)하는 의견 자체는 유지되었다.⁴²⁾

언론이 고사포대의 설치 지역을 용산으로 판단한 근거는, 조선의 유일한 야포병연대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야포병연대 부설 고사포대 또한 용산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중요한 도시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위치한 경성 인근에 고사포대가 설치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육군도 본래 용산 주둔 야포병 제26연대의 고사포대 부설에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다. 1925년 작성된 「大正14年軍備整理要領、同細則制定の件」를 보면 별도의 언급 없이 고사포대가 용산 주둔 야포병 제26연대에 부설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편성 순서는 1930년(大正 19) 1월에 대부분 부대 편성을 마치고, 다음해 1월에는 이를 완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⁴³⁾

1929년 4월 경 일본육군은 평시편제개정을 통하여 조선군 고사포대 주둔 지역을 경성(용산)에서 평양으로 변경하였다. 1920년대 후반 대륙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국 차원에서의 지정학적·군사적 판단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4월 평시편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1929년도 예산 성립에 따른 개정 ② 1928년 사단장(참모장)회의 제출사항 및 특검검열사 통첩사항에 따른 개정 ③ 성부(省部)간 의견에 따른 개정으로 나눌 수 있다.⁴⁴⁾ 고사포대 배치 변화는 ③ 성부(省部)간 의견에 따른 개정에 속했다.

평시편제개정의 요지에는 조선군 고사포대 배치 지역의 변경이유가 평양 항공부대와 연합연습이라고 기재되었다. 고사포대 설치의 두 가지 이유, 주요도시 방어와 항공부대와 연합연습을 두고 본래 경성(용산)에 부설될 예정이었던 고사포대를 평양에 분둔(分屯)한 것은 설치 이유 중에 전자보다 후자가 더욱 중요해진 것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제국 차원에서 방위를 고려할 때, 용산(경성)보다는 대륙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평양에 고사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 개편은 아니지만 일본육군,

40) 「敵機の來襲に備へる龍山に新設の高射砲隊、眞上の飛行機も難なく射撃出来る當分野砲隊に併置か」, 『京城日報』, 1925.03.29.

41) 「敵機撃退の高射砲隊、龍山砲兵隊に増設」, 『京城日報』, 1926.03.27.

42) 「高射砲隊新設案(修正案共)(第2修正案共)」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0073296300、大正13年1月 制度調査に関する書類 共5.其1 制調.制調議案(防衛省防衛研究所)

43) 「第1号 參謀本部 大正14年密受第137号大正14年軍備整理要領、同細則制定の件(1)」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51859900、大正11年乃至同15年 軍備整理關係綴陸軍省(防衛省防衛研究所)

44) 「陸軍平時編制中改正の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840100、密大日記 第1冊 昭和4年(防衛省防衛研究所)

그리고 조선군은 점차 대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편제가 조정되고 있었다.

편제개정 결과 고사포대의 평양 설치를 위한 구체안이 마련되었다. 전국 야포병연대 병졸 1명을 감축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평양 고사포대는 하사 6명과 상등병 10명, 1(2)등졸 62명, 計手 1명을 편성하며, 야포병연대 소좌를 고사포대장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야포병연대는 용산 주둔 제26연대로 생각된다. 편제 착수는 기존 계획이었던 1930년 1월에서 1929년 12월로 당겨졌으며, 즉각 간부 중심으로 부대를 신속히 창설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 5년 이후 첫 편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바와 달랐다. 신설로 인해 감축되는 병졸도 1929년 12월 정리했고, 다음 해 1월 병졸 일부를 투입하였다. 이어서 1930년 12월, 1931년 1월 나머지 간부와 병졸 모두가 합류하여 고사포대 신설을 완료할 것이었다. 편성은 용산 제26야포병연대장이 맡았다.⁴⁵⁾

게다가 1929년 4월 평시편제 개정에는 만주 주둔 독립수비대 2개 대대를 증설과, 관동헌병대 및 관동 위수병원 인원을 증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군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1920년 말 제국 차원에서 만주와 조선의 군사적 위상 변화와 연계 강화를 감안하면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된다. 특히 만주 주둔 수비대는 앞서 조선 사단증설과 함께 논의되었던 내용이었다. 조선 사단증설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만주 주둔 수비대는 2개 대대의 증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륙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만주가 군비확장의 우선수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편제개정 요지에 따르면 독립수비대 2개 대대 증설 이유는 “만주에 있는 철도 수비력의 증대”였다. 중국 유화정책과 협조외교가 시도되고 있는 중에도, 만주 주둔 일본군은 일본의 권익수호와 즉각적인 대륙 정세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병력 증강을 실현할 수 있었다.

4. 조선 재향군인 중심의 ‘치안유지’와 부대유치 움직임의 변화

1) 재향군인 중심의 ‘치안유지’ 대책

긴축재정 방침 아래 조선군은 만주에 비하여 군사적 위상이 밀려나는 상황 속에 전면적 병력 증강은 어려웠다. 대신 1925년 계획되었던 고사포대 설치를 실현하였다. 대신 용산 주둔 계획을 평양으로 변경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주요 도시 방어보다, 제국 차원에서 항공부대 연합 연습 및 방공이 중요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조선 내에서는 재향군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의 사상취체 등 ‘치안유지’와 제국 방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조선군은 이를 발판으로 대륙 정세에 개입하는 만주 주둔 일본군에게 호응할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 차원에서 이러한 제국의 방위와 치안 유지를 위한 비용정리에 대상이 되었던 것은 조선보병대였다. 조선보병대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사실상 전투병이 아니라 의장대 명목으로 이왕가(李王家) 호위를 위하여 남아있었다. 조선보병대는 당시까지 창덕궁 경호를 맡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보병대 경비 절약을 위하여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선보병대 감축은 조선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다. 총독부는 조선보병대 병력 감축이 불려올 수 있는 치안·사상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많은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고 협의를 요청했다. 조선군사령관은 보병대 감축이 조선통치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92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보병대 대다수 감축이 이루어졌다.⁴⁶⁾

45) 「昭和4年陸軍平時編制改正要領同細則の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84020
0、密大日記 第1冊 昭和4年(防衛省防衛研究所)

46) 「朝鮮歩兵隊編制改正の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843600、密大日記 第1冊

조선보병대는 조선인 사회에서도 싸우지 않는 평화 부대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야기되었던 부대였으나, 이들 병력 감축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다.

조선군은 조선보병대 병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더불어, 조선보병대 장교 중에 아직 위계를 받지 못한 장교들에 대한 서위(敍位)를 상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대전(御大典)을 명분으로, 위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 장교 31명에 대한 회유·포섭 정책을 취하였다. 서위에 대한 명분은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조선사회에 대하여 “협력일치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였다.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인 장교에 대한 서위를 통한 포섭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무위(無位) 상태의 조선인 장교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데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자신들이 생활난에 빠져있는 상황에 서위를 하사받은 조선인 장교들의 감상은 “분에 넘치는 광영으로서, 성은이 황송함에 그저 감읍”한다는 등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나타냈다.

한편 이들은 서위 하사에 대하여 “재향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한다며 감상을 전했다. 이들이 이야기한 조선 사회에서 조선인 장교 “재향군인의 본분”은 무엇일까. 조선인 장교의 서위에 대한 또 다른 감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감상에 따르면 “조선인 학생과 청년 중 시정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많”고, 이들이 시정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는 “구한국시대의 악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선인 장교들은 “재향군인의 본분”으로서 조선사회의 통치를 곤란하게 하는 학생·청년 계층에 대한 사회적이고 사상적 통제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군의 사회통제와 협력·포섭 시도, ‘일시동인’과 ‘협력일치’라는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는 조선 재향군인의 다짐은 1920년대 말 제국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조선에 대한 사상·치안 방면의 방위 달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긴축재정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의 경비문제를 육군 차원의 군비확장이 아니라 재향군인에 중점을 맞추어 달성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조선인 재향군인 외에도, 식민지 조선의 재향군인 전반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1928년 9월 20일 조선군 및 제19사단과 제20사단에서 작성된 평시편제 개정에 관한 의견⁴⁷⁾을 보면, “재선(在鮮) 재향군인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여, 제19사단 수비관구에는 약 6,000명이고 제20사단 수비관구에는 약 2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분회의 숫자만 하더라도 “제19사단 49개, 제20사단 254개에 달한다.”고 보았다.

재향군인이 평시 사회 통제와 전시 예비 병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숫자의 재향군인은 예비 자원으로서 활용이 여지가 적지 않았다. 조선군은 “조선의 위치상 이들 재향군인의 지도는 국방상은 물론, 조선의 통치상 산업의 개발과 치안유지와 사상선도를 위하여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예비자원으로서 재향군인을 활용하여 제국 방위문제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치안유지 및 사상 선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조선군은 조선총독부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고, 당국은 조선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선내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1929년부터 우선적으로 계상하겠다고 협의하였다. 즉, 조선사회에 대한 치안·경비와 사상통제의 자원으로서 재향군인의 활용도를 총독부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군이 재향군인 활용을 강조한 이유는 “재선사단은 작전계획상 응급동원을 완비”해야 한

昭和4年(防衛省防衛研究所)

47) 「平時編制の改正並に在鮮師団歩兵の1年半在營2期入營制に関する意見提出の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831000、密大日記 第4冊 昭和3年(防衛省防衛研究所);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주둔일본군의 陸軍 兵事部 설치와 역할」, 『한국근현대사연구』67, 한국근현대사연구, 2013, 422쪽.

다는 것 때문이었다. 1926년 조선군이 일본육군 동원계획에 포함된 이래로, 중국 대륙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소련의 만주 진출 우려 등을 포함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은 제국 방위에 있어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면서, 만주 방면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일본군과 즉각 협력할 수 있도록 “응급동원 완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조선군은 조선인 장교 등을 활용하여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정 규모에 도달한 재향군인 숫자를 활용하여 조선 통치안정과 사상 선도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숫자에 비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할 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평시편제에 개정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늘어난 숫자에 비하여 이들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했다. 사단참모장 및 연대장이 재향군인 관리를 겸임하였다. 각 사관사령부 내에서 연대구사령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단사령부의 중좌 1인, 대위 2인, 하사 7명이었다.

조선군은 연대구사령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구사령부에 준하는 조직을 두 곳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본래 연대구사령부가 담당하는 징병사무와 평·전시 소집사무, 재향군인의 복역 및 소집사무를 맡은 기관이나 인원을 배속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게다가 교련을 위하여 학교에 배속되는 장교 또한 늘어나고 있었다. 다음 해 4월 총독부는 학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사실 청년훈련소 개수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었다. 교련 등을 맡을 장교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연대구사령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들은 “군무 관계상 지남”함이 과하다고 호소하였으며, “병사사무를 전임할 기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기도 이북 4개 도는 경성, 경기도 이남 4개 도는 대구에 연대구사령부에 준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사단사령부에 인원을 증가배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조선군의 재향군인 관리 기관 및 인원 배속에 관한 의견은 1928년 9월 ‘평시편제 개정’에 기재된 것이다. 이는 다음해인 1929년 4월 육군 평시편제 개정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상술한 고사포대 배치 변경과 동일한 자료 중 ‘1928년 사단장(참모장)회의 제출사항 및 특명검열사 통첩사항에 따른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제19사단 사령부에는 서기 1명을 판임문관으로, 제20사단 사령부에는 서기 3명, 판임문관 1명 증가” 배속하도록 결정되었다.

경성·대구에 연대구사령부에 해당하는 기구 설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늘어나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도와 조선사회 통제에 대한 일정한 조치로 생각된다. 실제로 편제개정 중 판임문관 및 서기 증가배속의 이유는 “조선 및 만주 병사사무 취급”을 위해서 “하사 판임문관 사령부 배정”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병사사무 취급, 즉 연대구사령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 또 하나는 조선과 만주를 연계했다는 지점이다. 결국 1920년대 말 제국 차원에서 조선과 만주의 군사적 위상 변화와 더불어, 각 방면의 주둔군 역할이 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정책도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재향군인을 활용한 조선사회 통제와 회유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는 대외침략에 호응하기 위한 조선군의 ‘응급동원’ 완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대유치 운동세력의 변화

제국 차원에서 조선과 만주의 군사적 위상이 변화하고, 각 지역의 주둔군 역할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선 사회의 대응은 달라졌다. 단순히 육군 군비확장에 편승하여 부대 유치운동 등을 시도한 지역에서는, 조선군 증병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하마구치 내각 성립 이래로 육군성 정무차관 미조구치 나오요시(溝口直亮)은 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2개 사단을 정리하거나 복무기간 단축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신규 계획은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육군성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감봉 문제뿐이므로 조선에서 군부 관계로 일이 일어난다면 긴축일 것이며 다만 국경의 경비충실만 긴요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⁴⁸⁾ 조선 사단증설 문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였다. 여전히 육군성은 약 400만 엔의 예산으로 독립수비대의 분산배치 가능성만 점치고 있을 뿐이었다.⁴⁹⁾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은 제국 차원에서 더 이상 대륙침략의 최전선이 아니었다. 조선보다는 만주 주둔 병력의 증강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이에 관동군 주차 사단을 상설사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내지' 사단을 폐지하는 방법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조선군은 사단 혹은 기병여단 이주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었으나 대체로 만주 독립 수비대와 비슷한 역할의 보병대대를 신설하는 차원만 가능했다. 총독부 순사를 줄이고, 그 비용은 헌병 증치에 투입하는 안건도 논의되었다.⁵⁰⁾ 조선의 군사적 문제는 제국의 '방위'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있었다.

현실적 조건이 변하면서, 이전부터 조선군 증병에 적극적 지지여론을 보내며 부대 유치운동에 나섰던 지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평양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대구에서는 오구라 다케노스케 등 유력자 집단이 조선 남부를 대표하는 명의로 조선군사령관 척식대신을 대상으로 진정에 나선 바 있으나, 대구부 일반 주민들은 "심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⁵¹⁾ 이에 대구청년단(大邱靑年團) 등의 단체가 일반 주민의 태도에 격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의안을 기초위원이 작성하여 이것을 경북도내 청년단에 비격(飛檄)하고 일층 결속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근간 청년단 주최의 부민대회를 개최하여 부민을 편달"하겠다는 것이었다. 청년단 주도로 경북 일대를 결속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부민을 편달하겠다는 이야기는 조선군 증병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감을 얻었다고 보인다.

평양도 마찬가지였다. 평양은 과거 조선병비충실기성회의 조직을 주도한 지역이었다. 또한 여전히 병비충실을 위한 사단증설기성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대구부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조선군 증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역 현안에서 조선군 증병에 대한 기대와 부대 유치운동의 우선순위를 미루었다. 따라서 평양의 사단증설기성회가 "대부분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기성회 자금 약 1,000엔이 남아있었으나, 이는 만포진선 속성 운동비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른 지역 현안에 부대 유치운동이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다.⁵²⁾

반대로 과거에 비하여 호남 일대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의 재부임과 더불어, 남선 일대의 사단증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된다. 1931년 9월 5일 전남 순천에서 조직된 순천군영설치기성회(順天軍營設置期成會)는 서병규(徐丙奎)외 포함 12인의 명의로 내지 사단의 이주를 자신들의 거주지에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였다.⁵³⁾ 이에 따르면 순천은 남선 지방에서 경부선과 호남선 중간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48) 「朝鮮増師見込なし軍制整理も未だ決せず、來年度豫算は大緊縮、於釜山溝口政務次官談」, 『朝鮮時報』, 1929.10.27.

49) 「朝鮮増兵問題 獨立守備制?」, 『中外日報』, 1930.06.28.

50) 「朝鮮軍 兵力増加, 調査種目の大要」, 『朝鮮新聞』, 1930.06.27.

51) 「部隊配置の不足は事實然し増師は困難、南軍司令官語る」, 『京城日報』, 1930.01.13.; 「南鮮各地の代表 増師問題陳情」, 『부산일보』 1면 1단, 1932.07.01.; 「師團増置에 靑年團蹶超 大邱府民의 冷靜에 債慨하야 各地에 飛檄開始」, 『每日申報』, 1931.07.01.

52) 「大同江改修期成會で來年度豫算の運動、増師期成會は解散滿浦鎮線で猛運動」, 『朝鮮新聞』, 1930.05.23.

53) 「昭和6年8月から昭和6年9月」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1469300、陳情、請願關係雜纂(雜文書ノミヲ収ム)(A.5.3.0.10)(外務省外交史料館)

여수항을 경유하여 내지로 연결된다는 점, 동으로 마산 서로는 목포와 광주, 북쪽으로는 전주 등 주요도시를 잇는다는 교통의 장점을 꼽았다. 기본적으로 조선 내의 주요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수항과 철도가 연결될 경우 경부선보다 일본 '내지'와의 거리가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산항에 대비하여, 혹 경부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여수 및 순천을 강조하는 전략으로서 생각된다. 이 밖에 기후의 온화와 더불어 해륙의 물자가 풍부하며 저렴한 점, 이미 3,000여 평의 군용지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운영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단증설의 요구는 만주사변 발발과 더불어 조선의 군사적 위상변화 아래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였다.

오히려 사이토 총독 재부임 이후 시작된 사단증설 여론은 정치적 분란을 낳았다. 척무대신은 조선총독이 병마(兵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나가이 척무대신은 총독이 조선 주둔군 증병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조선군사령관 협의 이후에 척무성에 의견을 요청할 문제라고 하였다.⁵⁴⁾ 사이토는 자신이 과거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사단증설에 대한 의견은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인데, 이를 두고 척식대신이 “군비의 문제를 요망하는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시대”인 것의 반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920년대 사이토 총독 부임 이래 사단증설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오늘날 굳이 신문 상으로 보도된 내용을 두고 척식대신이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사이토 총독은 병마에 권한은 없을 지라도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능은 있는 것 아닌가”, “시시한 이야기다.”라며 간접적으로 척식성과의 대립을 드러낼 뿐이었다.⁵⁵⁾

5. 맺음말

본 글은 1920년대 말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제국 일본 차원의 정치·군사적 변화를 검토하고,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군사적 위상 변화와 더불어 조선군·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만주 일대에 독립수비대를 파견한 이래로 배타적 특수권익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군벌세력의 대두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정우회 내각의 등장과 산동출병은 이러한 만주 일대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회 내각은 장작림 폭살사건을 계기로 무너졌으며, 민정당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이 출범하였다. 같은 시기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는 식민지 여론을 등에 업고 다나카 총리대신과 육군의 비호 아래 조선 사단증설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조선 사단증설 계획은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실패하였으며, ‘치안유지’ 차원의 조치만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만주 방면의 일본군 증병은 조선에 비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하마구치 내각은 1920년대 지속되어 왔던 긴축재정과 국제협조를 정강으로 내세웠다. 육군 또한 우가키 주도의 군비정리와 개선이 군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여전히 1920년대 계획되고 미뤄진 정리와 개선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육군의 의심과 불만이 축적되고 있었다. 우가키 군제개혁은 과거 조선사단의 증설을 참고하여, 군의 비용증가를

54) 「總督からは要望の權能なし南鮮増師説につき、松田拓相語る」, 『朝鮮新聞』, 1930.06.27.; 「南鮮増師説は一向聞いて居ぬ、(松田拓相語る)」, 『경성일보』, 1930.06.27.; 朝鮮總督은 増兵要望의 權能없다, 『中外日報』, 1930.06.27.

55) 「古い話で今更ら要望, したことはないと齋藤總督語る」, 『朝鮮新聞』, 1930.06.27.; 「増兵必要 事實로 認定, 問題は 經費」, 『中外日報』, 1930.06.28.; 「經費關係上 事實不能, 南司令官談」, 『中外日報』, 1930.06.28.

최소화하고 질적 차원에서 군비확장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은 대륙공세의 거점으로 제국 차원에서 만주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조선군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국 방위라는 차원에서 조선은 여전히 중요했고, 한편으로 만주 일대의 전시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동원' 계획도 완비되어야 했다.

제국 방위라는 차원에서 조선군 편제는 고사포대의 평양 설치로 현실화되었다. 본래 고사포대는 독립대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며, 경성(용산) 야포병 제26연대에 부설될 것이었다. 그런데 1925년 계획이 1929년 수정되어 평양으로 나누어 주둔하게 변화하였다. 평양 주둔 항공부대와와의 연합연습을 고려한 것이었다. 대륙으로의 공세, 혹은 대륙에서의 제국 방위가 중요해지면서 식민지 조선의 주요 도시로서 평양에 고사포대를 두는 쪽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한편 대장성 차원에서 조선군 군비정리의 예비단계로서 국유재산 조사와 비용정리 의견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1920년대는 일반적으로 군축의 시대로 불리운다. 다만 조선군은 군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정원 제도, 국경수비 강화, 항공대 증설 등의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이 되면 대장성은 국유재산 조사를 통하여 조선군 운용지 대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수용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군비정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륙 정세 변화, 그리고 조선·만주의 군사적 위상 변화 속에 조선군은 가능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선보병대 등을 축소하고, 재향군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제를 꾀하였다. 이에 조선인 장교에 대한 서위가 이루어져 조선 사회에 대한 회유·포섭 정책이 이루어졌고, 약 3만 1,000명의 조선 내 재향군인 지도와 관리를 시도하였다. 재향군인은 평시 사회의 치안과 사상을 통제하고 전시에 예비 병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이들을 관리할 인원이 없어, 사단사령부 장교가 겸임하고 있었다. 늘어나는 학교와 청년훈련소 숫자에 비하여 조선군 장교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선군은 육군 중앙에 재향군인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연대구사령부 등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1929년 4월 각 사령부에는 서기 및 판임문관이 추가로 배치되어 병사사무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군이 만주방면의 전시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응급동원' 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제국 차원의 변화가 조선의 식민권력과 지역사회 부대유치 운동세력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군 증병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육군 군비확장이 만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실적 조건은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구와 평양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부대유치에 참여한 지역이었으나, 증병 가능성의 하락은 관심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평양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사단증설기성회를 해산하기도 했다. 반면 호남 일대에서는 사이토 총독의 재부임으로 남선 사단의 이주 등을 기대하며 청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선 사단의 증설은 어려웠으며, 오히려 정치적 분란을 낳았다. 조선의 사단 증설 문제는 총독의 권한 문제로 불거지며 척식성과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사이토 총독이 "시시한 문제"라며 물러서는 모양새였으나, 병마의 문제는 곧 통수권(統帥權)에 관한 사항으로 이후 제국일본에 적지 않을 파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

「1920년대 말 일본 육군의 군제개혁과 조선군 편제개정 검토」 토론문

김상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발표문은 1920년대 말 일본 육군의 군제개혁에 따른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개정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조선 주둔 일본군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시기로 언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강제병합부터 삼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탄압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시기, 둘째, 인적·물적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전시체제기를 강조한 시기입니다.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삼일운동 이후 중일전쟁 사이의 시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시기상의 공백을 메우는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1920~30년대는 조선군이 2개 사단 상주화를 완료하고 조선의 '치안유지'에서 대외침략으로 전환하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가지 의문점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에 대한 정의

서론 맨 처음 단락에서 필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을 조선군 잔무정리부가 쓴 「조선에 서의 전쟁준비」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역할을 '치안유지'와 '대륙침략'으로 단정 지어 서술하기에는 필자가 다루고 있는 시기가 1920년대 말임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조선 주둔 일본군의 '치안유지' 역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 이후 변화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중요성 혹은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군 잔무정리부의 정의보다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훈령이나 작전 계획 등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내렸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1920년대 후반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 변화가 중요한 이유와 군비정리, 편제변화의 내용

필자가 서론에서 밝혔듯, 1920년대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이 치안유지, 대륙침략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문의 제목이 '일본 육군의 군제개혁과 조선군의 편제개정 검토'임을 고려하면,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변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론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변화 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기 전에 왜 이 시기의 편제변화를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전에도 일본군은 중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군사개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선 주둔 일본군의 경우 군사개입에 적절한 형태로 편제가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대륙 침략을 위해 약화된 것인지, 서두에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비정리와 편제변화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전개를 따라가보면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파악됩니다. 본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선군은 사단증설을 시도하였으나 재정부담으로 실패하였고,(2장 1절), 독립수비대 형태로 요구하였으나 만주주둔군이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이었다.
- 2) 조선은 군사적 가치에서 밀려났고, 이 결과가 비용정리, 고사포대 설치와 헌병대의 증강이었다. (3장 1,2절)

여기서 보완하여 설명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조선 주둔 일본군 사단 증설의 논리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3.1운동 이후 보통경찰제가 도입되고 식민지 조선의 치안은 경찰이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사단 증설을 요구했다 정도만 서술되었을 뿐, 조선 주둔 일본군이 어떤 논리로 사단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누락되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선군 비용정리의 결과입니다. 3장 2절에서는 대장성이 조사한 조선 군용지에 대한 조사와 군비정리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의견제출, 판단까지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후 군용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사포대 설치의 의의입니다. 결국 필자가 제목부터 시작하여 논의를 전개한 ‘조선군의 편제변화’는 고사포대의 설치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사포대의 설치의 외부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방어를 위한 부대입니다. 오히려 필자의 이전 논문인 항공부대 설치와 연계가 더 큰것은 아닐까요? 즉, 군축의 흐름 속에서 사단증설이나, 군비증강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만주방면의 항공전력 확장으로 나갔다는 흐름에서 고사포대를 설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만주사변 당시 조선군은 20사단의 병력과 함께 비행대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3. 재향군인회의 문제

본 논문의 핵심 논의는 전반적인 일본 육군 차원에서의 군제개혁의 방향이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4장의 내용인 재향군인의 관리, 부대유치 운동세력의 변화는 본 논의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우선 조선보병대의 경우 193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연대구사령부’에 준하는 조직은 1928년에 제기되었으나, 이후에는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 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야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군의 영향력은 일부 있겠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어느정도 ‘치안유지’, ‘조선인 통제’의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역사학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자료집>

전쟁범죄의 처벌과 경계 넘어서기: 미국 요코하마 전범재판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준환**

1.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제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전쟁범죄'로 재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이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이라는 중요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면서, 식민지배 그 자체보다는 전쟁 시기 식민지에서의 불법적인 인적 동원과 착취의 문제가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더해,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식민지를 동원한 것은 국제법에 의거한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보편화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이 더 이상 '식민지와 제국', 양자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은 인류 보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에서의 범죄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범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세계시민법정에서 다루었던 '2000년 여성법정' 이후로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을 빌려 식민지에서의 범죄를 전쟁범죄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러한 일본 전쟁범죄의 '재발견'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비롯한 연합국의 전범재판이 종결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일본의 전쟁범죄 혹은 그것을 심판한 전범재판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이자 일본 전쟁 동원의 피해자인 한국 사회에서도 2000년대 이전까지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합국의 전범재판에서 한국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의 문제가 분절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의 범죄 혹은 식민지 민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쟁범죄'로 성립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에서의 범죄를 제한적으로 다루는 '전쟁범죄'라는 개념 속에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국민 혹은 무국적자 등에 대한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한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의 시점에서 식민지에서의 범죄를 전쟁범죄로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계를 넘어서야 했다. 첫 번째는 식민지라는 공간, 식민지인이라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경계이다. 이는 식민지가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식민지인이 일본인에 속하는지 아닌지, 일본과 식민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주권과 통치의 합법성이라는 경계이다.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 식민지인에 대한 통치는 합법적인 행위인 것인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제국 내부의 통치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해방을 전후로 한 식민지의 지위 설정

* 본 발표문은 발표자의 논문 공준환, 2024, 『아시아-태평양 전쟁 직후 미국 전범재판에서의 '정의'와 식민지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제2장 3절, 제4장 1절 및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snalekj@naver.com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문제를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후 미국의 전범재판에서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실마리를 추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반도를 관할로 하였던 유일한 전범재판소인 요코하마 전범재판이다. 물론 요코하마 전범재판에서 한국과 식민지배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요코하마 재판의 몇몇 사례들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비롯하여 식민지에서의 전쟁범죄 처벌 가능성을 논의하게 하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내 중국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다룰 세 가지 재판의 사례를 재판 자료를 통해 검토하면서 전범재판에서 다루어진 식민지 문제의 경계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요코하마 전범재판의 성격

(1) 연합국 전범재판과 미국 전범재판의 개요

요코하마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연합국이 아시아에서 실시한 하위 전범재판(minor war crimes trials)¹⁾의 일부이다. 연합국은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선언에서 전쟁 모의와 실행에 책임이 있는 주요 전범을 제외한 다른 전범들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각 국가가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전 이후 유럽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연합국은 하위 전범재판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전쟁범죄를 다루었고, 민간인과 군인 등 다양한 신분과 지위의 전쟁범죄자를 처벌하였다. 전범재판소를 통해 기소된 피고는 5,700명에 이르고 2,244건의 사건이 기소되었다.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합국 전범재판 개요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중국	계
사건 수	456	330	294	448	39	72	605	2,244
피고 수	1,453	978	949	1,038	230	169	883	5,700
유죄 수	1,176	779	646	969	198	133	504	4,405
사형 수	143	223	153	236	63	17	149	984
무죄 수	188	116	276	55	31	11	350	1,027

*출처: Piccigallo, Phillip R., 1979, *The Japanese On Trial: Allied War Crimes Operations in the Far East, 1945-1951*, University of Texas Press, p. 264; 林博史, 2005, 『BC級戦犯裁判』, 岩波新書, p. 64.

*비고: 연합국에 의해 처벌된 전범의 총 수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위 표의 수치는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戦犯裁判概史要』(1973)에 따른 것이다. Piccigallo가 제시한 다른 집계에서는 피고의 총 수를 5,573명으로 파악한다. 차엔 요시오(茶園義男)는 5,647명으로 집계한다.

1) 하위전범재판은 일반적으로 BC급 전범재판으로 불린다. 상위 재판인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평화에 반하는 죄(A급 전쟁범죄)에 혐의가 있는 주요 전범을 모아 재판을 하였는데, A급 전쟁범죄 이외의 범죄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그 이외의 전범을 ‘BC급 전범’으로 지칭하곤 한다. 전후 연합국은 BC급 전범재판 혹은 하위전범재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다만 ‘BC급 전범재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은데, 첫째 중국의 하위전범재판에서는 A급 범죄가 적용된 사건도 1건 있다는 것(중국 난징에서의 사카이 다카시[酒井隆]에 대한 재판), 둘째 BC급 전범재판이라고는 하지만 C급 범죄에 대한 단독 기소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B급 전범재판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범재판에서 B급 범죄(전쟁범죄)는 C급 범죄(인도에 반하는 죄)와 구분되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범재판을 주도하였다. 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설계하였고, SCAP 맥아더에게 전범재판의 주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주도하고자 했다. 하위전범재판에 있어서는 연합국 국가 중 가장 많은 전범을 기소(25%)하면서 전범 처벌의 의지를 보였다. 미국의 하위 전범재판은 미국의 점령지 각 지에 설치된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에서 실시되었는데, 군사위원회는 일본의 요코하마, 필리핀의 마닐라, 중국의 상하이, 태평양의 괌과 콰잘렌에 각각 설치되었다. 요코하마와 마닐라, 상하이 재판은 미 육군이 담당하였고 괌과 콰잘렌의 재판은 해군이 담당하였다. 미국 군사위원회 재판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3> 미국 하위 전범재판(군사위원회 재판)의 개요

재판소 구분	요코하마	마닐라	괌/콰잘렌	상하이
재판 시기	1945.12.~ 1949.10.	1945.10.~ 1947.01.	1945.03.~ 1949.03.	1946.04.~ 1947.07.
관할 지역	일본, 한반도, 필리핀*	필리핀	태평양 전역	중국, 대만, 만주
관할 지역 특징	미국의 군사 점령지	미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 및 일본 위임통치지역	중국 영토, 일본 점령지
재판 근거	SCAP 규정	SCAP 규정	괌 군정청 포고, 괌 형법	중국 규정
재판 관할 부대	미육군 제8군	미육군 서태평양군	미해군 괌군정청	미육군 중국 전구
사건 수	319	97	47	15
피고 수	996	215	123	75
주요 사건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 및 살해, 생체실험	연합군 포로 학대 및 현지 민간인 학살	일본에 대한 부역·협력, 인육 섭취 등 잔학행위	미군 항공기 승무원 처형 등 포로 관련

*필리핀 독립 후 마닐라에서 요코하마로 이관된 사건

미국의 하위 전범재판은 미국이 종전 이후 점령한 주요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들 지역은 필리핀과 괌과 같이 미국의 식민지, 일본과 한반도 남부, 남양군도와 같은 일본제국의 통치권역 그리고 중국 영토이지만 미군 포로 문제가 있었던 중국이다. 미국의 군사위원회 중에서도 요코하마 군사위원회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요코하마 군사위원회는 일본 본토에서의 전쟁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소였고, 미군 점령지인 한반도 남부 또한 요코하마 군사위원회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커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실시한 전범재판의 약 70%가 요코하마에서 실시되었다.

(2)요코하마 전범재판의 실시 과정

요코하마 전범재판은 미군의 일본 진주와 함께 준비되었다.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의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1945년 9월 11일 주요 전쟁범죄자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전범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체포된 이들은 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범들이었지만, 그중에는 포로 학대 등의 혐의가

있는 용의자들도 있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준비는 국제검찰국(IPS)이 맡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 기소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범들은 모두 국제검찰국의 관할에 놓였다.

반면에 그 이외의 모든 전범은 미8군의 SCAP 법무국(legal section)이 맡았다. SCAP 법무국은 1945년 10월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법무국의 주요 임무는 전쟁범죄의 조사와 전범의 기소였다. 법무국의 수장은 맥아더의 부관인 카펜터(Alva C. Carpenter) 대령으로, 그는 1945년 초부터 필리핀 전쟁범죄지부(war crimes branch)의 책임자로 전쟁범죄 조사 임무를 전담해 왔다. 법무국은 요코하마 재판 준비를 위해 산하에 검찰부(prosecution division), 전쟁범죄부(war crimes division), 변호부(defense division) 등을 설치하였다.²⁾ 법무국은 전범재판 준비를 위해 다수의 법조인을 필요로 하여 민간인을 다수 채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검찰부에는 1947년 9월 기준 26명의 장교와 50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변호사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인이었다.³⁾

당초 미군의 계획은 일본에 여러 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군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SCAP 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Trials of Accused War Criminals)>은 1945년 9월 24일에 처음 배포되었는데, 수신처는 각각 미태평양육군(필리핀), 미8군(일본 동부), 미6군(일본 서부), 24군단(한국)이었다.⁴⁾ 각 부대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점령지역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미6군이 해산하면서 미8군이 일본 본토 전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미8군은 단독으로 다수의 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미8군은 처음에는 도쿄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도쿄와 가까우면서도 스가모 형무소로부터 전범의 이송이 용이한 요코하마로 결정하였다. 요코하마는 GHQ가 처음 설치된 장소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군사위원회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를 접수하여 재판을 실시하였고, 법무국은 재판소에서 가까운 요코하마 세관 빌딩을 접수하여 재판을 운영하였다.⁵⁾

1945년 말까지 SCAP은 약 2천 명의 전범 용의자 명단을 작성했다.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법무국은 전쟁범죄를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했다. 이는 각각 ‘포로의 지휘관 책임 관계’, ‘포로수용소 관계’, ‘포로 처형 관계’, ‘승무원 잔학행위 관계’, ‘공정한 재판의 부정 관계’, ‘복수 행위 관계’, ‘포로에 대한 생체 실험 관계’였다.⁶⁾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 초기부터 법무국의 관심은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 문제에 있었다. 미군이 일본에 상륙하자마자 가장 서두른 것은 일본 내 포로수용소에 있는 연합군 포로를 해방하는 것이었고, 이 포로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포로수용소에서 잔학행위를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많은 선서진술서(affidavit)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선서진술서는 이후 재판의 주요 증

2) Spulock, Paul E., 1950, “The Yokohama War Crimes Trials: The Truth About a Misunderstood Subject”,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 36 No. 5(May 1950), p. 388

3) RG 338 Entry A1 210 Box 1584 “The Yokohama War Crimes Trials Dec 1945 - Sept 1947”

4) SCAP 규정은 필리핀에서 제14방면군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에 대한 재판을 위해 급하게 발표되었다. 야마시타에 대한 기소는 전후 전범재판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인 1945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고,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 야마시타 재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SCAP 규정은 1945년 12월 5일에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재판이 실시되었다. RG 153 Entry A1 145 Box 14 Folder 103-8 1945.09.24. “Regulations Governing the Trials of Accused War Criminals”

5) 横浜弁護士会BC級戦犯横浜裁判調査研究特別委員会, 2004, 『法廷の星条旗—BC級戦犯横浜裁判の記録』, 日本評論社, pp. 4-6.

6) Piccigallo, Philip R., 1979, p. 84.

거자료로 사용되었다.

요코하마에서의 첫 재판은 1945년 12월 18일에 시작되었고, 1949년 10월 19일 마지막 사건을 다룰 때까지 총 3년 10개월간 운영되었다. 1948년 11월에 종결된 극동국제군사재판보다도 약 1년 뒤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996명의 피고 중 무죄는 142명으로 유죄 선고 비율이 약 86%였고, 사형 선고는 124명(12%)이었다.⁷⁾ 유죄 선고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사형 선고 비율은 낮았는데, 특히 피고 215명 중 92명(43%)에게 사형을 판결한 미국의 마닐라 재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⁸⁾ 요코하마 재판은 일본인 피고에게 법무국에서 파견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본 변호사회에서 선임한 일본인 변호사를 제공하여 변호의 권리를 제공하였다.

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첫 재판에는 9명의 장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재판정의 구성은 재판마다 상이하였다. 또 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피고는 한 번의 재판으로 유무죄와 양형이 결정되었다. 다만 군사위원회 재판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법무감실은 재심(review)⁹⁾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SCAP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군사위원회에 의한 선고(sentence)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군사위원회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면 법무감실 전쟁범죄부(war crimes division)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의 법리, 증거, 형량을 재검토하였다. 재심에서는 형을 더할 수는 없었지만 감경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군사위원회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지되거나 혹은 감형되었다.¹⁰⁾

재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법무감의 승인에 따라 사령관(요코하마의 경우 미8군 사령관)에게 보내졌다. 사령관이 결과를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사형 선고의 경우에는 SCAP에 최종 권한이 있었다. 재심을 거쳐 SCAP 법무감실에 전달된 사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 맥아더에게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사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요코하마 재판에서의 사형 선고 124건 중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51건으로 선고된 사건의 41%에 불과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피고는 모두 종신형이나 유기형으로 감형되었고 그중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¹¹⁾

(3)요코하마 전범재판과 포로 문제

미국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범재판을 통해 무엇을 처벌하고자 했던 것일까? 주요 전범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책

7) *ibid.*, p. 90.

8) 하야시 히로후미, 2024, 이재우 역, 『BC급 전범재판』, 어문학사, 93쪽.

9) 미국 군사위원회 재판에서 재심(review) 절차는 사실상 상급심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군사위원회 재판의 판결과 양형 선고에 있어 재판관들은 어떠한 형태의 판결문도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의 모든 심리가 끝나면 기소된 소인에 관한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형량을 선고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가 합법적이고 분명한지,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기소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재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요약하고 재심관(reviewer)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사령관에 의해 형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다.

10) <SCAP 규정> h항 “군사위원회의 선고는 위원회를 소집한 장교 혹은 그 후임자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 장교는 부여된 선고를 승인하거나, 경감하거나, 형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면제하거나, 감형하거나, 유예하거나, 줄이거나 혹은 대체할 권한을 가지며 혹은 (피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새로운 군사위원회에서 재심리하기 위해 환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그에게 선고를 가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어떠한 사형 선고도 SCAP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집행될 수 없다.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선고가 최종적인 것이 되며 재심 되지 않는다.”

11) 茶園義男 編, 1985, 『BC級戦犯横浜裁判資料』, 不二出版, pp. 21-23.; 横浜弁護士会BC級戦犯横浜裁判調査研究特別委員会, 2004, *op. cit.*, pp. 20-22.

임이 있는 전범을 기소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평화에 반하는 죄’에 혐의가 있는 자들만이 기소되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반면 하위 전범재판에서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지침은 없었다. 다만 군사위원회 재판의 근거가 되는 SCAP 규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IMTFE Charter)과 마찬가지로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법정외 관할할 범죄의 범주로 삼았기 때문에, 군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전쟁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군사위원회는 전쟁범죄에 대한 폭넓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 해군 법무감실은 해군 전범재판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에 의한 전범재판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나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전쟁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²⁾ 군사위원회는 미군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지만 미국 국내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SCAP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법에 의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쟁범죄를 다룰 수 있었다.

요코하마 군사위원회는 일본 본토에 설치된 유일한 전범재판소이자 한반도를 관할 지역으로 두는 유일한 전범재판소로, 전쟁 중 일본 내에서 발생한 혹은 일본 식민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처벌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코하마 전범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의 대부분은 연합군 포로와 관계된 것이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코하마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건 319건 중 98.4%에 해당하는 사건이 포로관계 사건이었다. 포로관계 사건은 일본 전 지역에 설치된 포로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추락한 폭격기 승무원에 대한 학대나 처형, 생체실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코하마 재판에서는 특히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표 4> 미국 전범재판에서의 포로관계 사건의 수

재판소	포로관계사건	기타사건	전체사건	포로관계 사건비율
요코하마	314	5	319	98.4%
마닐라	17	69	86*(97)	19.8%
태평양	괌	29	47	38.3%
	괘잘렌	2		
상하이	14	1	15(11)	93.3%
총계	363	104	474	77.7%

* ()는 Pccigallo(1980:95)를 참조한 전체 사건의 수

** 마닐라 미국 재판의 총 수는 97건이나, 자료 누락으로 인해 86건의 사건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필리핀 재판 또한 일부 사건 기록이 누락되었음.

*** 포로관계 사건은 연합국 전쟁포로가 피해자인 재판의 수를 집계한 것임

- 출처 : 요코하마(NARA Microfilm Publication M1112 Reviews of the Yokohama Class B and Class C), 마닐라(UNWCC Archives Microfilm Reel 64-115), 태평양(RG 125 Entry A1 2 Case Files of Pacific Area War Crimes Trials), 상하이(RG 153 Entry A1 180 Box 12 Folder XIV-C: Military Commission Orders)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는 연합국의 전범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범죄였고, 모든 연합국 국가는 포로에 대한 사건을 다수 다루었다. 그러나 연합국 재판 중 포로에 대한 범죄를

12) RG 38 Entry UD-09D 19 Box 68 “Final Report of Navy War Crimes Program” Volume I (1949.12.01.) p. 144.

다른 사건의 비율은 42.6%이고, 민간인 혹은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비율은 54.8%로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 전범재판에서의 77.7%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범죄를 다루었던 것은 미국 전범재판의 특징이었다.¹³⁾

미국 전범재판 중에서도 포로관계 사건의 비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군 포로 승무원에 대한 일본의 재판 및 처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상하이 군사재판을 예외적인 경우로 본다면, 마닐라에서는 사건의 약 80%가 민간인에 대한 학대나 학살을 전쟁범죄로 다루고 있었고, 태평양 지역인 괌과 과달라헤네에서도 포로 관계 사건은 38%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전범재판 중에서도 요코하마 전범재판만이 다른 전범재판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요코하마 재판은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만을 다루었는가?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 문제를 제기하였고, 특히 필리핀에서의 ‘바탄 죽음의 행진’ 등과 같은 포로 학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포로 문제를 항의하였다.¹⁴⁾ 포츠담 선언에 “우리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자에게” 엄중한 정의가 있을 것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였다.¹⁵⁾ 두 번째는 요코하마에서 전쟁범죄 조사가 포로관계 사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요코하마에서는 수용소로부터 해방된 포로를 중심으로 전쟁범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포로 관계 사건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가중되었고, 포로관계 사건의 수도 축약하고자 노력했다.¹⁶⁾ 그 때문에 포로 사건 이외에는 적극적인 전쟁범죄 조사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일본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연합국이 헌장에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과 관계되어 있는 자국민에 대한 범죄, 전쟁 이전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나치 독일에서의 유대인 문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범죄들은 기존 전쟁범죄의 틀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요코하마 전범재판에서는 일본인의 자국민에 대한 범죄를 전쟁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다.¹⁷⁾

(4)요코하마 전범재판의 예외지점

요코하마 전범재판이 포로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재판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⁸⁾ 포로에 대한 잔학행위는 중요한 전쟁범죄의 하나

13) 야하시 히로후미, 2024, 앞의 책, 75-76쪽. 야하시 히로후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기소한 총 사건 중 81.3%가 포로 관계 사건이었다.

14) RG 153 Entry A1 145 Box 2 Folder 102-6 1944.01.31., “Department of State” ; RG 153 Entry A1 145 Box 16 “Confidential Release for Publication” 1945.09.04.

15) “Potsdam Declaration”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decade17.asp)

16) Pennington, Lisa Kelly, 2012, *The Pacific War Crimes Trials: The Importance of the “Small Fry” vs. “Big Fish”*, Old Dominion University, p. 82.

17) ‘인도에 반하는 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장에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검찰국은 두 범죄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인에 대한 범죄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고는 연합국 내에도 존재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1948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WCC)의 보고서에는 일본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 혹은 시민권의 침해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Zivkovic, 1948, “The Tokyo Trial”, UNWCC, Inform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Arising from Trials of War Criminal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p. 89-90.

18) 菅信子, 永井均解説・訳, 1996, 『BC級戦争犯罪裁判』, 日本図書センター; 강경자, 2018, 「BC급 전범재판을 통해 바라본 일본인의 전범의식 -“무사도 재판”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48; 半藤一利

이고, 포로관계 사건을 통해 미국 군사위원회가 재판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정의의 성격을 밝혀낼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코하마 재판의 1.6%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건들이 무엇을 전쟁범죄로 다루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합군 포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요코하마 군사위원회의 사건으로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하의 5건이 있다.

<표 5> 요코하마 전범재판 중 포로관계 외 사건

사건번호	피해자의 지위	피고의 지위	비고
74호	중국인 포로, 민간인	포로수용소 관리인, 경찰	하나오카 사건
272호	민간인 선교사	경찰	조선인 피고
297호	민간인 선교사	군인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발생
349호	중국인 포로, 민간인	포로수용소 관리인, 경찰	오사가 경찰서 사건
356호	중국인 민간인	경찰	오사가 경찰서 사건

이 사건 중 272호와 297호 사건은 민간인 선교사에 대한 고문 및 살해 사건이다. 297호 사건은 필리핀에서의 선교사 2명에 대한 살해 사건으로, 필리핀 독립 이후 마닐라로부터 요코하마로 이관된 사건에 해당된다. 272호 사건은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의 선교사 5인에 대한 고문 사건으로 요코하마에서 조선인 전범이 기소된 유일한 사례이다.¹⁹⁾

나머지 74호, 349호, 356호 사건은 중국군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재판에서 다룬 것이다. 이 세 사건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중국인들을 피해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전범재판과 구분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중국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다루고 있다는 점, 중국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다른 연합국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와는 상이한 쟁점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전범재판에 있어 중국인 민간인의 지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일본에 이송된 혹은 일본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범죄가 전쟁범죄인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통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일본 본토로 이송된 중국인들이 일본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정당인가의 여부이다. 세 번째는 관할권에 대한 것으로 미국 군사위원회 재판이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군사위원회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를 상기시킨다. 비록 아시아에서 연합국의 전범재판이 ‘인도에 반하는 죄’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군사위원회의 검사와 판사들은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²⁰⁾ 특히 일본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다루

카, 2015, 『「BC級裁判」を読む』, 日本經濟新聞出版

19)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하의 논문을 참조하라. 공준환, 2016, 「해방된 전범, 붙잡힌 식민지-전후 미국의 전범재판과 조선에서의 전범문제 논의」, 『사회와 역사』 112

20) 소위 C급 범죄인 ‘인도에 반하는 죄’는 ‘BC급’ 전범재판에서 전쟁범죄의 범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국에 의한 하위전범재판의 대다수는 ‘B급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하위전범재판에서 C급 범죄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사례로는 중국 난징 전범재판에서의 사카이 다카시(酒井隆)에 대한 재판이 있다. 사카이에게는 ‘평화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가 모두 적용되었다. 그는 일본 육군 지휘관으로 만주사변 및 중일전쟁에 참여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공격 및 잔학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의 부대에 의한 잔학행위가 헤이그와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언급하는 다른 재판

는데 있어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은 전범재판과 국가 주권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었다.²¹⁾ 전쟁범죄의 처벌은 슈미트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가진 전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법 질서’를 바탕으로 한 주권적 질서를 흔들고 있지만, ‘인도에 반하는 죄’의 처벌은 그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을 바탕으로 자국민에게 한 통치 행위를 타국이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전쟁 중 일본 통치의 합법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중국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다룬 세 재판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요코하마 재판의 특징 및 한계를 밝혀낼 것이다.

3.판결 뒤집기: 하나오카 사건

소위 ‘하나오카(花岡) 사건’은 일본과 미국에 의한 두 재판과, 재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첫 번째는 1945년 6월 30일 하나오카에서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의 봉기와 그에 대한 진압 및 아키타 지방재판소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오카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잔학행위의 책임을 물은 요코하마 군사위원회 재판 제74호이다.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및 징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전범재판이다.

민간인에 대한 강제 노동(forced labor)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작성된 전쟁범죄의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전쟁범죄 항목의 하나이다.²²⁾ 미국은 전쟁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면서 강제노동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전시 중국이나 조선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강제 노동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였다. 남태평양 등지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던 많은 조선인 노동자는 자신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관련한 정보들은 미군 정보기관에 입수되어 있었다. 식민지나 점령지로부터의 민간인에 대한 강제노동은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나, 강제노동의 문제는 요코하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²³⁾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강제노동의 문제를 전범재판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었다.

일본으로의 중국인 노동자의 동원은 1942년 11월 27일의 각의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의 건(華人勞務者内地移入の件)」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 전쟁포로의 연행 혹은 민간인의 강제동원이라는 방식으로 약 4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135개 사업소에 동원되었다. 하나오카의 사업소도 그중 하나였다. 하나오카에는 1944년 8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986명의 노동자가 보내졌다. 하나오카에는 중요한 구리

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전쟁범죄와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NWCC, 1949,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ume XIV*, The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by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pp. 1-7.

21) 조시현, 2000, 「國際人道法과 人權法の 關係」, 『인도법논총』 Vol. 20, 142-144쪽.

2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설립된 책임위원회는 독일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쟁범죄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쟁범죄의 잠재적인 목록으로 사용되었다. 이 목록의 7항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를, 9항은 군사 작전과 관계된 민간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11항은 점령지 주민의 강제 징병을 각각 전쟁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RG 238 Entry NM 66 52 J Box1 1943.12.13. ANNEX I List of War Crimes

23)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강제노동은 일본 잔학행위의 한 사례로 포함되었다.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진 것은 태면철도 건설 과정에서의 현지 민간인의 징용이다. 정글 속에서 철도를 건설한다는 열악한 공사 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광산인 하나오카 광산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본 회사 카지마구미(鹿島組)의 출장소로 보내져 수로 변경 공사 등에 동원되었다.²⁴⁾

중국인의 동원에 앞서 하나오카 광산에서는 ‘나나쓰다테 사건’이라고 불리는 광산 함몰사고가 발생했다. 1944년 5월 29일에 일어난 이 사고로 일본인 11명과 조선인 11명이 사망했다. 하나오카 광산의 갱도 위로는 하나오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물이 갱도로 흘러들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던 이 사고 때문에 하나오카 강의 물줄기가 변경될 필요가 있었고, 이 공사에 중국인들이 강제동원되었던 것이다.²⁵⁾

하나오카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추산 중국군 포로수용소(中山中國軍俘虜收容所)로 보내졌다. 하나오카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식량이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에 대한 구타와 폭행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하나오카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인 노동자의 42.3%에 해당하는 418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37명이 ‘하나오카 사건’ 이전에 희생되었다.²⁶⁾ 이처럼 높은 사망률은 하나오카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중국인 노동자들은 1945년 6월 30일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의 결과 4명의 일본인 관리원이 사망했으며, 800명 이상의 중국인이 언덕을 통해 탈출했다. 노동자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일본은 경찰관 494명을 비롯하여 경방단(警防団) 및 일반 주민 약 2만 명을 동원했다. 붙잡힌 노동자들은 다시 하나오카 수용소로 끌려왔으며 물과 식량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고문을 받았다.²⁷⁾

체포된 노동자 중 주모자로 지목된 13명은 국방보안법(国防保安法)의 제16조 2항 전시소요살인죄(戰時騷擾殺人罪)의 적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거치고 나서 아키타 지방재판소는 1945년 9월 11일에 수괴로 지목된 건춘(耿諄)에게 무기징역을, 1명을 제외한 11명의 모의 가담자와 살인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1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 이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 영향이 컸다. 전후에 내려진 판결이었지만, 결과에 따라 중국인 노동자들은 아키타 형무소로 보내졌다.²⁸⁾

일본의 패전 두 달 뒤인 1945년 10월 하나오카 인근의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미군과 호주군이 해방되면서 하나오카 사건이 알려졌다. 미 제14군의 조사관은 하나오카 수용소에 방문하여 ‘하나오카 사건’의 발생과 재판을 통한 중국인의 투옥을 인지했다.²⁹⁾ 이에 1945년 12월에는 방첩대(CIC)에 의해 하나오카 사건이 조사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³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요코하마 군사위원회에서 전범에 대한 기소가 준비되었다.

하나오카 사건을 다룬 요코하마 군사위원회 제74호 재판은 1947년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948년 3월 1일에 종료하였다. 군사위원회에 기소된 피고는 총 8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섯

24) 李恩民, 2010, 「日中間の歴史和解-中国強制連行の歴史和解を事例に」, 『境界研究』 1, p. 98.

25) 차타니 주로쿠, 2014, 「「나나쓰다테 갱 함몰 재해 보고서(七ツ館坑陥没災害報告書)」 - 외무성 소장 하나오카광산 나나쓰다테 관계 자료에 관하여 - 」, 『한일민족문제연구』 Vol. 26, pp. 266-267.

26) 花岡研究会 編, 2006, 『花岡事件横浜法廷記録 : BC級戦犯裁判の代表的事例』, 株式会社総和社, p. 591.

27) RG 331 En UD 1865 Box 9613 “Records of Trial of Kingoro Fukuda et 7 by Military Commission” p. 38.

28) 花岡研究会 編, 2006, op. cit., pp. 591-592.

29) RG 331 En UD 1865 Box 9613 “Investigation fo Chusan(Chinsese) POW Camp” 1945.10.12.

30) RG 331 En UD 1865 Box 9613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t Chusan Camp, Hanaoka, Akita Ken.” 1945.12.21.

명은 수용소의 소장 후쿠다 긴고로를 포함한 수용소의 관리자 및 직원들이었고, 두 명은 경찰이었다. 피고들의 혐의는 전쟁법의 위반으로, 중국인에 대한 살해, 폭행, 학대, 고문 등이었다. 후쿠다의 기소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에게 적용된 상제 혐의는 총 16가지인데, 그중 7가지는 1944년 6~11월 사이에 중국인을 학대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1945년 6월을 전후로 하여 중국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것이었다.³¹⁾

군사위원회 재판에 기소된 이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살해나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들 혹은 지역 경찰로 잔학행위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노동자들을 하나오카로 오도록 요구하거나 현장에 투입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피고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동원 이후의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중국인들의 강제동원 혹은 강제노동 그 자체를 전쟁범죄 기소의 이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강제동원 여부는 이 재판이 전쟁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다.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군사위원회 재판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총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쟁범죄와 ‘전쟁’의 관련성이다. 변호인은 최종진술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전쟁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피고들은 모두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혹은 경찰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범죄는 ‘전투행위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중국군 포로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쟁범죄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³²⁾

두 번째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봉기가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변호인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경비를 살해하고 수용소를 탈출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찰에게 있어 도망친 중국인들을 잡는 것은 일본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경찰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³³⁾

세 번째는 미국 군사위원회가 미국인 피해자가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모스크바 선언은 주요 전쟁범죄자를 제외한 전쟁범죄자는 각 국가에 보내져 재판받도록 하였고, 연합국 각국이 각자의 전범재판을 가졌던 것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범죄는 미국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중국 전범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었다.³⁴⁾

네 번째는 중국인이 전쟁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나오카 사건의 피고 중 한 명인 시미즈 마사오(Shimizu Masao)는 중국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었다. 그는 1936년에 일본으로 이주하고 창씨개명하기는 했지만, 그의 국적은 여전히 중국인이었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그의 신분에도 그가 중국인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 이것이 전범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가 지적되었다.³⁵⁾

31) RG 331 M1112 “Review of the Yokohama Class B and Class C War Crimes Trials by the 8th Army Judge Advocate, 1946-1949: Case#74”

32) RG 331 En UD 1865 Box 9613 “Record of Trial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vs KINGORO FUKUDA and 7 Case Docket No. 74” p. 1126.

33) *ibid.* p. 1128.

34) RG 331 En UD 1865 Box 9614 “Addenda to Supplementary Defense Motion for Disapproval of Findings and for Retrial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vs KINGORO FUKUDA and 7 Case Docket No. 74”

35) RG 331 En UD 1865 Box 9613 “Records of Trial of Kingoro Fukuda et 7 by Military Commission” p. 16.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의 동원이 강제적이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변호인은 수용소의 중국인들이 자유 계약에 의한 노동자들로, 억압되거나 노예화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쟁포로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판의 관할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쟁점에 있어 검찰은 중국인 민간인들은 전쟁법에 의한 보호 대상으로, 전쟁법이 민간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중국인 민간인들을 감금하여 학대한 것은 명백히 전쟁범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미국을 포함하여 연합국 전범재판에서는 다수의 민간인 가해자들이 전쟁범죄자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검찰은, 일본 경찰의 의무는 중국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학대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수용소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사실상의 감금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용소의 중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계획과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붙잡혀 배에 태워졌고,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었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봉기에 대한 일본 경찰의 진압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항복을 받은 연합군최고사령관(SCAP)의 권한이 미국인에 대한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SCAP이 위임받은 권한은 모든 일본인 전범에 대한 재판 권한이고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연합국 시민에 대한 범죄를 군사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을 가지는 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을 다룬 요코하마 군사위원회에는 한 명의 중국인 장교(Col. Wang)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재판으로서의 형식도 갖춘 상태였다.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고 시미즈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관할권이 있지만, 요코하마에서 재판되는 것을 중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의 국적이 중국인으로 연합국 국민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³⁷⁾ 이처럼 요코하마 재판은 필요에 따라 가해자의 국적이 연합국인 경우에도 전쟁범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쟁점에 대해 검사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중국인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했다. 중국에서 수용되는 과정, 선박으로 일본으로 이송되는 과정, 하나오카 수용소로 보내지는 모든 과정이 감시 속에서 벌어졌으며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강제이송과 강제노동은 하나오카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에 있었다.

특히 재심(review) 과정에서도 강제노동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되었다. 재심관 프라이탁(Mac Freitag)은 재판의 관할권을 논의시키기에 앞서 SCAP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상기시켰다. "민간인에 대한 살인, 절멸, 노예화, 이송 혹은 다른 비인간적 행위..."가 그것이다. 재심관이 보기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의 법적 지위는 그들이 전쟁포로와 게릴라, 농부, 노동자로 섞여 있어 명확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공통된 사실은 그들이 중국에서부터 감시를 받았고, 일본의 필요에 따라 이동했으며 수용소에 수용되는 과정은 일본 당국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노예 상태, 이송 과정 그들이 받은 비인간적 행위는 위의 정의가 규정하고 있는

36) RG 331 En UD 1865 Box 9613 "Record of Trial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vs KINGORO FUKUDA and 7 Case Docket No. 74" p. 1134.

37) RG 331 En UD 1865 Box 9614 "Answer to Defense Motion for Disapproval of Findings and Vacating of Sentence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vs KINGORO FUKUDA and 7 Case Docket No. 74"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 개개인의 상태나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안은 전쟁범죄에 해당하였다.³⁸⁾

중국인의 강제동원 과정은 법정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검찰측의 첫 증인이었던 적수당(翟樹棠, Jai Shu-Ton)은 자신이 수용소로 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베이핑(北平)의 학생이자 농부였던 그는 1944년 6월 6일 자신의 자택에서 일본군에게 연행되었다. 일본군은 그의 손발을 묶고 총검으로 위협하여 현지 수용소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칭따오를 거쳐 배를 타게 되었는데, 선박에 올라서야 일본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변호측이 주장한 것과 같은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다.³⁹⁾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재판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군사위원회 재판이 직접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하나오카 사건 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용소의 제1중대장 장금정(張金亭, Chang Jin-Tin)은 검찰의 두 번째 증인으로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이 증인이 일본인을 살해하고 또 수용소에서 식량을 관리하는 중국인 1명을 살해했음을 지적하였다. 증인이 살인을 저질러 10년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이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의 그러한 행위가 유죄나 무죄냐의 여부는 군사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반론은 군사위원회 법무관에 의해 거부되었다.⁴⁰⁾

재판 결과 군사위원회는 수용소장 후쿠다와 중국 국적의 시미즈를 포함하여 세 명의 피고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1명에게는 종신형을, 2명에게는 20년 형을 나머지 두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재심 과정에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재판은 중국인에 대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통치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들에 대한 판결에 있어 민간인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 강제동원된 중국인들이 수용소에서 노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유죄 판결의 주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재심판 프라이탁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인 개인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계약에 의한 노동인지 강제동원인지의 문제를 넘어 중국인들이 처한 비인간적 상태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다름이 없었고, 국적이나 신분의 경계를 넘어 전쟁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군사위원회가 일본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재판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군사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뒤집고 있었다. 일본 경찰에 의한 중국인의 체포와 진압을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았고, 지방재판소의 유죄 판결이 이행되지도 않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들은 전범재판에서 증인으로 등장하며 두 재판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일본의 전시 통치행위는 적어도 하나오카 사건 재판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나오카 사건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판결은 오늘날 ‘하나오카 화해’로 불리는 일본 기업의 중국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⁴¹⁾ 다만 하나오카 사건의 사

38) RG 331 M1112 “Review of the Yokohama Class B and Class C War Crimes Trials by the 8th Army Judge Advocate, 1946-1949: Case#74” pp. 82-83.

39) 花岡研究会 編, 2006, op. cit., pp. 337-341.

40) ibid. pp.558-560.

41) ‘하나오카 화해’는 하나오카 사건으로 지방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건춘을 대표로 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카지마 건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카지마 건설은 법

례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동시에 전범재판의 한계 또한 보여주고 있다. 하나오카에 보내진 약 천 명의 중국인을 외에도 일본 전역에는 약 사만 명의 중국인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강제동원 및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오카 사건에 앞서 발생한 나나쓰다테 사건과 같이 조선인의 강제징용 및 강제노동의 문제는 군사위원회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또 그러한 강제동원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 제국의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일한 재판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4. 전쟁범죄와 합법적 통치?: 오사카 경찰서 사건

오사카 경찰서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다룬 두 재판, 요코하마 군사위원회 제349호와 제356호는 하나오카 사건에 비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두 사건은 하나오카 재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쟁점들을 다루었다. 두 재판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은, 먼저 군사위원회 제349호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검찰측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으로 인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356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군사위원회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모두를 공소기각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관할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군사위원회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전쟁범죄에 대한 폭넓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관할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먼저 군사위원회 제349호 사건의 개요를 검토하고자 한다. 군사위원회는 1948년 10월 22일에 시작하여 불과 3일 뒤인 1948년 10월 25일에 종료하였다. 이 사건은 오사카에 위치한 중국인 포로수용소 O-49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오사카 항구의 운송회사(Honko Ungo Kai)에 소속되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다. 사건에는 네 명의 일본인이 피고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 세 명은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담당한 회사 소속 수용소 관리자 및 감시원이었고 한 명은 오사카부 이케다 경찰서의 외사부 소속 경찰이었다. 피고들은 중국인 민간인 및 군인 포로들에게 의복이나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특히 중국인이 식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체포하여 4개월 반 동안 고문하고 가두었으며 재판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⁴²⁾

이 사건은 하나오카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에 대한 강제이송 및 강제노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술할 오사카 경찰서에서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다만 변호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죄(plea) 단계에서 인정하는 대신에 피고들이 원하는 형량을 제시하였고, 군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과 함께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에서의 쟁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오카 사건과 같이 강제노동 과정에서의 포로 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참고가 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는 요코하마 군사위원회 재판 제356호 사건으로, 이 사건은 오사카 경찰서에서 발생한 중국인에 대한 고문 및 살해를 다룬다. 다만 위 사건들과는 달리 이 재판에서의 중국인들은 강제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5억 엔을 기탁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의 모금으로 하나오카평화기념관이 아키타현 오다테시에 개관하였다.

42) RG 331 Entry UD 1865 Box 9665 "Record of Trial and Exhibits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vs Hiroichi Konishi et 3 Case Docket No. 349"

거주하고 있던 이주민들이었다. 포로수용소와 관계되지 않은 일본 내 중국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특징적이다. 이 재판은 1948년 10월 13일부터 1948년 11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들의 ‘국적’과 ‘신분’이다. 중국인 피해자들의 ‘국적’은 이 사건의 판결을 결정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법적인 처리가 정당인가의 문제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하나오카 사건에도 적용되었던 국방보안법(国防保安法)⁴³⁾에 의해 재판받아 구금된 자들이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전쟁범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은 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쟁점을 검토하면서 오사카 경찰서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모두 오사카부 소속의 경찰관들로, 경찰서나 형무소에서 중국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중국인 민간인들을 때리거나 고문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는데, 총 11명의 피해자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이 고문과 폭행의 결과로 사망하였다. 중국인 피해자에 대한 고문은 1944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11명의 피해자는 모두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중국인 민간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첫 번째 증인인 진환화(陳桓華, Chen Hen Hwa)가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1948년 재판 당시 47세인 그는 일본에서 23년째 거주(1925년 이주)하고 있는 자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효고현에 살고 있었다. 그는 1944년 11월 30일에 오사카부의 한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103일간 구류당하면서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처음 끌려가고 일주일간은 오전부터 밤까지 매일 심문을 받았는데, 일본 경찰들이 이를 담당했다. 그는 손이 묶인 상태에서 스파이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라고 요구받았고, 자백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폭행을 당했다. 그를 포함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폭행, 뺨 때리기, 고통스러운 자세 유지하기, 주판 위에 무릎 꿇리기, 차가운 물에 밀어넣기 등이었다.⁴⁴⁾

이러한 고문에 결과 피해자는 거짓 자백을 하였다.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오사카부의 형무소 내 법정(court jail)으로 데려가 재판을 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의 자백이 증거로 사용되었다. 재판 중 검사와 판사에게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결과 오사카 형무소에 구금되었다. 형무소에서는 197일간 복역하였으며, 종전 이후인 1945년 9월 21일에 그는 석방되었다.

11명의 중국인은 모두 같은 중국인 협회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이들은 ‘화교회’ 혹은 ‘상업협회’라는 이름의 협회에 가입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협회의 회장이었다. 중국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검찰에 따르자면 ‘불법적으로 약품을 구매하여 중국군(국민당군)에게 보내려 한 것’

43) 국방보안법은 1941년 시행된 법률로 방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국방보안법 제1조는 “국가 기밀 또는 국방상 외국에 대하여 비닉(秘匿)할 필요가 있는 외교, 재정, 경제, 그 외에 관한 중요한 국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며 제1조에 따른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방보안법 제10조는 “외국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금융계의 교란, 중요물자의 생산 또는 배급의 저해(阻害),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국민경제의 운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 국방보안법 제16조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인들이 ‘아편 밀매’로 처벌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상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방보안법 전문은 이하에서 확인하였다. 御24427100 “国防保安法·御署名原本·昭和十六年·法律第四九号” (<http://www.digital.archives.go.jp/file/147908.html>)

44) RG 331 Entry UD 1865 Box 9668 “Record of Trial and Exhibits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vs S.NAKAGAWA et 19 Case Docket No. 356” pp. 55-62

이었다. 이것은 국방보안법의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경찰은 이들 협회에 스파이 조직이 있다고 믿고 이들을 체포하여 심문한 것이었다. 증인은 심문으로부터 살아남았으나, 가혹한 고문의 결과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총 6명이 사망하였다. 한 피해자는 체포된 지 9일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⁴⁵⁾ 군사위원회의 검사측은 이러한 고문과 사망을 '전쟁의 법률과 관습'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여된 경찰 21명을 기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소 내용은 전시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일본제국에 의한 가혹한 통치의 한 사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변호측의 묘사는 다르다. 피고인 경찰들은 중국인들을 암시장에서의 '아편 밀매' 혐의로 조사했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인들에게 국방보안법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혐의는 '마약 밀수'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검사가 기소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중국 국민당군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의 진행에 앞서 군사위원회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변호인은 심리 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인 민간인과 중국인 민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전쟁포로도 민간인 억류자도 아니며, 그들이 수감된 이유는 '전쟁 상태(state of war)'의 존재 때문도 아니다. 중국인들은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체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군사위원회에는 현지 사법권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일본은 전쟁 중 점령된 적이 없으며, 일본은 항복 이전까지 적법한(de jure) 정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⁴⁶⁾

검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1944년에서 1945년으로 전쟁 중이었으며, 중국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 중국인에 대한 잔학행위는 국방보안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다. 전쟁범죄는 피해자를 군인이나 전쟁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민간인이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주자의 권리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억류자였다. 그들은 일본 정부의 행위로 인해 학대받았으며,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의무는 학대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⁴⁷⁾ 이에 따라 군사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중국인 피해자들의 '국적' 문제였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연합국 국민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아야겠지만, 변호측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하였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을 건설하였듯이, 중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1940년 왕징웨이 정부(혹은 난징 정부)를 괴뢰 정부로 세워 중국을 통치하였다. 왕징웨이 정부는 일본의 대동아공영 구상의 일부가 되어 일본 제국에 소속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에 일본에는 약 16,000~17,000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일본에 거주 자격을 얻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1920년대 일본으로 이주한 것과 같이 다수가 전쟁 이전에 일본에 상업 등에 종사하기 이전에 이주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중국인으로서의 '국적'은 일본 정부에 의해 1940년 이후에는 왕징웨이 정부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행정상 왕징웨이 정부에 소속된 것으로 등록되었으며, 중국인들이 만든 각종 화교 조직은 왕징웨이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였다.⁴⁸⁾ 그러한 지지가 자발적인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45) *ibid.* p. 56-58.

46) *ibid.* pp. 21-22.

47) *ibid.* p. 22.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재판에서 변호측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이들 피해자 중국인이 왕징웨이 정부에 소속된 자들로, ‘연합국 국민으로서의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 국민으로서의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변호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중국인들은 연합국 국민이 아니고 적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급 범죄로서의 ‘전쟁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추축국 국가들만이 인정하고 있었던 괴뢰국민 왕징웨이 정부의 합법성이 군사위원회 재판에서 전범의 무죄를 위해 주장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국인들은 앞서 검토한 하나오카 사건의 중국인과는 구분되었다. 하나오카 사건의 중국인 피해자들은 1942년 이후 북중국으로부터 강제 동원되었고, 이들 중에는 국민당군 출신의 전쟁포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점은 쉽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의 국적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의 동맹국 국민’으로 전환되었다. 증인으로 나선 일본 정부의 관리들은 일본과 왕징웨이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언하였다. 반면에 왕징웨이 정부를 ‘괴뢰’ 정부로 표현하려 했던 검사의 시도는 재판부에 의해 제지되었다.⁴⁹⁾

중국인들의 국적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인 일본 사법 처리의 정당성 문제로 넘어간다. 여기서 일본 사법의 ‘합법성’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폭행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고유한 권한인지가 질문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 군사위원회는 국방보안법의 합/불법성을 검토하거나 국방보안법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대신에 중국인들이 일본인과 차별적으로 법집행을 받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변호측은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인 관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일본 내 거주한 중국인의 법적인 신분을 묻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인은 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한 사실상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외국인을 규정하는 법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 법은 중국인의 거주 이동을 허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증인들은 주장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정에서 입증되고 있다. 중국인에게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었고, 중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연합국 국민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체포되어 추방된 것과 달리 중국인들의 거주는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이동의 제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왕징웨이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장되었다.⁵⁰⁾ 이러한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에게 국방보안법이 적용되는 것 또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는 일본의 ‘대동아공영’의 이상이 주장되는 듯한 느낌도 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은 다른 추축국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국민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은 만주국, 태국 등의 국가와도 마찬가지였다.⁵¹⁾ 이들은 일본의 ‘동맹’의 국민이었고 ‘동맹’ 안에서는 어떠한 법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위원회는 증인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신에 변호인의 주장처럼 일본 내에서 중국인이 미국인이거나 다른 연합

48) *ibid.* p. 321.

49) *ibid.* p. 329.

50) *ibid.* pp. 320-326.

51) *ibid.* p. 345.

국 국민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였다.

세 번째 쟁점은 이 사건이 ‘전쟁범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앞선 두 쟁점을 검토하면서 증인은 사건의 피해자인 중국인들이 ‘연합국 국민으로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입은 피해가 ‘전쟁의 관습과 법률 위반’은 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문제를 단순하게 질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범죄인가? 아닌가?”⁵²⁾ 변호인은 일본에 전쟁 중에 일본의 형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할 권한과 법체계가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재판의 권한을 뺏을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 일본이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을 처벌한 것은 전쟁범죄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새로운 쟁점은 ‘전쟁범죄가 아니라면 ‘인도에 반하는 죄인가?’의 문제였다. 변호인은 먼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 이 행위는 전쟁범죄가 아니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것이 인도에 반하는 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지지 않았다.”(밑줄은 필자)⁵³⁾ 이 시점에서 검사도 이 사건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다루질 수 있음을 인정한 듯하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여기서 위반된 행위들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깝지만, 전쟁범죄도 될 수 있으며... 피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양보할 의도는 없다.”⁵⁴⁾ 검사 또한 중국인들이 ‘일본의 동맹국 국민’으로 간주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별도의 기소는 없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자신이 제기한 ‘전쟁범죄’가 A, B, C급 범죄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며 따라서 ‘인도에 반하는 죄’가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전환하였다.

‘인도에 반하는 죄’를 둘러싼 공방은 마지막 쟁점인 재판의 관할권 문제로 이어진다. 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검사측의 입장은 전쟁범죄의 범위가 ‘국적’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사위원회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SCAP 규정 어디에도 피해자의 ‘국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범죄의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그러한 범죄를 처벌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기구는 군사위원회뿐이었다. 중국인 피해자를 다룬 사건이 군사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룰 가능성은 없었다. 최후변론에서 검사는 SCAP의 권한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연합국 국가를 대변하여, 일본의 점령자로서 일본에서 발생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국적이 어디인가, 피해자가 어디 소속인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의 중국인이 연합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쟁범죄’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전쟁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의 기소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군사위원회는 아무런 관할권을 가질 수 없었다. 변호인의 마지막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중국인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연합국의 일원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다루게 하자.”⁵⁶⁾ 최종적으로 군사위원회 재판부가 변호인의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면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SCAP 규정의 전쟁범죄 정의를 다시 검토하면서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52) ibid. p. 313.

53) ibid. p. 313.

54) ibid. p. 316.

55) ibid. p. 315; 365.

56) ibid. pp. 359-361.

없다. 다만 재심 의견서에서 판단의 이유를 가능할 수 있다. 재심 의견서에서 재심관 렉키 (James G. Lackey)는 이 사건에서 다루지고 있는 범죄가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 범죄는 전쟁 중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합국과의 전쟁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었다. 연합국의 전범재판에 대한 권리는 포츠담 선언과 항복문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문서를 일본이 받아들일 때의 '합의'는 전쟁범죄와 전쟁범죄자만을 SCAP이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법에는 적국에 의한 적국민의 처우에 관한 보호조항이 없다. 그들의 처우는 그들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들이 자국민을 학대나 살해한다고 해서 국제법의 위반은 아니다. 일본은 SCAP의 정책 명령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정부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법정 또한 자신들의 법을 집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연합국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군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⁵⁷⁾

또한 미8군의 법무감도 보충 의견에서 군사위원회에서 제시된 변호인측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생활환경이 일본인과 다르지 않았고, 그들이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중국인들이 당한 잔인한 행위는 일본 국내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국방보안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군사위원회는 오직 전쟁에 관련된 범죄만을 처벌해야 한다며 의견을 마무리하고 있다.⁵⁸⁾

재심관의 이러한 견해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SCAP 규정에서 정의된 '전쟁범죄'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 중 검사는 물론 변호인도 이 사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당시의 규정은 국내법에 의한 법의 집행도 전쟁범죄의 하나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위원회와 재심 모두에서 일본의 내부적 통치와 법 집행의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통치 행위가 국방보안법에 따른 고문이나 학대, 살해에 있어서도 '합법성'을 얻는다는 주장은 하나오카 사건에서 이미 반박된 바 있었다. 일본 정부의 의무는 외국인인 중국인을 보호하는 것에 있지,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살해에 있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의 '중국인'들이 외국인이면서도 일본 제국의 일원이라는 주장이 군사위원회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중국인들이 전쟁 당시 자의 혹은 타의로 왕징웨이 정부를 지지했는지 모르나, 왕징웨이 정부 자체가 합법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었고 미국이 그러한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들은 전쟁 종결과 함께 자연스럽게 중화민국의 국적을 부여받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들이 연합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무시되었다.

중국인 고문 및 살해 사건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통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일본의 조선에서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었는가? 혹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었는가? 의 문제에 있어 하나오카 사건과 오사카 경찰서 사건을 서로 다른 결론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에 대한 치안유지법이나 국방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군사위원회가 규정하는 전쟁범죄의 밖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과 일본 통치의 합법성 사이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그것이 고문과 살해를 포함하는 것일지라도) 속에서 군사위원회 재판은 국적과 통치라는 전쟁범죄의 두 경계를 넘지 않고 있다.

57) RG 331 M1112 "Review of the Yokohama Class B and Class C War Crimes Trials by the 8th Army Judge Advocate, 1946-1949: Case#356" pp. 15-18.

58) *ibid.* pp. 19-20.

5. 결론을 대신하여 - ‘인도에 반하는 죄’의 문제

1945년 12월 5일 자 SCAP 규정(“기소된 전쟁범죄자의 재판에 관한 규정”)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명칭은 현장에는 포함되었지만 각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C)형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살인, 절멸, 노예화, 강제 이송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여기에서 정의된 범죄의 실행이나 그와 관련하여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자행된 박해는, 그것이 범죄가 저질러진 국가의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된다.”⁵⁹⁾

이러한 정의는 뉘른베르크 현장, 극동국제군사재판 현장, 연합국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Control Council No.10)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문장에서의 사소한 차이-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종교적’이 삭제되는 등-만 있을 뿐, ‘인도에 반하는 죄’를 통해 겨냥하고자 하는 범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두 가지 표현,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확장과, ‘범죄가 저질러진 국가의 국내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라고 하는 재판 당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관여이다.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도에 반하는 죄’에서 규정하는 범죄라면 그것은 전쟁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이는 국가가 자국민 혹은 무국적자에게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며, 요코하마 군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전범재판소는 그러한 범죄를 자신의 법적 관할권에 놓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어떤 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놓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아시아의 전범재판소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검사들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감각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범죄를 기소하거나 처벌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유럽에서 나치에 대한 전범재판에서는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에 근거하여 실시된 열두 번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경제인에 대한 재판, 법조인에 대한 재판 등을 다루며 나치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나갔다.

먼저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제5호, 플릭(Flick) 사건은 경제인에 대한 세 번의 재판 중 첫 재판으로, 프리드리히 플릭과 그 경영진들을 피고로 하여 나치에 경제적으로 협력한 죄를 물었다. 플릭 외 5명의 피고에 대한 기소의 첫 번째 항목은 “노예 노동에 동원하기 위한 민간인의 노예화와 강제 이송”이고, 이것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었다.⁶⁰⁾

이 사건의 검사 텔포드 테일러(Telford Taylor)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9) RG 153 Entry A1 145 Box 14 Folder 103-8, 1945.12.05. “Regulations Governing the Trials of Accused War Criminals”

60) UNWCC, 1949,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um IX*, London, UNWCC, p. 7.

“이것은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에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독일인들이 다른 독일인들에게 저지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들은 점령 권력의 재량에 따라 독일 법정에서만 재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점령 권력이 독일 법정으로 하여금 독일인들이 다른 독일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그리고 미국의 독일 점령지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건은 비-독일 재판소, 즉 이러한 군사 재판소에서만 재판될 수 있다.”⁶¹⁾

즉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재판은 그러한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오사카 경찰서 사건의 마지막에 법정의 관할권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주고받은 공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점령당한 국가에게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점령 당국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처벌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그 권한을 점령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⁶²⁾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격은 유대인 등을 직접적으로 학살하는데 가담한 나치에 대한 처벌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나치에 부역한 법조인에 대한 재판은 통치에 대한 개입의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제3호(Justice Case)는 판사를 비롯한 독일의 법조인들에 대한 재판이었다.⁶³⁾ 법조인들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공모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재판에서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치의 사법 그 자체를 문제 삼았고, 그러한 법률을 실행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물론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은 당시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쟁과의 관련성’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현장에서 규정된 ‘전쟁 이전의’ 범죄를 관할권으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며 후속 재판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따랐다. 또 앞선 플릭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유대인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당 사건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을 모두 기각했다.⁶⁴⁾

요코하마 재판에서의 두 사례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문제 외에도 여러 비교와 검증의 지점들을 남긴다. 일본에 거주한 주민들의 지위와 ‘평등한 대우’의 문제, 치안유지법과 국방보안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 일본과 일본인의 식민지인 혹은 자국민에 대한 범죄 문제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재판의 쟁점을 우회하여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유사한 혹은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다른 재판 사례의 발굴과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61) Opinion and Judgment - United States v. Josef Altstoetter, et al. p.972 (ICC legal tools, <https://www.legal-tools.org/doc/04cdaf/>)

62) 미군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과도입법의원에서의 전범 처벌 및 전시 조선인에 대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조선인의 처벌에 관한 미군정의 입장과의 일치한다. 이에 관해서는 공준환, 2016, 「해방된 전범, 붙잡힌 식민지-전후 미국의 전범재판과 조선에서의 전범문제 논의」, 『사회와 역사』 112을 참조하라.

63) 법조인 재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재승, 2019, 「법조인소송」, 『일감법학』 44호

64) 단 재판부는 점령지 민간인과 포로의 강제 이송과 노예화, 노예 노동에 대해서는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Opinion and Judgment - United States v. Friedrich Flick, p. 1216 (ICC legal tools, <https://www.legal-tools.org/doc/861416/>)

*참고문헌

- 강경자, 2018, 「BC급 전범재판을 통해 바라본 일본인의 전범의식 -“무사도 재판”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48
- 공준환, 2016, 「해방된 전범, 붙잡힌 식민지-전후 미국의 전범재판과 조선에서의 전범문제 논의」, 『사회와 역사』 112
- _____, 2023, 「연합국의 전범재판과 ‘인권’ 의제」, 『역사비평』 143
- 이재승, 2019, 「법조인소송」, 『일감법학』 44호
- 조시현, 2000, 「國際人道法과 人權法の 關係」, 『인도법논총』 Vol. 20
- 차타니 주로쿠, 2014, 「「나나쓰다테 갱 함몰 재해 보고서(七ツ館坑陥没災害報告書)」 - 외무성 소장 하나오카광산 나나쓰다테 관계 자료에 관하여 -」, 『한일민족문제연구』 Vol. 26,
- 하야시 히로후미, 2024, 이재우 역, 『BC급 전범재판』, 어문학사
- Pennington, Lisa Kelly, 2012, *The Pacific War Crimes Trials: The Importance of the “Small Fry” vs. “Big Fish”*, Old Dominion University
- Piccigallo, Phillip R., 1979, *The Japanese On Trial: Allied War Crimes Operations in the Far East, 1945-1951*, University of Texas Press
- Spulock, Paul E., 1950, “The Yokohama War Crimes Trials: The Truth About a Misunderstood Subject”,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 36 No. 5(May 1950)*
- 李恩民, 2010, 「日中間の歴史和解か-中国強制連行の歴史和解を事例に」, 『境界研究』 1
- 菅信子, 永井均解説・訳, 1996, 『BC級戦争犯罪裁判』, 日本図書センター
- 茶園義男 編, 1985, 『BC級戦犯横浜裁判資料』, 不二出版
- 花岡研究会 編, 2006, 『花岡事件横浜法廷記録 : BC級戦犯裁判の代表的事例』, 株式会社総和社
- 林博史, 2005, 『BC級戦犯裁判』, 岩波新書
- 半藤一利ほか, 2015, 『「BC級裁判」を読む』, 日本経済新聞出版
- 横浜弁護士会BC級戦犯横浜裁判調査研究特別委員会 , 2004, 『法廷の星条旗-BC級戦犯横浜裁判の記録』, 日本評論社

<토론문>

공준환, 「전쟁범죄의 처벌과 경계 넘어서기: 미국 요코하마 전범재판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보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 발표문은 “식민지 문제를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목직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식민지 문제는 식민지배 그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국적 문제와 같이 식민지배로 파생된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발표자가 지적하듯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이라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현안이 조성되며 “식민지배 그 자체보다는 전쟁 시기 식민지에서의 불법적인 인적 동원과 착취의 문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가 동일하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식민지 문제와 전쟁범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발표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식민지 문제를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전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두 사안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요코하마 전범 재판의 사례와 이를 통해 확인되는 식민지 문제는 조선의 식민 경험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 징용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정리의 균열을 해소할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적 판결은 법의 해석과 전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례가 있다고 한들 절대적 사실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범 재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결의 해석과 논의의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발표문은 각 사례에서의 논점과 논증 근거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며 사법적 판결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각 사례의 특징과 요코하마 전범 재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코하마 전범 재판을 이해하며, 토론을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전범 재판의 정치성에 대한 해석

전범 재판은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진행된 절차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상과 인적 동원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건의 선별과 판결의 해석에 담긴 정치적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재판은 미국이 주축이 되어 연합국 소속 국가에서 자국민과 추축국민을 피고로 삼아 시행했습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 전개된 재판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시되었던 바에 따라 전범의 행위가 판별되었습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대적협력자의 재판이 많았다고 평가됩니다(하야시 히로세, 2024). 무엇보다 연합군사령부의 기소에 의한 재판의 진행은 애초에 사건의 성립에서부터 선별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편중이 있었던바, 전범 재판은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여 판단한다는 목적하에 근본적으로는 처벌과 배상을 매개로 한 국제 질서의 전환,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재편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A(평화에 반하는 죄), B(전쟁범죄), C(인도에 반하는 죄)로 구분하였지만, B는 점령지 소속 혹은 점령지 내의 일반 인민의 살상, 학대, 혹은 노예노동자나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추방 등 정당화할 수 없는 황폐화, C는 전쟁 전 혹은 전시에 모든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자행

된 살인, 섬멸, 노예화, 국내법 위반 여부 불문한 범죄의 수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는데, 판결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B급은 식민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C급은 이를 포함한 전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범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은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범주가 큰 재판의 판례 연구가 전범 재판의 한계를 규명하는 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내법과의 충돌과 관련한 해석 역시 정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범 재판 자체가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고 진행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국내법과의 충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범을 규정할 때 ‘국내법과 상관없이’라는 문구를 넣거나, 국내법과 관련한 해석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는 식민지 문제는 인정하면서(연합국도 식민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면제론에 대한 해석도 결국 판사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내법 충돌에 대한 해석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법과 관련한 해석은 식민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판결의 사례를 통해 식민지 문제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식민지배 역시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보거나, 그 자체의 불법성을 규명할 근거를 찾는 것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재판은 해당 지역과 국가에서의 가치 판단, 근본적으로는 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연합국 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결정이 그 향방을 좌우했던 것으로, 진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냉전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문제가 전범 재판에서 전면에서 다루어지거나 평가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 재판에서 다루고자 했던 문제에서 제거되었던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식민지 문제의 경계선을 드러내는 것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의 연계성, 나아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식민지배 경험과 전쟁범죄에 대한 논의는 결국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전범 재판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상의 문제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전범 재판을 통해 전쟁범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청산했고, 한국에 대한 ‘보상’도 제공했다는 일본의 논리는 여전하고, 한국 법원 조차 주권면제론을 들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일본 정부 상대 항소 1심 재판). 해방 정국 한국에서도 식민지 청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법안 제정까지 이어졌지만, 군정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정부 수립 이후 헌법으로 규정되기도 했지만,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미일 간 거래에 의해 합의되었던 것처럼, 그 해소 자체도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갖는 정치성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요코하마 전범 재판의 사례와 한계는 한국의 식민 경험과 이후 해소 시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이해 속에서 요코하마 전범 재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연계될까요? 전범 재판의 정의는 식민 청산을 위한 시도와 식민지배에 대한 식민지 내에서의 정리가 냉전의 논리 속에서 무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분리하며 식민지 상황과는 괴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3. 전범 재판의 성립과 자국민에 대한 처벌을 '6·25전쟁'에 비추어 본다면?

'6·25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자 종전을 위한 정치적 절차를 남겨둔 전쟁입니다. 연합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여했던 국제전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전쟁 시기 발생했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도 역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유족회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상대 소송과 더불어 이념을 기준으로 전개되었던 살인에 대해 국내법과 충돌하더라도 전쟁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판결을 시행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법정 차원에서 '6·25전쟁' 관련 전범 재판이 진행된 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범 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요코하마 전범 재판의 사례가 한반도 전쟁에서의 학살을 전쟁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4 역사학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자료집>

1950년대 북한에서의 간첩 문제의 인식과 사회변화

이세영(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목 차 -

1. 머리말
2. 한국전쟁 직후 ‘파괴 암해분자’의 생산시설 사보타주(1953~1954)
3. 접경지역에서 침투하는 간첩 적발과 체포(1955~1956)
4. ‘간첩’과 ‘반혁명분자’ 문제를 이용한 사회통제(1957~1959)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채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어느 중간쯤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미 현상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망각이나 무력감과는 별개로 한반도에서 전운이 가신 것은 아니었으며, 휴전 상태는 전쟁의 연장이었다. 바, 정권은-특히 독재정권일수록 항상 한반도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휴전 상태에서 전쟁의 실감을 만들어 온 존재가 바로 ‘간첩’이었다. 북한은 늘 간첩(또는 무장 공비)을 보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호전적이고 냉혈한 적대자로서 표상되어 왔다. 그리고, ‘간첩 공포’는 실제 간첩 남파가 줄어든 시기에는 애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불의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오랜 세월 발화가 금기시되었지만, 우리 정부 또한 줄기차게 북한에 공작원을 파견하였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남과 북은 이 문제에서 어느 한쪽 자유롭거나 순수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남북에 있어 ‘간첩 문제’는 전쟁 아닌 전쟁을 지속하면서 서로를 적대하고 악마화하여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적대적 공존’ 관계의 수단이자, 권력 투쟁 과정에서 경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즉, ‘간첩 문제’는 그 자체가 남북 열전/냉전이 빚어 낸 결과물이자, 권력의 입장에서 체제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간첩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학계에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차원에서 조작간첩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도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⁶⁵⁾ 다만, 이런 연구는 주로 남한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간첩 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웅이 한국전쟁 이전 시기, 강원도 인제군을 접경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에서 ‘반간첩투쟁’에 대해 일부 다룬 바가 있으며, 박소영이 한국전쟁 이후 ‘신해방지구’ 개성

6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간첩, 밀사, 특사의 시대』, 선인, 2022 ; 김정인 외,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책과함께, 2022 ; 황병주 외,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책과함께, 2021 ; 김정인 외, 『간첩 시대: 한국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 2020.

에서의 ‘반간첩투쟁’과 ‘반혁명분자투쟁’에 대하여 다룬 바가 있다.⁶⁶⁾ 이 연구들은 북한 사회에서 진행된 간첩 관련 문제와 그것이 북한 사회·체제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들이지만, 특정 지역 사례 연구를 넘어 북한 전역에서 전개된 간첩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료가 부족기에 그러한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첩 사건의 사실 여부 ‘규명’이 가능한가 여부에 더 집중하는데서 오는 신중함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진 간첩 사건이 실제인가 조작인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해보자는 시론적 차원에서, 우선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미완의 열전이 펼쳐진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후 북한 사회에서 ‘간첩’ 문제가 어떤 의미와 의도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인지 정리함으로써, 남북 현대사의 이해를 높이고 비교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본 발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언론 매체의 기사를 중심으로, ‘차가운’ 전쟁의 수행으로서 간첩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 인식은 역사적 상황과 결부하여 어떻게, 왜 변화하는지에 관해 시기적 추이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53년 휴전 직후부터 1954년말까지를 첫번째 시기로 하며, 두번째 시기는 1955년에서 1956년까지, 세번째 시기는 1957년에서 1959년말까지로 한다.

2. 한국전쟁 직후 ‘파괴·암해분자’의 생산시설 사보타주(1953~1954)

한국전쟁이 정전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침략적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에 계속 동지를 틀고 있으면서 이승만 매국도당들로 하여금 계속 ‘복벌’을 떠벌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 계속되는 이승만의 북진통일 발언,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등은 북한 정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비록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진정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전면전의 형태가 아니라 “인민경제의 복구 발전을 장애하며 우리의 승리를 내부로부터 와해 파괴시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⁶⁷⁾

그렇기에,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전개하였던 ‘반간첩투쟁’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면서, 각지에 잔존하고 있거나, 새로이 잠입하는 간첩·파괴·암해분자의 존재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발·체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썬들이 당 및 국가·군사 기밀들을 탐지하고, 중요 공장·광산·철도 시설들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잠입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금 김일성은 방송연설에서 “우리는 전후시기에 있어서 반간첩투쟁이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시키며 적들이 전시의 혼란한 시기를 리용하여 우리 진영 내부에 침입시켰으며 또는 전후 평화건설시기에 있어서 계속 침입시킬수 있는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계속 적발 폭로하는 전 인민적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한 놈의 간첩 한 놈의 파괴 암해 분자도 우리의 배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66)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157~160쪽 ; 박소영, 「북한의 신해방지구 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02~209쪽.

67) 방학세, 「원썬들의 간첩 파괴 음모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3. 10. 18.(『북조선실록』 104권, 588~591쪽).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전 이후에도 간첩과 파괴 암해분자들을 전국적으로 적발하고 처단할 것을 강조하였다.⁶⁸⁾

이 시기에는 우선 두 종류의 ‘간첩’이 북한 지역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종류는 전쟁 시기 산간 지대를 거점으로 ‘비정규전’을 펼쳤던 이들이 남한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잔류하다가 소탕당하는 경우였다. 예컨대, 강원도 금강군 내무서 분주소원들과 자위대원들은 1953년 10월 1일 소탕 작전을 진행하여 산중에 은거하던 간첩 8명을 “일망타진”하였다. 이들 간첩단은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유엔군이 후퇴할 때 같이 남하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게릴라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룡암리 인민위원회에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⁶⁹⁾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비정규전’을 수행하던 병력이나 집단이 잔류한 경우,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정권의 물리력이나 자위대에 의해 소탕되어 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언론매체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간첩 관련 기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간첩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후 새로 복파된 간첩들이 그것이었다.

정전 이후 남측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각지의 인민에게 적발되거나 자위대에 체포당하였다. 그들은 주로 소형 공작선을 타고 들어오거나,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한 지역에 잠입하였기에 해안에 인접한 지역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역에서 체포당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함경북도 종성군과 같이 북중 국경지대 깊숙한 지역에서 잡히기도 하였다. 복파된 공작원들은 대부분 ‘인민군’의 복장으로 위장하여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내무원, 행사인 학생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하거나, 심지어 ‘병어리’로 가장하여 활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군에 고용되어 훈련을 받고 복파된 것으로 소개되었으며, 국가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해하며,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주민 속에서 “락후한 분자”를 매수하여 앞잡이로 내세우며 각종 요언들을 퍼뜨리는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었다.⁷⁰⁾

한편, 북한 언론매체에 실린 간첩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인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체포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신문의 독자들에게도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평상시에 수상한 사람을 접하게 된다면 정권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또한, 자주 나오는 기사는 아니었지만, 간첩 체포에 따른 보상이 있음도 내비치기도 하였다. 예컨대, 무장한 간첩 1개 분대를 사로잡은 금강군의 여성 자위대원들이나, 전시에 월남하였다가 간첩이 되어 돌아온 오빠를 신고한 학교 교원은 국가로부터 표창이나 훈장을 수여받았다.⁷¹⁾

68) 「사설: 반간첩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1953. 9. 2.(김광운,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02권, 선인, 2019.(이하 『북조선실록』) 12~14쪽).

69) 「전선 린접 산중에 은거 발악하던 살인간첩도당 8명을 일망타진」, 『민주조선』, 1953. 10. 11.(『북조선실록』 104권, 285쪽).

70) 「각지 인민들 적 간첩을 체포」, 『민주조선』, 1953. 10. 3.(『북조선실록』 103권, 719쪽) ; 「사설: 반간첩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자」, 『민주조선』, 1953. 10. 16.(『북조선실록』 104권, 462~464쪽) ; 「간첩 1개 분대 사로잡은 처녀자위대원들」, 『민주조선』, 1953. 10. 20.(『북조선실록』 104권, 699쪽) ; 「직장 내에 잠입한 살인간첩도당을 적발」, 『민주조선』, 1953. 10. 22.(『북조선실록』 105권, 34쪽) ; 「각지 인민들 고도의 경각성으로써 적의 간첩 파괴분자를 계속 적발」, 『로동신문』, 1954. 1. 3.(『북조선실록』 109권, 135쪽) ; 「평북도 녕변군 구항리에서 적 간첩 체포」, 『민주조선』, 1954. 5. 19.(『북조선실록』 117권, 198쪽) ;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라!」, 『민주청년』, 1954. 5. 21.(『북조선실록』 117권, 277쪽).

71) 「간첩 1개 분대 사로잡은 처녀자위대원들」, 『민주조선』, 1953. 10. 20.(『북조선실록』 104권, 699쪽) ; 「우리의 우편함: 전 간첩으로 되어 잠입한 ‘오빠’를 체포」, 『민주청년』, 1954. 1. 23.(『북조선실록』 110권, 271쪽).

이렇듯, 간첩은 전시에 잔존한 비정규전 병력이거나, 전후 잠입하여 들어온 공작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몰래 ‘사보타주’를 가하는 ‘파괴 암해분자’와 같은 존재로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언론매체에서는 자기 의도나 과거를 숨기고 공장이나 농·목장 등에 취업한 ‘파괴 암해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실렸다. 그들은 열성노동자로 위장하여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면서, 뒤로는 방화, 파괴, 오작품 생산 조장, 기계 훔치, 원자재 낭비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북한 경제를 파탄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다. 72) 예컨대, 파괴 암해분자로 체포된 ‘박모’는 처음에는 광산의 채광공으로 취직하여 채광부장을 거쳐 기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다. 그 후부터 그는 은밀하게 기계설비와 생산조직을 조잡하게 하여 기계 사고를 유발하고, 많은 노동력을 낭비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73) 함흥전신전화국에서 체포된 간첩은 시험공으로 취업하여 브리가다(작업반) 책임자의 자리까지 승진하였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을 태공하고, 중요 전화선을 몰래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며 군사·국가 기밀을 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74)

엄밀히 구분할 때 간첩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이라면, 파괴 암해분자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 암해분자로 체포된 자들은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즉, 미군의 북진 시기에 치안대에 가담하여 활동한 이들이나, 토지개혁 당시 토지를 몰수당하고 축출된 ‘악질 지주’의 아들이 체포되곤 하였다. 75) 그러나, 북한 정권은 사보타주를 미국과 남한이 전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가하는 적대행위로서 인식하였다. 즉, “적들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잠입하여 방화·파괴와 각종 암해 공작들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76) 또한 그들은 북한 체제 내의 “소수 낙후한 분자들과 침체한 부분”을 표적으로 한다고 지목받았다. 즉, 북한 정권은 “당과 국가 규률에 복종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탐위분자, 출세주의자, 방탕 부화한 생활을 즐기는 자, 개인 영웅주의, 리기주의” 등은 파괴 암해분자에게 포섭될 수 있는 존재 혹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였다. 77)

그렇다면, 다수의 ‘파괴 암해분자’들이 생산직장을 타겟으로 노릴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그것은 전쟁 직후의 혼란한 상황, 전후 복구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유동이 극심하고, 노동규율과 질서가 잡히지 않는 현실, 느슨한 직장 경비 상황 등 전후 생산현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였기에 파괴 암해분자가 정체를 숨기고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기

72) 「사설: 반간첩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자」, 『민주조선』, 1953. 10. 16.(『북조선실록』 104권, 462~464쪽) ; 「직장 내에 잠입한 살인간첩도당을 적발」, 『민주조선』, 1953. 10. 22.(『북조선실록』105권, 34쪽) ; 「직장 내에 열성분자로 가장하고 잠입한 적 간첩 암해분자를 적발 체포」, 『민주조선』, 1953. 11. 2.(『북조선실록』105권, 610쪽).

73) 방학세, 「원수들의 간첩 파괴 음모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3. 10. 18.(『북조선실록』 104권, 588~591쪽).

74) 「사설: 반간첩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자」, 『민주조선』, 1953. 10. 16.(『북조선실록』 104권, 462~464쪽).

75) 「직장 내에 잠입한 살인간첩도당을 적발」, 『민주조선』, 1953. 10. 22.(『북조선실록』105권, 34쪽) ; 「직장 내에 열성분자로 가장하고 잠입한 적 간첩 암해분자를 적발 체포」, 『민주조선』, 1953. 11. 2.(『북조선실록』105권, 610쪽) ; 「공장을 파괴 소각하려던 파괴분자를 적발 단죄」, 『로동신문』, 1954. 3. 6.(『북조선실록』 112권, 686쪽).

76) 「사설: 반간첩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자」, 『민주조선』, 1953. 10. 16.(『북조선실록』 104권, 462~464쪽) ; 「사설: 생산 및 건설 직장들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라!」, 『로동신문』, 1954. 4. 16.(『북조선실록』115권, 317~318쪽) ; 방학세, 「원수들의 간첩 파괴 음모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3. 10. 18.(『북조선실록』 104권, 588~591쪽) ; 「정치적 경각성의 부단한 제고는 매개 공민의 고상한 의무이다」, 『로동신문』, 1953. 11. 20.(『북조선실록』 106권, 461~464쪽) ; 「사설: 현실은 경각성 제고를 요구한다」, 『로동신문』, 1954. 2. 11.(『북조선실록』111권, 285쪽).

77) 방학세, 「원수들의 간첩 파괴 음모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3. 10. 18.(『북조선실록』 104권, 588~591쪽).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⁸⁾ 또한 많은 기능공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들”은 기능노동자로 가장하여 위장취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⁹⁾ 즉, 전후 노동자 부족, 기술자 부족 상황에서 파괴 암해분자가 쉽게 직장에 잠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은 생산직장의 간부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생산직장들에서 일어나는 오작품 생산이나 기계 사고, 화재사건, 기타 돌발 사건에 대하여 단지 ‘기술 부족’, ‘기계 노쇠’, ‘부주의’, ‘불가항력’ 등을 원인으로 보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즉, 이러한 현상이 “누구의 조종하에 또 어떠한 고의적 행동에서 감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분석 해명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거리나 도시를 근거지로 하던 간첩 암해분자들이 생산직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자의 채용 과정부터 정치적으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해야 하며 사소한 규율 위반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⁰⁾

북한 정권의 이러한 주문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협’이나 ‘암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었다. 전후 복구 상황에서 생산현장에 들어온 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숙련도가 저급하고 규율도 체득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잦은 사고나 오작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러한 생산 차질 현상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니,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공장의 규율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숙련도를 높여 증산에 힘쓰는 ‘모범 노동자’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전체 인민들에 대해서 (한국전쟁의) “승리에 도취하여 평화적 기분을 가지며 생활에서 안일성과 해이성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내무상 방학세는 그것을 “만심성과 ‘멍청이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심리상태야말로 간첩과 파괴분자들이 숨어서 해독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온상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일부 “락후한” 인민들이 자기의 계급성을 망각하고 정실관계에 끌려 간첩을 감추어주거나 매수당하는 경우에 대해 북한 정권은 우려하였다. 예컨대 황해도 해안지대의 한 농민은 자기 집에 잠복하여 있는 간첩에게 손시계를 받고 매수되어 그냥 숨겨주었는데, 결국 간첩과 더불어 적발·체포되었다. 즉, 간첩에게 도움을 주면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북한 정권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경각심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공민으로서의 의무인 국가·군사기밀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강조하였다. “국가기밀을 루설하는 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그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되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엄중한 범죄”라는 것이었다.⁸¹⁾

정리컨대, 한국전쟁이 정전된 1953년 하반기부터 1954년에 이르는 시기에,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방법은 간첩을 파견하고 북한 내의 체제 불만 세력들을 이용하여

78) 「평화적 건설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 경각성」, 『민주조선』, 1954. 6. 6.(『북조선실록』 118권, 248쪽).

79) 「사실: 현실은 경각성 제고를 요구한다」, 『로동신문』, 1954. 2. 11.(『북조선실록』111권, 285쪽).

80) 「사실: 반간첩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자」, 『민주조선』, 1953. 10. 16.(『북조선실록』 104권, 462~464쪽) ; 「사실: 생산 및 건설 직장들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라!」, 『로동신문』, 1954. 4. 16.(『북조선실록』115권, 317~318쪽) ; 「평화적 건설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 경각성」, 『민주조선』, 1954. 6. 6.(『북조선실록』 118권, 248쪽).

81) 「사실: 반간첩투쟁을 더욱 강화하라」, 『민주조선』, 1954. 1. 25.(『북조선실록』110권, 322~323쪽) ; 「정치적 경각성의 부단한 제고는 매개 공민의 고상한 의무이다」, 『로동신문』, 1953. 11. 20.(『북조선실록』 106권, 461~464쪽) ; 방학세, 「원수들의 간첩 파괴 음모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3. 10. 18.(『북조선실록』 104권, 588~591쪽).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은 인민들에게 항상 혁명적 경각심을 가지고 간첩과 파괴 암해분자를 적발해낼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파괴 암해분자는 생산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존재로서 그려졌기에, 노동자들은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생산에 열성을 보여야만 하는 분위기가 감돌던 시기였다.

3. 접경지역에서 침투하는 간첩 적발과 체포(1955~1956)

1955년에서 1956년까지는 일종의 ‘소강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언론 매체에서 인민들에게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나 논설이 나오지 않는 시기이자, 생산현장에 잠입해서 사보타주를 가하는 파괴 암해분자의 적발이나 체포 등에 관한 기사도 지면에 올라오지 않는 시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간첩의 적발과 체포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간첩 사례는 주로 해안가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침투해 들어오거나 철수하려는 공작원들에 관한 것들이다. 주로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도 지역을 통해 잠입해 들어온 공작원들이 자위대원이나 인민들에게 적발되어 체포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안북도 해안가나 강원도, 그리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체포당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⁸²⁾

즉, 이 시기에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파공작원’을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냉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 해군 첩보대에서 파견하였다가 체포된 간첩에 관한 기사에서 그들은 서해안 연선 ‘신해방지구’ 인민들을 유인·납치하며 공작원 간의 연락장소를 설정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잠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⁸³⁾ 이러한 북한의 간첩 적발 기사는 기실 그 검증이 어렵지만, 21세기에 들어 한국에서 그것을 검증할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로 평범한 북한 인민이 북파공작원에게 강제납치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2022년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북한 주민 김주삼에 대한 북파공작원의 강제 납치가 사실임을 인정하였다.⁸⁴⁾ 김주삼은 납치당하던 1956년 당시 용연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14살 소년이었다. 그는 10월 10일 자정 무렵 국군 제8263부대(공군 제25첩보대)의 백령도 파견대에서 보낸 북파공작원 3명에 의해 납치당하였다. 북파공작원들은 백령도 파견대장 오○○ 대위로부터 적지에 들어가 아무나 납치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 김주삼을 납치해왔다. 이후 김주삼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공군첩보부대로 끌려가,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하고, 1961년까지 4년간 보수도

82) 황해도에서 적발된 간첩 관련 기사는 「경각성을 높여 적 간첩을 체포」, 『로동신문』, 1955. 2. 26.(『북조선실록』 134권, 442~443쪽) ; 「경각성 높은 오양환 농민이 적 간첩 2명을 적발」, 『로동신문』, 1955. 7. 3.(『북조선실록』146권, 214쪽) ; 「경각성 높여 적 간첩을 적발」, 『로동신문』, 1955. 7. 11.(『북조선실록』146권, 767~768쪽) ; 「적 간첩을 적발」, 『로동신문』, 1955. 9. 10.(『북조선실록』 150권, 540쪽). 평안북도의 경우는 「경각성 높은 어부들이 적 간첩을 체포」, 『로동신문』, 1955. 8. 4.(『북조선실록』148권, 749쪽). 강원도는 「향토보위의 초소에서」, 『로동신문』, 1955. 8. 23.(『북조선실록』150권, 324쪽).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은 「경각성 높은 해방지구 인민들」, 『민주조선』, 1955. 2. 9.(『북조선실록』 134권, 177쪽) ; 「판문군에서 적 간첩 1명 체포」, 『로동신문』, 1955. 8. 11.(『북조선실록』 149권, 379~380쪽).

83) 「경각성 높여 적 간첩을 적발」, 『로동신문』, 1955. 7. 11.(『북조선실록』146권, 767~768쪽).

84)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김○삼)」,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22. 7. 1. ~ 2022. 12. 31.) 제5권 결정서 모음』, 2023을 주로 참고하였다.

없이 부대의 잡일 등 노역을 하다가 퇴출되었다. 이후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남한에 강제로 억류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대공 용의자로 낙인 찍혀 경찰로부터 사찰 및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⁸⁵⁾

2023년 7월 31일, 그가 납치 당한지 67년이 지나서야, 한국의 사법부는 김주삼에게 한국 정부가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하였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는 김주삼을 납치했던 오○○이 2008년 2월 9일 특수임무 보상금 1억 1천 5백만원을 받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⁸⁶⁾ 비록 김주삼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니, 여전히 냉전의 틈바구니에 갇혀 강제억류당한 신세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황해도를 비롯한 동서해안가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첩이 출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첩 관련 기사가 현지 농민이나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는 인민들의 눈에 의해 적발된 사례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간첩을 적발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며, 또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간첩을 체포하는데 도움이 된 인민들에게는 이 시기에도 포상이 따랐는데,⁸⁷⁾ 연백 영천에 거주하는 노동자 안세길은 1955년 8월 26일 한국 육군 정보국 소속 공작원 1명을 적발하여 체포에 도움이 되었다. 그 공로로 황해남도 내무부장으로부터 표창장과 상금 5천원을 받았으며, 또한 공작원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과 시계도 받을 수 있었다.⁸⁸⁾

한편, 이 시기에 들어 북한 정권은 ‘반간첩투쟁’의 일환으로 ‘반간첩투쟁관’을 설치하고 북한 인민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1955년 북한의 조국해방전쟁기념관⁸⁹⁾에 새로 반간첩투쟁관이 설치되었다. 이 기념관에는 “전쟁, 전후기간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정탐 흥계의 각종 증거 문건들과, 정탐활동의 체계와 형식과 방법들을 폭로하는 구체적 자료들과, 놈들이 파견한 고용 간첩들이 휘대하였던 가지가지의 휘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반간첩투쟁관에는 여러가지 전시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탐 마수를 표시한 커다란 조선 지도”였으며, 유리 진열장 안에는 “한국 육군본부 정보국의 1950년도 첩보 공장 계획안 사본을 비롯한 문건들, 미국제 영어 조선 지도, 공작원 훈련을 위해 사용된 『교수 강의 개요』와 『수강록』 등 실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85) 정희상, 「납치 소년 김주삼의 60년 망향가」, 『시사IN』778호 웹판, 2022. 8. 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29>, 검색일: 2023. 4. 17.)

86) 정상빈, 「법원, '북파공작원 납치 피해' 김주삼 씨.. "국가가 10억 배상해야"」, 『MBC 뉴스』, 2023. 2. 15.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667_36126.html, 검색일: 2023. 4. 17.); 김희진, 「'북파공작원 납치' 피해자 김주삼씨, 67년 만에 국가배상 확정」, 『경향신문』, 2023. 7. 3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31145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검색일: 2024. 10. 22.)

87) 「경각성 높여 적 간첩을 적발」, 『로동신문』, 1955. 7. 11.(『북조선실록』146권, 767~768쪽).

88) 「적 간첩을 적발」, 『로동신문』, 1955. 9. 10.(『북조선실록』150권, 540쪽).

89) 북한의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은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 당시 사료와 유물, 각종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1953년 8월 17일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서 개관하였다.(「<북한상식>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통일뉴스』, 2003. 8. 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74>, 검색일 : 2024. 10. 22.)



그림 1 반간첩 투쟁 전람회장을 관람하는 북한 인민들

출처 : 『로동신문』 1957. 7. 27. 2면.

두번째 진열장에는 체포된 간첩들이 휴대하고 있던 각종 위조 증명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신분증명서로부터 공민증과 학생증, 민청 맹증과 당증, 인민군으로 가장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북한 언론은 이 모든 증명서들이 실물과 매우 닮았다고 평가하였다.

세번째 진열장에는 간첩들이 휴대하고 있던 여러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천으로 만들어진 소형 북한 국기, 의사로 가장하려던 간첩이 소지하였던 수술 세트, 농민처럼 보이기 위해 소지하였던 담뱃대, 그 밖에 일반 망원경, 카메라와 첩보용 소형 쌍안경과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네번째 진열장에는 해안에 침투할 때 사용한 미국제 고무배와 고무옷과 휴대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약품 진열장에는 “다이아진, 페니시링, 금계랍⁹⁰⁾” 등 여러 휴대한 약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북한 언론은 이 약품은 겉보기에는 북한에서 판매하는 것들과 똑같이 생겨 있었는데, 그 내용물은 주로 독약이라고 설명하였다.⁹¹⁾

1955년도의 이 전시는 일종의 특별 전시회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반간첩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1957년 중순부터 확인된다. 1957년 6월 13일에 자강도 내무부에서 강계시에 반간첩 투쟁관을 개관하였으며,⁹²⁾ 같은 해 7월 26일,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반간첩 투쟁 전람회가 열렸다.⁹³⁾ 1958년 5월에는 강계에서, 8월에는 다시 조국해방전쟁 기념관에서 반간첩 투쟁 전람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전시는 상설 전시라기보다는 시기에 따라 전시관을 이동하면서 열리는 순회 전시로 보인다. 실제로 58년 기사에서는 앞으로 각 지방으로 순회 전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⁹⁴⁾

90) ‘다이아진/다이아징’은 정확하게는 설파다이아진으로 설파계 항생제이며, ‘페니시링’은 페니실린, ‘금계랍(金鷄蠟)’은 퀴닌(kinine)으로도 알려져 있는 말라리아 특효약이다.

91) 이상 ‘반간첩투쟁관’의 전시품에 관해서는 ‘원썬들의 범행 증거물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반간첩투쟁관에서’, 『조선인민군』, 1955. 8. 27.(『북조선실록』 150권, 584~586쪽)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92) 「강계시에서 반간첩 투쟁관 개관」, 『로동신문』, 1957. 6. 15.

93) 「반간첩 투쟁 전람회 개관」, 『로동신문』, 1957. 7. 27.

94)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로동자신문』, 1958. 5. 23, 3면 ; 「반간첩 투

전시의 내용도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5년에 열렸던 전시 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은데, 1957년도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열렸던 전시에서는 주로 체포된 간첩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즉, 김형모, 권중집, 김석봉, 임국원, 박춘극 등의 “암해 행위 전말을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판들”을 전시하였으며,⁹⁵⁾ 1958년의 전시에서는 입구에서 미국의 “정탐망과 정탐 활동 경로”부터 시작하여, 선교사 언더우드의 “간첩 행위”와 같이 주로 미국의 첩보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⁶⁾

개별 전시에서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시의 목적은 북한 인민들에게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간첩을 파견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애국심을 끌어올려 증산열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간첩 투쟁 전시회에는 많은 인민들이 관람하며 그런 목적이 달성되게끔 이바지하였다. 1957년 대동문 영화관 전시는 개관 17일만에 약 20만명이 관람을 하였던 것이다. 관람한 북한의 인민들은 감상록에 자신의 감상을 남겼는데, 교통성 서평양 철도공장 노동자 김재도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하루 속히 물러 가게 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정력을 바쳐 싸우겠다”고 적었다.⁹⁷⁾ 1958년 강계 백화점에서 열린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 참석하였던 노동자 김용우 또한 “나는 오늘 더 많은 일을 하겠다. 나뿐이 아니다. 우리 전체 로동자들이 그러하다. 이것은 원수 미제-네놈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적으며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⁹⁸⁾

정리컨데, 1955년에 들어 북한에서 간첩 문제는 정전 직후보다는 다소 누그러들었다. 특히 생산현장에서 ‘파괴 암해분자’를 적발하자는 류의 캠페인은 잦아들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안가나 접경지대에서 북파공작원 등은 활발히 출몰하였으며, 김주삼과 같이 북한 인민들을 납치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었다. 북한 정권은 로동신문 등을 통해 각 지역 인민들이 간첩을 적발하는 사례들을 널리 선전하고, 반간첩투쟁관을 개관하여 인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증산의욕으로 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4. ‘간첩’과 ‘반혁명분자’ 문제를 이용한 사회통제(1957~1959)

1955년~1956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던 간첩 문제는 1957년에 들어 적발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북한 사회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⁹⁹⁾ 이처럼 북한 사회에 긴장이 고조된 원인으로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김일성이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반종파투쟁’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꼽을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1956년 사회주의권이 흔들리는 위기가 벌어지게 된 것과 미국·남한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

쟁 전람회에서, 『로동자신문』, 1958. 8. 27, 3면.

95) 「반간첩 투쟁 전람회 개관」, 『로동자신문』, 1957. 7. 27.

96)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로동자신문』, 1958. 8. 27, 3면.

97) 「관람객들로 련일 성황을 이루고 있는 반간첩 투쟁 전람관」, 『로동자신문』, 1957. 8. 14.

98)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로동자신문』, 1958. 5. 23, 3면.

99) 「미제의 정탐 살인 도배들에게 인민의 준엄한 심판」, 『로동자신문』, 1957. 5. 20, 3면; 「한 반 위원이 장이 간첩 잡은 이야기」, 『로동자신문』, 1957. 5. 23, 3면; 「행상으로 가장한 간첩을 체포」, 『로동자신문』, 같은 면; 「미제 간첩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로동자신문』, 1957. 5. 27, 3면; 「간첩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로동자신문』, 1957. 5. 30, 3면; 「교활한 간첩 최호철의 정체는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7. 9. 6, 3면; 「간첩 리하섭의 말로」, 『로동자신문』, 1957. 11. 17, 3면; 「자기 죄를 음폐하려던 간첩 서명덕」, 『로동자신문』, 1957. 12. 15, 3면; 「미제의 고용 간첩에 대한 준엄한 심판」, 『로동자신문』, 1957. 12. 27, 3면.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은 1956년 10월 ‘헝가리 사태’ 발발의 여파가 북한에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실제로 헝가리 사태 이후 북한 내의 지식층은 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¹⁰⁰⁾ 또한, 비슷한 시기 미국은 정전협정 13조 d항을 일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에 핵공격이 가능한 신무기를 도입하였으며,¹⁰¹⁾ 이는 북한 정권에게 체제 안위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다.¹⁰²⁾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기의 간첩 문제는 1955~56년 단계보다 북한 인민들에게 더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던 간첩에 대한 ‘공개공판’ 기사가 언론 매체에 다시 등장하였다.¹⁰³⁾

『로동신문』에 재등장한 공개공판 기사는 1956년 12월 14일,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간첩 박춘극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최고재판소 판사 림인규가 재판장, 윤완희, 강대기를 참심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1,3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소장에 의하면 박춘극은 미 육군 8240부대에서 장기간 정탐훈련을 받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6년 6월 11일, HID에 가담하여 다시 훈련을 받고 1956년 11월 9일 북한에 잠입하였다가 체포당하였다.

“10월 25일 갑자기 나보고 월북하여야 하겠다고 서둘면서 웅그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어야 하겠는데 ‘북한’에는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 자네와 같은 사람이 한번 ‘북한’에 가서 일으켜야지 하면서 나를 추동하였다”

박춘극의 자백에 의하면 그가 잠입한 목적은 북한에서 헝가리 사태와 유사한 “폭동”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춘극은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이후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호를 거친 후 피소자에게 공화국 형법 제68조와 제65조 1항에 의하여 “준엄한 처단”을 내렸다.¹⁰⁴⁾

1956년 말 박춘극에 대한 공개공판 기사가 나온 후 1957년, 1958년에 걸쳐 북한 각 지역의 재판소에서 열린 공개공판 기사가 꾸준히 올라왔다. 1957년 연초에는 황해북도 재판소에서 리영백과 송인제에 대한 공개공판이 열렸다. 이들 또한 박춘극과 같은 목적으로 북파되었다고 자백하였다.¹⁰⁵⁾ 4월에는 원산시에서 안진섭에 대한 공개공판이 진행되었다. 안진섭의 경우는 다소 특이하게 “장개석 대사관” 첩보교관에게도 20일간 훈련을 받았으며, 북파 목적 중에는 북한과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기 위한 비밀 단체를 조직하며, 북한에 있는 화교들의 조직체를 정탐하여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⁰⁶⁾ 그 밖에도 강원도, 개성시, 함경북도, 원산시

100) 김재용, 「1950년대 중반 북한 지식층의 체제 비판과 개혁 요구」, 『북한학연구』19권 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3, 139~145쪽.

101) 1950년대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3배 이상 늘어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군의 감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1955년 이후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후진국 경제원조 공세와 제3세계의 등장으로 인해 군사원조보다는 경제원조를 보다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한국에서 병력을 줄이는 대신 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1958년 북한과 중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신무기 도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를 선언하였고, 핵공격이 가능한 지대지 로켓인 어네스트 존과 280mm 원자포의 한국 배치를 감행하였다(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 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0, 33~34쪽 참조).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일 외무상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57. 5. 31, 1면.

103) 한국전쟁 당시 『로동신문』에는 리승엽에 대한 공개공판 연재 기사를 비롯한 체포된 간첩에 대한 재판 관련 기사가 실려있다.

104) 「반인민적인 소동을 일으키려고 잠입하였던 미제 간첩에 대한 공개 공판 진행」, 『로동신문』, 1956. 12. 15. 이후 유사한 공판 기사를 참조하면 ‘준엄한 처단’이란 사형을 의미한다.

105) 「황해북도 재판소에서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무장 간첩들을 공개 공판」, 『로동신문』, 1957. 1. 14.

106) 「적 간첩을 공개 공판」, 『로동신문』, 1957. 4. 24.

등 북한 전역의 여러 재판소에서 체포된 간첩에 대한 공개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런 재판에는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였으며, 적대적 존재에 대해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일이군”이라면서 조소하거나 경각심을 느끼기도 하였다.¹⁰⁷⁾

북한 정권은 공개공판 자체와 그것의 기사화 과정 모두를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김일성과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선전선동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로동신문』 등에는 체포된 간첩의 ‘자백’을 기사화하여 활용하는 방식도 취하였다. 상술하였던 박춘극은 자신의 복파 목적이 북한에서 헝가리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그 ‘폭동’을 북한 주민이 일으킨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인물과 접촉하여 월남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자백하였다.¹⁰⁸⁾ 다른 이들은 한국군이 복진할 때 그에 호응하여 폭동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다거나, 미군이 공격할 때까지 북한 인민들에게 “송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자백하기도 하였다.¹⁰⁹⁾ 이렇듯 ‘간첩의 입’을 빌려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북한 정권은 인민들에게 당시의 정세에 대해 실감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처럼 계속해서 북파되는 간첩(공작원)에 대한 기사가 1958년말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이 시기에 간첩보다 더 부각된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혁명분자’들이었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반격에 나선 김일성은 ‘반당 종파분자’와 결탁하여 미국·남한과 내통하며 적극적으로 파괴활동을 꾀하는 반혁명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위협 분위기 속에서 1957년 5월 30일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고, 사회 기층에 숨어 있는 반혁명분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반혁명분자라는 존재는 정전 직후 등장하였던 ‘파괴 암해분자’와 비슷한 존재였다.¹¹⁰⁾ 즉, 반혁명분자들은 대개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아들이라든지, 한국전쟁 시기 ‘치안대’ 활동을 하거나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후 미군과 함께 후퇴하지 못하고 북한 체제에 남게 되어 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노동자·기술자 등으로 취업한 체제 불만 세력으로, 겉으로는 열성노동자나 기술자로 가장하면서 남몰래 사보타주나 반정부 선동을 시도하곤 하였다.¹¹¹⁾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하는 것에 초조하여 어떻게든 북한의 “혁명적 전취물을

107) 「적 간첩을 공개 공판」, 『로동신문』, 1957. 5. 5. ; 「미제의 간첩 파괴분자에 대한 공판 개성에서 진행」, 『로동신문』, 1957. 6. 18. ; 「미제 침략군의 고용 간첩을 처단」, 『로동신문』, 1957. 8. 4. ; 「간첩 리하섭의 말로」, 『로동자신문』, 1957. 11. 17. ; 「경각성은 우리의 무기이다 - 미제 고용 간첩 박춘극의 고백은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로동신문』, 1957. 12. 27. ; 「미제고용간첩에 대한 준엄한 인민의 심판」, 『로동신문』, 1958. 9. 18. ; 「미제 정탐배에 준엄한 심판」, 『로동신문』, 1958. 10. 3.

108) 「경각성은 우리의 무기이다 - 미제 고용 간첩 박춘극의 고백은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로동신문』, 1957. 12. 27.

109) 「미제 간첩의 자백에서」, 『로동신문』, 1958. 7. 13. ; 「미제가 파견한 간첩을 적발 체포」, 『로동신문』, 1958. 10. 3. ; 「미제간첩의 자백에서」, 『로동신문』, 1958. 10. 29.

110) 「파괴 암해분자’가 간첩과 별개이면서도 사실상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반혁명분자 또한 간첩과 개념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났다(「간첩 리하섭의 말로」, 『로동자신문』, 1957. 11. 17, 3면).

111) 「측량과장은 간첩이었다」, 『로동자신문』, 1957. 8. 23, 3면; 「간악한 파괴분자 김리백」, 『로동자신문』, 1957. 10. 2, 3면; 「그의 솔직한 자백」, 『로동자신문』, 1957. 11. 10, 3면; 「반혁명 분자들은 발로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7. 11. 17, 3면; 「자백한 그들은 새 일’군이 되었다」, 같은 면; 「“때”를 기다리던 장성국」, 『로동자신문』, 1957. 12. 6, 3면; 「박영삼도 죄과를 음폐하고 있었다」, 같은 면 ; 「리명일은 솔직히 자백하였다」, 『로동자신문』, 1958. 1. 15, 3면; 「그의 죄행은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8. 2. 14, 4면; 「군중들의 높은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로동자신문』, 1958. 10. 31, 3면; 「그의 죄행은 드러났다」, 같은 면.

파괴하기 위하여” 북한 내의 “파괴분자, 불순분자, 불평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¹²⁾

예컨대 흥상요업공장 노동자 김례직은 황해도 신천군에서 자치회장을 하면서 동생을 치안대장에 앉혀 민간인을 115명을 학살하게 한 자였으며, 미군이 후퇴하자 같이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구월산에 은신하였다. 전후 ‘오덕종’이라는 가명으로 강남요업공장에 노동자로 취업하였으며, 취업 이후에는 종종 몸이 아프다고 피병을 부려 결근을 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결근을 하게 유도하였다.¹¹³⁾ 황해제철소 주택사업소 노동자 정태빈은 치안대장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 19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이후 건설 노동자로 취업하여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오작 시공을 하여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¹¹⁴⁾ 검덕광산의 김연하는 갯도 내 휴게실 전기 히터 위에 40개의 폭약과 뇌관 10개를 올려놔 과열로 폭발하여 갯도를 파괴하고자 기도하였다.¹¹⁵⁾

반혁명분자가 이처럼 정전 직후 ‘파괴 암해분자’와 유사하였기에 그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 군중적 운동으로 반혁명분자를 감시하고 적발해 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생산현장의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와 문건의 발급, 보관, 처리로부터 현장 출입 단속, 교대 인계 인수 규정, 표준 조작법 준수에 이르기까지의 노동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¹¹⁶⁾

그렇다면, 반혁명분자들을 굳이 다시 간첩과 한 세트로 호명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괴 암해분자 때와 달리 반혁명분자가 반당 종파분자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상술했던 흥상요업공장의 김례직에 대한 적발 기사에서, 김례직은 “반당종파분자” 리필규¹¹⁷⁾를 이상화하면서 “때가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선동을 하였으며, 이후 리필규의 비호를 받아 흥상요업공장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즉, 반혁명분자들은 반당종파분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은 반혁명분자들은 단순한 사보타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무엇보다도 “대렬의 순결성과 사상 의지의 통일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¹¹⁸⁾ 다시 말해 “혁명의 전투적 참모부인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은 전체 당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제1차적 의무”가 된다는 것이 기실, 반혁명분자를 북한 사회 내 ‘악의 축’으로 끌어올린 속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¹¹⁹⁾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 반혁명분자 적발 운동은 북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결과, 1958년말부터 1959년 5월까지 당국에 자수한 이들이 약 9만 명, 적발된 이들이 약 1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¹²⁰⁾ 그런데, 정작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반혁명분자와 투쟁하자는

112) 최선경,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을 일층 제고하자」, 『로동신문』, 1957. 12. 3. ; 사실: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로동신문』, 1958. 11. 5.

113)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자 - 김례직의 정체는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7. 10. 23, 3면.

114) 「공장 건설을 파괴하려던 음모를 적발」, 『로동자신문』, 1958. 11. 12, 3면.

115) 「그는 목숨으로 광산을 지켰다」, 『로동자신문』, 1958. 9. 24, 5면.

116) 「사실: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로동자신문』, 1957. 9. 6, 1면.

117)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당시 김일성 반대파의 주도적 인물 중 한명이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 당시 반당 종파분자로 규정당하여 출당 조치를 당하였다.

118) 「사실: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자」, 『로동신문』, 1957. 9. 28.

119) 「사실: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로동신문』, 1958. 11. 5.

120) 김재웅, 앞의 논문, 2023, 152쪽.

논의는 로동신문의 경우, 1959년이 되면 간첩 쿠바에서의 반혁명투쟁에 관한 국제면 기사만 나올 뿐, 국내면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간첩에 관한 기사도 1959년부터는 군사정전 위원회에서 미국측에 간첩 파견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만 몇 차례 나오다가 1960년부터 국내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¹²¹⁾

1958년까지 날카롭게 전개되었던 북한 내 반간첩 투쟁이나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박소영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성 지역에서는 1959년에도 계속해서 반혁명분자 문제가 제기되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신해방지구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가 지방 신문에만 실리고 중앙 언론인 『로동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정권에서는 간첩이나 반혁명분자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¹²²⁾

그것은 김일성의 권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 1958년 사회주의 이행 완료 선언과 공산주의에 대한 전망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북한 사회 내에서 계급갈등 분위기가 커져가는 것을 통제하려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한 유추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미 1957년 12월 최선경의 논설에서 지방에서 당간부들이 “적아를 명백히 식별할 줄 모르”고 “포섭하여 교양·설복의 방법으로 개준시켜야 할 대상까지 적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적대시하는 편향이 있다”고 우려한 대목이다. 즉, 반혁명분자 색출 투쟁이 너무 과열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당과 정부 주위에서 리탈시키는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케” 할까 저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¹²³⁾ 1959년이 넘어서면서 북한 정권은 간첩·반혁명분자 문제를 더이상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 방법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추후 더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북한에서 ‘간첩’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또한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되었는지에 관해 거칠게나마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보자면, 우선 1953년 8월 정전 이후부터 1954년까지의 시기에 ‘간첩 문제’는 한편으로 북파되는 공작원을 잡기 위해 인민들의 경각심을 가지는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현장에 잠입하여 사보타주를 가하는 파괴 암해분자 문제로 나타났다.

두번째 시기인 1955~1956년은 일종의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파괴 암해분자 사례가 사라진 가운데, 북파공작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동서 해안가와 접경지대에서 터져나오곤 하였다. 실제로 1956년 북파공작원들이 황해도에서 중학생 김주삼을 납치하였던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되었듯이 이 시기에도 남북 냉전 대치는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반간첩 투쟁관이 개관되어 인민들에게 간첩과 그 파견국인 미국/한국에

121) 「미제가 우리측 지역에 간첩을 침입시킨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 규탄」, 『로동신문』, 1959. 4. 22 ; 「북반부 지역에 간첩을 파견한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철저히 폭로」, 『로동신문』, 1959. 6. 21. ; 「미제가 우리측에 간첩을 파견한 적대 행위를 조사 폭로」, 『로동신문』, 1959. 7. 10. ;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또다시 간첩을 파견한 미국측의 정전 협정 위반행위를 철저히 폭로 규탄」, 『로동신문』, 1959. 7. 22. ; 「또다시 드러나 미제의 엄중한 간첩 행위」, 『로동신문』, 1959. 12. 13.

122) 박소영, 위의 논문, 2010, 206~209쪽.

123) 최선경,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을 일층 제고하자」, 『로동신문』, 1957. 12. 3.

대한 적개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증산 의욕을 높이는데 활용되고자 하였다.

세번째 시기인 1957년에 들어서면서 간첩 문제는 북-미/남 군사·안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 정치 문제와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는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과 이어진 ‘반종파투쟁’을 통해 김일성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인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목적이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957년부터 각지에서 간첩 적발 기사가 다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공개 재판 사례도 적극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반당 종파분자’의 하수인 격인 ‘반혁명분자’가 북한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면서 간첩과 마찬가지로 색출·제거해야 할 인민의 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렇듯 간첩 문제는 대포를 쏘지 않았다 뿐이지 남북을 막론하고 불분명한 전선 속에서 모든 사회 성원들을 휘말려들게 한 전쟁이었다. 간첩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적대세력의 첩병으로서 배제되어야 했지만, 한편, 남북을 막론하고 서로에게 적대와 증오를 계속해서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쓰인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상호 감시와 경계의 눈초리 속에서 축을 곤두세우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러다 행여 정권의 눈밖에 나 ‘간첩’으로 조작당해 국가폭력에 내몰려야 했던 남북의 국민과 인민들이었다. 이념과 국가라는 명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공무원들 또한 그러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전쟁 직후의 사회가 가장 ‘간첩’ 문제에 민감하리라는 전제 하에 시기를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그렇지만, 연구를 하면서 한국전쟁 이전과 전쟁 시기의 간첩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1960년대 이후 북한에서 간첩 문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추적의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남북 비교 연구의 방법 모색 등이 계속해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숙제를 포함하여 추후 보다 심도깊은 노력을 기약하며 이만 줄인다.

참고문헌

『로동신문』, 『로동자신문』, 『민주조선』, 『민주청년』, 『조선인민군』,

김광운,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선인, 2018~2023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간첩, 밀사, 특사의 시대』, 선인, 2022

김정인 외,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책과함께, 2022

김정인 외, 『간첩 시대: 한국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 2020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 지식층의 체제 비판과 개혁 요구」, 『북한학연구』19권 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3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박소영, 「북한의 신해방지구 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김○삼)」,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22. 7. 1. ~ 2022. 12. 31.) 제5권 결정서 모음』, 2023

황병주 외,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책과함께, 20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29>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667_36126.html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311458001?utm_source=url
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74>

이주호 (국사편찬위원회)

한반도의 두 국가는 본래 한 나라였으나, 탈식민 이후 냉전과의 공전 속에서 두 분단국가로 나뉘어 전쟁까지 치루었다. 하지만 절대 서로를 ‘소 닭보듯, 닭 소보듯’ 하지 않았다. 1991년 1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자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영토에도 자국민을 들여보내거나, 자국과 통하는 현지인을 심어놓고자 하였다. 간첩은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는 메시지로 통용되었다. 북한이 보낸 ‘간첩’은 그간 냉전분단시대 한국 사회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이것은 반대 방향에도 마찬가지였다.

간첩 문제는 ‘냉전 속 열전시대’였던 한반도에서 냉전이 양 국가의 인민과 일상생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일상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다. 남한이 북한에 들여보낸 간첩의 실제 파악이나, 북한의 대간첩 정책 등에 대하여 연구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짐작할만한 이유이다. 발표문 역시 사실 규명과 관련하여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어보인다.

그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발표문은 북한의 공식 담론 속에서,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간첩’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간첩 소재를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스케치식으로 다룬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한 편의 연구로 시도한 것은 처음으로 생각된다. 다만 발표문이 인정하듯, 연구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1950년대 북한 사회사 연구의 일환으로 되길 바라면서, 한 편의 일단락된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까하여 몇가지 첨언 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우선 북한에서 사용되는 ‘간첩’의 정확한 내용과 규정을 (자료에서 확인가능한 수준에서라도) 정리해주었으면 한다. 발표문은 언론의 간첩 담론을 정리하여 개념과 정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법과 규정의 차원에서 간첩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본문의 시작이 정전협정 이후인데, 남쪽에서 북한의 영토 내로 들여보내는 인적 교류의 문제는 전시기부터 파악하는 것이 옳다. 전쟁 중 북한의 양쪽 바닷가는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모든 섬은 유엔군이 들여보낸 유격대가 진을 치고 앉아 끊임없이 해상 침투를 했다. 평안남도도 황해도 해안은 치열한 전장이었다. 침투의 방식, 그에 대응하는 북한 기층의 대책 등도 이미 이 때 확립된다.

셋째, 간첩에 대한 북측의 대응도 일련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응책은 인적 침투에 대한 차단 및 이미 내부에 침투한 인원의 활동을 차단하고 적발하는 것이다. 전후 북한의 해상 경비 수준, 그리고 주민의 일상적 이동 및 이동 통제 양상 등을 정리해야 한다.

넷째, 간첩을 ‘파괴 암해분자’와 연동시키는 것은 충분히 더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다. 노동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이 모두 간첩과 연동시켜 (남한에서 들여보낸) 반체제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된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이를 ‘간첩’으로 몰아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체제고위층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해결방식이다. 반체제적·반사회주의적 행동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간첩 문제를 ‘외부와의 소통’이라는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제안드린다. 간첩이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남북을 연결짓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지리적 경계를 북한 영토 전체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북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자국민 접촉을 차단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2024 역사학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자료집>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지역별 특징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

김숙희, 박경민, 정혜인

목차

- I. 서론
- II.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형과 연구성과
- III.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지역별 현황
- IV.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지역별 양상
- V. 결론

I. 서론

한국전쟁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이 두 체제를 유지하며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건인 동시에 한국 사회의 인적, 물적 토대를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극심했다.

민간인이 한국전쟁기에 학살된 사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1960년 5월 11일 있었다. 유족들은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990년대 이후 피학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과거사 조직 및 위원회 출범을 촉발하였고, 학계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했다. 결국 1994년 노근리 민간인 학살대책위가 설립되고, 2004년 3월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¹²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종료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현황조사 및 기초사실조사를 하고, ‘신청인’과 ‘참고인’을 조사해 ‘군경에게 희생된 민간인’ 사건 보고서 110여건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¹²⁵⁾ 여기에서는 그 성과물인 보고서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¹²⁶⁾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민간인이 한국전쟁기에 전국에서

1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회 설립」,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 활동 현황』, 2008, 33-38쪽;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25) 2024년 10월 현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했고, 2025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126)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결과물로 다음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8; 『2008년 하반기

군경에게 학살된 사건의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양상을 파악할 것이며,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학살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복원해 보려 한다.

II.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형과 연구성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한국전쟁기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으로 나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가해주체가 군경이다.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이다.¹²⁷⁾

이 글에서는 군경에게 학살된 민간인 사건을 집중해서 검토하려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수·순천 10·19사건¹²⁸⁾)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구라는 이점으로 개인 연구자나 연구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전국단위 조사를 각 지자체의 협조 하에 진행할 수 있었고, 각 시도군 또는 그 하위 지역 단위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기존의 연구성과물이 토대를 마련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었다.¹²⁹⁾ 크게 다섯 유형, 민간인이 한국 전쟁 이전에 군경에게 학살된 사건, 형무소에 수감된 자들이 학살된 사건,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된 자가 학살된 사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여하였다는 혐의로 학살된 사건, 한국 전쟁 이후에 토벌작전 및 다른 이유로 군경에게 학살된 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치열한 각축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미군정의 정책은 남한 내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대구 10·1, 제주 4·3¹³⁰⁾, 여순 10·19¹³¹⁾ 등이 일어났다. 특히 여순 10·19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기 조사보고서』, 2009: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9: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10.

1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2010, 1쪽.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의 정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제정 2005.5.31, 법률 제7542호)에 규정되어 있다.

128) 이 글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만 다루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추후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129) 이와 관련해 공준환은 80년대에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기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공준환,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 조사의 사회학적 연구-통계생산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2014, 3쪽)

130) 제주 4·3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학살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2000.1.12.)에 근거해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특별법에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전 남한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관련 사망자만 25,000-30,000명에 이른다.(허호준, 「제주4·3 전개과정에서의 5·10선 거의 의미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7호 2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268쪽)

131) 여순 10·19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학살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2021.7.20.)에 근거해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여순 10·19를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

을 가졌고, 2000년을 전후하여 해당 지역민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되었다.¹³²⁾ 이후 여순 10·19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¹³³⁾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³⁴⁾

다음으로 형무소 사건은 형무소에 수감된 정치·사상범,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1945년 해방 직후, 형무소 수용인원은 2,621명이었다. 이듬해인 1946년 7월에는 17,324명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20,008명으로 증가했다.¹³⁵⁾ 1949년 5월, 전국 17개 형무소에 수용된 자는 22,000명이었고,¹³⁶⁾ 1950년 1월, 19개 형무소 수감자는 약 48,000명에 달했다.¹³⁷⁾ 미군정 말, 1948년 봄부터 형무소 수형자 중 정치범이 급증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제주 4·3과 ‘단정단선 반대운동’, 여순사건 등이 있었다.¹³⁸⁾

형무소 사건에 대한 조사는 1960년 국가가 주축이 되어 처음 시작됐다. 제4대국회는 ‘양민학살진상규명특위’를 조직하고, 유족들의 신청서를 받아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조사는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는 정도에서 멈추었다.¹³⁹⁾ 이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형무소 사건을 조사하였다.¹⁴⁰⁾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직후 전국 형무소 재소자들이 CIC와 헌병대 및 각 지역 경찰에게 인계되어 총살되거나 수장된 사건, 재소자들이 열악한 수감상황으로 병사 또는 동사하거나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형무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규명하였다.¹⁴¹⁾ 연구자들도 관심을 가져,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는 2007년 6월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의 진상과 배경”을 주제로 하계워크숍을 진행하였고¹⁴²⁾, 대전형무소를 중심으로 한국 전쟁기 형무소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도 나타났

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132) 황남준, 「전남지방 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반충남, 「여수 14연대 반란과 송옥 교장」, 『말』 9월호, 199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김삼웅 편저,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6; 홍영기,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지역과 전망』 11, 1999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 1998; 『여순사건 자료집 2집』, 1999;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2000.

133) 홍영기, 「여수·순천지역에서의 피해 현황」, 『지역과 전망』 12, 2000;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본 여순사건의 피해상황」, 『4·4과 역사』 창간호, 2001;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 학살」, 『제6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자료집, 2002 등.

134)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1)」, 『2008년 상반기 보고서』, 2009;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2)」, 『2010년 상반기 보고서』, 2011;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 『2009년 하반기 보고서』, 2010.

135) 법무부, 「미군정시대의 행형」, 『한국교정사』, 1987, 448-449쪽.

136) 「남한 17개 형무소 수감자수는 2만 2,000여 명으로 수용 능력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동아일보』, 1949.5.24.

137) 「전국 19개 형무소의 수형자 실태」, 『서울신문』, 1950.1.13.

138) 최정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형무소 실태 연구-행형 제도와 수형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2, 2007, 76-80쪽.

139) 가령, 양민학살진상규명특위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유족들의 신청서를 받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대구시 상월동 240명, 대구시 파동 100명, 파동 가창담 부근 100명, 문경 86명, 대구형무소 1,402명 등 총 2,200여 명의 양민들이 학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한민국국회,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24), 167쪽)

140)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형무소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조사하였다.(「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학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9;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재소자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10;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학살」, 같은 책, 2010;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학살 사건」, 같은 책, 2010; 「중부지역 형무소 재소자 학살」, 같은 책, 2010).

141)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학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진실화해위원회, 2009, 392쪽.

142)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휘보」, 『제노사이드 연구』 2, 2007.

다.¹⁴³⁾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이 한국전쟁 발발일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CIC와 경찰, 헌병,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과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소집·연행·구금된 후 집단학살 된 사건이다.¹⁴⁴⁾ 1988년 『말』지에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이 소개되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¹⁴⁵⁾ 1990년대 중반,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 초기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¹⁴⁶⁾ 2000년대 이후 국민보도연맹의 구성, 학살 자료 분석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⁴⁷⁾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부산, 영동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한국전쟁기에 민간인 학살 중 하나로 접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주도 기관이라는 이점을 살려 전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했다. 각 지역의 유가족을 대면 조사하고 가해자 측 인사를 발굴해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¹⁴⁸⁾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부역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도 많다. 전쟁 발발 후 빠른 속도로 남하한 북한은 남한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점령지역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집행하였다.¹⁴⁹⁾ 이 과정에서 파괴된 시설 복구와 방공호 설치 등을 위해 인력을 동원했고, 군을 위한 물자를 동원하였다. 비상재해복구대를 리 단위로 조직하여 인력을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동원했다.¹⁵⁰⁾ 북한의 빠른 점령으로 피난갈 시기를 놓치거나, 마을

143) 문혜경,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연구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임재근, 「한국전쟁 시기 대전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44)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진실화해위원회, 2009, 303-305쪽.

145) 김태광, 「해방 후 최대의 양민참극 ‘보도연맹’ 사건」, 『말』 30, 1988.

146) 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 37, 1996.

147)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피해대중과 학살이 정치학』, 역사비평사, 2000;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부산·경남지역』, 역사비평사, 2002;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45, 2002;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54, 2004;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한성훈, 『가면 권력:한국전쟁과 학살』, 후마니타스, 2014; 전현수, 「6·25전쟁 전후 영덕군에서의 민간인 학살」, 『대구사학』 140, 2020 등.

148)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괴산·청원(북일, 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영양·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사건」, 같은 책;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책.

149) 1950년 7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동원령”을 공포하였다. 7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고, 선거는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계속되었다.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9개 도의 108개 군, 1186개면, 1만 3654개 이(동)가 대상이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구의 군 면 리(동)인민위원회 선거실시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1951~1952』,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52, 85쪽; 강응천, 『북한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96-202쪽 재인용).

150) 「도로 및 교량피해 복구에 대하여(내무상 박일우→해방구 각도(서울시) 내무부장, 1950. 8. 7.)」; 「도로 및 교량 피해복구에 대한 긴급지시(경기도 내무부장 장수련 경기도 내무부 제3부장 김학훈→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남아있어서 피난이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은 부역에 응해야 했다. 1950년 9·28 서울 수복 후 남한은 무분별하게 부역자를 색출했다.¹⁵¹⁾ 국회에서는 무분별한 색출 방지를 위해 입법을 했지만,¹⁵²⁾ 이미 수많은 민간인이 전국에서 부역 혐의 또는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법하게 학살되었다. 관련하여 부역자 처벌의 위헌성을 밝히는 연구성과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¹⁵³⁾ 한국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 진도·충남 부여·당진, 경기도 고양, 경북 성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⁵⁴⁾

한국전쟁기 또 다른 민간인 학살로 군경의 토벌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다. 9·28 이후 남한 지역의 대부분은 군인과 경찰에 의해 수복되었지만, 각 지역의 산악지대에는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이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불갑산, 백야산, 화학산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게릴라 활동이 이어졌다.¹⁵⁵⁾ 이에 육군은 후방지역 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을 창설하고 유격사령부와 제2사단, 제5사단, 제9사단, 제11사단을 배속하였다.¹⁵⁶⁾ 영광 보름달 작전, 고창 선산포위작전, 거창·함양·산청 지역 토벌작전¹⁵⁷⁾ 등 국군 제11사단과 경찰토벌대의 합동작전으로 인해 피난 중이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군경의 토벌작전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고,¹⁵⁸⁾ 출범 이후에는 토벌 작전 중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각 시군 내무서장, 1950. 8. 10.); 「내무성령 제31호 비상재해복구대에 대한 규정(내무상 박일우, 1950. 8. 6.)」, 『1950년 비문서집(동면분주소)』, RG 242, SA 2010, 5/119;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동원정책과 ‘공화국 공민’만들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2012, 2-11쪽 재인용.

151) 당국에서는 사사로운 감정, 불완전한 정보로 많은 양민이 피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기관의 과학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검·경찰 합동수사본부(이하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했다. 합동수사본부는 10월 13일-10월 28일(12시 현재) 사이에 부역자 심사를 했고 총 9,984건 가운데 석방 결정이 4,307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같이 무죄 석방이 다수에 달하고 있는 것은 한 때 치안대·자위대 등의 난립이 그 원인이었다. 이에 관하여 합동수사본부 부장 김창룡 대령은 2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문 내용 “9월 24일 입경 당시에는 각 동회 치안대·자위대 등이 난립하여 빨갱이 숙청이라 하여 무차별 체포로 인하여 치안상태가 매우 혼란하였”다 라는 내용에서 당시 부역자 색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부역자 적발에 만전 군경합동수사본부 설치코(하고) 본격 활동」, 『동아일보』, 1950. 10. 22.; 「합동수사본부, 1만여 건의 부역자 심사」, 『경향신문』, 1950. 10. 30.)

152) 국회에서는 무분별한 색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했고, 12월 1일 법률로써 확정된 부역행위 처벌법에 근거해 과반 동 중앙심사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 또 동법에 근거해 각도 위원 각 5명을 당해 주민 중에서 각 도 의원이 추천하고 29일 국회사무처에 보고하였다. 서울·경남·제주 각도를 제외하고 추천된 도 심사위원 명단은 신문에 발표되었다.(「국회, 부역자심사위원 각도별로 추천」, 『경향신문』, 1950. 12. 1.)

153)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여름호, 199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2(2), 2000;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36, 2010;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형성과정과 적용」, 『사회와 역사』 91, 2011; 김득중, 「부역자 처벌의 논리와 법의 외부」 『사회와 역사』 103, 2014;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8, 2018 등.

154)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신기철,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 금정굴 사건으로 본 민간인 학살』, 자리, 2011; 이윤갑, 「한국전쟁기 경북 성주군의 부역자 처벌과 피학살자유족회 활동」 『한국학논집』 47, 2012.

155) 박동찬,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분석(1950.6~1951.4)」, 軍史 第 49號,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245쪽.

15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54쪽.

157) 거창과 함양·산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1996.1.5.)에 근거해 조사되었다. 이 법에서는 “거창사건등”을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학살자들의 유해 발굴도 진행되었고, 2000년 이후 이와 관련된 자료집 및 연구성과도 나타났다.¹⁵⁹⁾

이상과 같이 해방 후-한국전쟁 시기 균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연구는 과거사위원회 출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그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대체로 초창기 연구는 침묵을 강요 당했던 사건을 재조명하여 역사 앞으로 이끌어 내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학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진행 과정, 학살 규모 등을 입증하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학살의 책임과 가해주체를 공식화 하는 작업도 중시되었다. 해방 후-한국전쟁기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 학살된 민간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집단이었는지, 또 가해주체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고 학살되었는지를 밝혀낸 것도 주요한 성과였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먼저 지역별 연구가 불균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으로 전국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피해 통계 및 분석, 피해 유형에 따른 지역별 민간인 학살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주목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각종 보고서 및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남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형을 지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50건이다. 150건의 희생사건 보고서를 분석하여 파악한 민간인 희생자 수는 약 14,000여명이다.¹⁶⁰⁾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파악한 각

158) 박동찬, 같은 논문, 2003; 최정준, 「6·25전쟁 기 경찰의 후방지역작전 수행 전례 분석:지리산 및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제24집 제3호, 2019; 김윤미, 「6·25전쟁기 지리산 빨치산 ‘토벌’과 공군의 항공작전」, 『역사학연구』91, 2023 등.

159) 박선주, 「4·3 희생자 유해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6, 제주4.3연구소, 2006 ; 김창후, 고성만, 「4·3희생자 유해 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6, 제주4.3연구소, 2006 ; 고성만, 「4·3희생자 유해발굴, 유류품을 통해 본 4·3」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 이상길, 「사려로 본 유해 발굴의 과제와 전망」 『제노사이드연구』 4,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 박선주, 「영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소고(小考)」 『忠北史學』 20,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8 ; 안신원,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7, 중부고고학회, 2008 ;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 한국의 전사자-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연구」 『기억과 전쟁』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 설은경,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희생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고찰 : 해방 후~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 2013 ; 노용석, 「‘장의’에서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역사와 경계』 95, 부산경남사학회, 2015 ; 노용석, 「과거사청산에서 사회적 의례의 인식」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박근태, 「제주 4·3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성과와 사회적 의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6, 한국고고학회, 2022 ; 박경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6, 한국고고학회, 2022 ; 노용석, 박상현, 김동수, 「한국전쟁기 부산 경남지역 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현황과 향후 전망 분석 : 2021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 박경민, 「한국전쟁기 섬에서의 민간인 학살 -전남 진도 갈매도 유해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7, 한국고고학회, 2023 ; 박경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4 ; 박문수 「‘기억전쟁’의 현장을 다녀오다 : 충남 아산시 염치읍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가톨릭 평론』 43, 우리신학연구소, 2024

160)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 신청 접수된 사건을 조사결과 및 진행과정에 따라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진실규명은 접수된 사건의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신청 희생 인정으로 명명한 뒤 보고서에 명단을 기재하였다. 그 외 미신청 희생 추정자도 있다. 150여개의 보고서는 희생자 수치 산출에 있어서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신청접수 되어 부번(附番)된 경우만 희생자로 인정하여 산출한 경우, 미신청 희생 인정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경우 등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150여개 사건보고서에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르므로, 각 개별 사건보고서에서 집계한 희생자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지역별 희생사건의 특성, 희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고, 반세기 이상 시일이 지나 발생사건 모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계적 접근을 통해 대체적인 양상과 지역별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지역에 따른 유형별 희생자 분석틀에서 ‘군경의 토벌 작전 중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된 민간인’과 ‘토벌 작전 중에 학살된 민간인’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두 경우 모두 토벌 작전 중 학살된 민간인으로 간주하였다.

III.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지역별 현황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역과 사건유형을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하나의 보고서에는 신청된 사건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인지한 사건이 혼재되어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유족이 조사를 신청한 사건 보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조사 개시단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위원회의 조사 속도, 조사 범위 등의 환경에 따라 인근 지역을 묶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령,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괴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보고서’를 검토해 서울·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로 구분하였고, 각 도는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해 피학살자 통계를 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은 다섯 유형 즉 전쟁 전 토벌 작전 중 발생한 학살사건(이하 전쟁 전), 형무소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이하 형무소),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이하 보도연맹),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 학살사건(이하 부역), 전쟁 후 토벌 작전 중 발생한 학살사건 및 기타 학살사건(이하 토벌 및 기타) 등 다섯 개의 사건 유형으로 구분했다.

<서울·경기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서울		3	1	4	1	9
가평				32		32
강화				139	183	322
고양				102		102
김포				140		140
남양주				118		118
안성			1			1
안양			1			1
양주				1		1
양평				58		58
용인				2		2
인천			10	56	27	93
파주				4		4
평택			12			12

먼저 한국전쟁기 북한군이 가장 빠르게 점령했던, 서울·경기도에서는 부역사건으로 발생한 피학살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토벌 및 기타 사건으로 피학살된 비율은 전체의 23%였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초기에 서울 점령을 목표로 한 북한군의 주요 공격로 였고, 평야지대가 많아 탱크로 이동하기 용이한 지역인 동시에 한강과 서해를 오갈 수 있는 수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군이 점령한 시기가 빨랐던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강화, 김포, 파주, 고양 등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인 6월 28일에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¹⁶¹⁾

	전쟁전	형무소	보도 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포천				11		11
화성				2		2
합계		3	25	669	211	908

악하고 있었고, 강화도가 한국전쟁 전까지 인천, 서울, 개성, 연백을 잇는 해로상 중요한 지역

<강원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강릉				7		7
삼척				11	20	31
양양				1		1
영월				3	14	17
원주			1	4	2	7
인제				2		2
춘천				2		2
평창				1		1
횡성			2	1	2	5
합계			3	32	38	73

라 북상하면서 삼척, 강릉, 주문진의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를 습격해 피학살자가 발생하였다. 국군이 삼척 일대를 재탈환 때는 1951년 3월 말부터 4월 초였다.¹⁶⁴⁾

<충청남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공주	1	38	26	3		68
논산			1	14		15
당진			14	133		147
대전	32	214	57	5		308
보령			12	51		63
부여			10	11		21

경기도 내에서도 강화, 김포, 고양, 남양주 등지에서 학살된 민간인 수치가 높았다. 특히 강화에서는 서울·경기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피학살자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군과 미군이 서해안 및 그 부속 도서를 장악하였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¹⁶²⁾

강원도에서는 부역사건, 토벌 및 기타 사건이 각각 44%, 52%를 차지한다.¹⁶³⁾ 피학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삼척은 영동지역에서 가장 늦게, 1950년 7월 1일 북한군에게 점령되었고, 9·28 수복 이후인 10월 2일 국군에게 수복되었다. 북한군은 국군의 북진으로 고립되었고, 잔여 병력 제5·7·8사단은 동해안 산악지대를 따

충청남도에서는 부역사건으로 학살된 수치가 전체 사건의 72%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대전이 점령된 1950년 7월 21일부터 9·28 수복 때까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 한국정부는 6월 27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7월 16일 대구로 후퇴했다. 경찰은 7월 7일 천안과 온양에서 후퇴했고, 같은 달 12일 당진과 서산에서 후퇴했고, 17일

161)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초에 경기도 지역 대부분을 수복했다. 경기도 경찰국은 10월 1일 수복 되었다.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10, 367-368쪽)

162)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2003, 728~729쪽.

163) 강원도는 한국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의 남쪽 진격로였고, 9. 15. 인천상륙작전 당시에는 한국전쟁의 중심지였으며, 이후에는 북한군의 퇴각로였다. 이와 같은 지리 특성을 고려하면, 강원도 특히 서남부 지역에서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민간인 사건은 한국전쟁 이전, 인민군 점령기, 1·4후퇴 이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강원 서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40-443쪽)

164) 국군은 1951.3.22.에 강릉, 4. 4에 주문진을 재탈환하였다. 1951.7.10.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1953. 7. 27. 휴전협정 조인 시까지 강원 중동부 전선은 물론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 영동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 전투 및 습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342-344쪽)

	전쟁전	형무소	보도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서산			49	1021		1,070
서천				6		6
세종연기			9	4		13
예산			1	44		45
천안				21		21
청양			1			1
태안			110			110
홍성			13	207		220
합계	33	252	303	1520		2,108

있었다. 특히 대전은 충남 전체 피학살자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형무소 사건으로 학살되었다. 정부는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대전 이북지역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를 대전으로 이송했다. 군 당국은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좌익수, 전과 3범 이상의 강력범을 인계받아 대전 산내면 낭월동 골령골로 끌고 가 사살했다.¹⁶⁷⁾

<충청북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괴산			132	1		133
단양			1			1
보은			26	9		35
영동			56			56
옥천			54	8		62
음성			9	11		20
제천			5			5
진천			8	1		9
청원			273	13		286
청주		19	3	1		23
충주			19			19
합계		19	586	44		649

다.¹⁶⁹⁾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피학살자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발생했다.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특히 영천, 포항, 영덕 등지에서 수치가 높다. 이 지역은 1945년 해방 직후 외곽지역(봉화, 영

대전에서 후퇴했다. 이때부터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 충남은 9월 29일 대전에 국군이 들어오면서 행정력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당진에는 10월 5일 경찰이 진주했고, 서산, 홍성에는 10월 7일에 진주했다.¹⁶⁵⁾

서산, 홍성, 당진 등에서 부역사건으로 피학살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 지역들은 예산과 함께 강력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이 위원회가 군 행정과 경찰력을 장악했던 곳이었다.¹⁶⁶⁾

충남에는 공주형무소, 대전형무소가

충청북도에서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자들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그중 청원에서 학살된 자가 46%로 가장 많다.

국민보도연맹 충청북도연맹은 1949년 12월 13일 결성되었고,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찰, 헌병대 등에게 학살되었다. 충북에서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자들이 많았던 배경과 관련해 일찍이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익 성향이 강했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¹⁶⁸⁾ 미군정 역시 '남한에서 우익이 가장 강한 도'라는 판단을 내릴 정도였

165)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10, 674-678쪽.

166) 「예산지역에서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의 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 2009, 445-446쪽.

167)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 2009, 509-511쪽.

168) 브루스 커밍스 저, 김자동 옮김, 「충청도 인민위원회」,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416-423쪽.

169)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8, 552-556쪽.

<경상북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경산			78			78
경주	3		34	49		86
고령			32			32
구미			14			14
군위			13	5		18
김천		19	50	7		76
대구	7	79	67	1		154
문경			38	21		59
봉화			8		5	13
상주			45			45
성주	1		3	2		6
안동		9	26	85		120
영덕			138		34	172
영동			6			6
영양			8		17	25
영주			2	6		8
영천	263		240			503
예천				33		33
울진			28			28
의성			57	6		63
청도			43			43
청송			2		18	20
칠곡	7		30			37
포항			180			180
합계	281	9	808	132	74	1,819

온양이 7월 7일경 점령된 점을 고려하면, 경북은 매우 늦은 시기에 점령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50년 7월 전후기에 포항 일대에서 보도연맹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증된다.¹⁷¹⁾

<경상남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경상남도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계
거제군(거제시)	54		48		55	157
거창군	19		36		12	67
고성군			17	1		18
김해시			272			272
남해군			9			9

양, 영덕, 문경, 상주, 경주)에서 인민위원회가 통치 기능을 수행하였고, 강력한 인민위원회가 존재한 지역에서는 농민조합 활동도 활발했다. 물가가 높고 식량이 부족해 미군정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면서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했고, '대구 10·1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칠곡, 고령, 군위와 영천 등지로, 영주, 영덕, 영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0·1 사건이 진압되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좌익인사들은 대구 인근 운문산, 팔공산, 영천 보현산 등으로 입산해 '빨치산'으로 활동했다.¹⁷⁰⁾ 이와 같은 정황은 영천에서 발생한 전쟁 전 학살 사건의 배경이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피학살된 자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이 북한군에게 점령된 시기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1일경 안동, 영덕지역에 진출했고, 8월 11일경 포항을 점령했다. 충남 천안,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자에 대한 학살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었고 피해 또한 많았다. 다른 지역은 1950년 7월경 보도연맹 사건이 마무리 되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같은 해 8월까지 이어졌고, 마산, 울산, 부산에서는 9월까지

170) 대구 주변 지역인 의성, 군위, 달성, 성주, 고령, 영천, 경산, 청도, 선산, 칠곡 등에도 인민위원회가 존재했고, 안동, 군위, 의성, 달성, 영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다른 세력들과 대립·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10, 288-290쪽)

171)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 2010.

경상남도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계
마산시	4	310	57		1	372
밀양군 (밀양시)	4		55			59
부산시	2	136	45			183
사천군 (사천시)	4		22			26
산청군	179	1	29	3	36	248
양산군			97			97
울산군 (울산시)			870			870
울산시	2		6		1	9
의령군			20			20
진주시	2	32	120	1	2	157
창녕군	1		51			52
창원군 (창원시)			69			69
통영군 (통영시)			17		37	54
하동군	18		51	1		70
함안군			56			56
함양군	103		26	1		130
합천군	5		47	5		57
계	397	479	2020	12	144	3052

지 지속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보도연맹으로 전체의 66%에 이르는 피살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울산, 김해, 진주 등에 많았다.¹⁷²⁾

경상남도에서는 형무소 사건으로 전체의 16%에 이르는 피살자가 발생했다. 부산, 마산, 진주 형무소 재소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경상남도 각 지구 CIC, 헌병대, 경찰, 형무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희생 장소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골짜기나 산고개가 많으며 지역적 특성상 해상에서 수장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¹⁷³⁾

경상남도에서 전쟁 전 사건으로 피살된 자는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거창, 사천, 함양 등의 서부지역은 여순 10·19 이후 지리산, 괘관산, 황석산, 백운산, 덕유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해졌고,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지리산지구전투사령

부 등으로 불렸던 반군 토벌사령부의 토벌 작전도 증가하였다.¹⁷⁴⁾ 군경은 토벌 과정에서 '빨치산'의 보급 활동을 막고 민간인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산간마을을 소개하거나, 통비분자 색출을 명분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을 연행, 사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¹⁷⁵⁾ 한편 거제도에서는 토벌과정에서 야산대 활동 및 야산대 협조 혐의로 마을 주민들이 희생되었다.¹⁷⁶⁾

경남 서부지역에는 토벌 및 기타 사건 피살자도 많았다. 9·28 서울 수복 이후,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및 지방 '빨치산'은 산악지대로 이동하였고, 지리산 자락의 마을은 1951년 2-3월까지 그들의 해방구였다.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백악전 전투사령부, 지역 경찰서 및 사찰유격대 등은 토벌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좌익활동 혐의, '빨치산'과 내통 혐의, 부역혐의 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했다.¹⁷⁷⁾

172) 경상남도 국민보도연맹원 피학살자 현황을 파악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부산, 마산, 양산, 거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기진, 『끝나지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4쪽; 전갑생,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경계』 56, 부산경남사학회, 2005, 34쪽)

173) 진주형무소에서는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과 마산 형무소에서는 7월-9월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집단학살이 발생하였다.(「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327-328쪽;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II)」, 『2010 상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13쪽)

17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49-50쪽.

175)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100쪽.

176) 거제도에서는 남로당 불법화 이후 좌익 세력이 1948년 '2·7 구국투쟁'을 거치면서 '야산대'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야산대의 활동이 잦아들지 않자 마산에 주둔하던 16연대와 호림부대 거제도에 파견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9, 548-552쪽)

<전라북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계
고창군			1	4	451	456
군산시 (옥구군)		9	6	2	3	20
금산군			2			2
김제시	2		4		1	7
남원시			2		91	93
무주군	2		5		4	11
부안군			8		2	10
순창군					135	135
완주군					22	22
익산시 (이리시)			10			10
임실군	21		7		95	123
장수군				4	1	5
전주시 (완주)		71	1			72
정읍시			8		14	22
진안군				4	1	5
계	25	80	54	14	820	992

전라북도의 학살은 토벌 및 기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고창, 순창, 임실, 남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좌익세력의 활동 근거지였던 지리산이 남원과 가깝고, 전북도당이 회문산(순창군 쌍치면)에 근거지를 뒀던 영향이 컸다.¹⁷⁸⁾ 형무소 사건을 보면, 전주형무소에서는 7사단 3연대 군인이 가해의 주축이 되었고, 군산형무소에서는 소속이 불명확한 군 헌병과 경찰이었다.¹⁷⁹⁾

보도연맹 사건은 전체 학살사건의 6%를 차지하고, 이리(익산), 정읍, 부안 등지에 발생했다. 가해주체는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 CIC, 헌병대였다. 학살된 자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

두하였다가 구금되었다. 좌익 활동 경력에 따라 ‘갑종’은 1950년 7월 초순경 희생되었고 나머지는 전북지역 경찰서의 후퇴 직전인 7월 중순경에 집단 사살되었다.¹⁸⁰⁾

전쟁 전 사건으로 학살된 자는 임실이 많았는데, 1948년 ‘2·7’, 여순 10·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⁸¹⁾ 김제와 무주에서도 좌익혐의나 ‘빨치산’의 협조 등의 이유로 경찰에게 학살되었다.¹⁸²⁾ 전라북도 지역이 여순 10·19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쟁 전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은 더 많았을 것이다.

전라남도도 전국에서 피학살자가 가장 많았다. 전쟁 전부터 여순 10·19의 여파로 이미 많은 학살이 발생했고, 보도연맹으로 피학살된 자도 많았던 지역이었다.

먼저 전쟁 전 사건은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177)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727-728쪽; 「서부 경남 (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197쪽.

178)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부역혐의를 이유로 학살된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 사례는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토벌 및 기타로 분류했다. 따라서 위 <표>의 부역사건 피살자 수치는 왜곡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군경의 공비 토벌작전에서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리거나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여기서 부역혐의자는 ‘빨치산’ 등의 좌익혐의자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157쪽;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371쪽

179)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459-460쪽;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다-588) 경정결정」, 『2010년 하반기 조사보고서-경정결정-』, 2011, 9-10쪽

180)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11쪽.

181) 임실 경찰은 1948년 ‘2·7’과 여순사건 이후 관내의 좌익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청운면 석두리와 남산리 주민을 포함한 좌익 관련자들을 임실경찰서로 연행한 후 집단 학살하였다. (진실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311쪽)

182)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188-192쪽.

<전라남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강진군					3	3
고흥군	2		6		3	11
곡성군	11		7	1	2	21
광주시(광산군)	6	55	20		28	109
구례군	195		7		3	205
나주군	11		23	1	235	270
나주시					102	102
담양군	13			6	109	128
목포시	1	39				40
무안군	2		9	6	15	32
보성군	107		43		17	167
순천시(승주군)	447	8	27		13	495
신안군	2				28	30
여주시(여천군)	124		48	4	10	186
영광군	24		4		132	160
영암군	13		10	12	291	326
완도군	89		113		219	421
장성군	10		18	7	131	166
장흥군	3		2		23	28
진도군			5	3	13	21
함평군	57		82		543	682
해남군	21		53	141	68	283
화순군	50		1	10	176	237
계	1188	102	478	191	2164	4123

발생하였다.¹⁸³⁾ 여수·순천 사건 이후, 좌익세력은 함평 일대 군유산과 불갑산을 근거지로 활동했고,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¹⁸⁴⁾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은 함평, 해남, 완도에서 많이 집계되었다.

토벌 및 기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학살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¹⁸⁵⁾ '빨치산'은 1951년 하반기까지 격렬하게 활동했고,¹⁸⁶⁾ 그에 상응한 군경의 토벌작전은 민간인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다. 학살된 민간인은 '빨치산' 혐의, 부역 혐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되거나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특히 나주, 담양, 영광, 영암, 완도, 장성, 함평, 화순 등에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은 월출산, 국사봉, 화학산, 백아산, 불갑산, 군유산 등 산악지대가 발달한 곳이었다. 영광은 바다로 탈출하려는 좌익세력이 몰려들어 수복이 늦어졌다.

부역으로 학살된 민간인은 해남이 가장 많았다. 해남에서는 부역자를 선별하고 처형하는 과정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해남 경찰은 1950년 9·28 이후부터 10월 23일까지 관내 13개 읍·면을 모두 수복하고¹⁸⁷⁾ '시국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역자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점령기 인민위원회 가담자, 우익인사 살해자, 지서 방화자, 마을 구장, 국민보도연맹 가족 및 단순 가담자 등을

183) 여수·순천에는 1948년 10월 22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정부의 강경 진압 정책으로 학살 피해가 급증했다. 그러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법률 제 69호로 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당시 계엄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순천지역 여순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665-670쪽)

184) 해남에서는 1946년 '해남추수봉기' 관련자들이, 완도에서는 1947년 '메이데이 집회' 등과 관련한 민간인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해남·완도군-」,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326-327쪽, 432쪽) 이 밖에도 전남 각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50년 7월경 전남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헌병대에게 집단 사살되었다.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3-74쪽)

185) 이 수치에는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부역혐의로 학살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186) 임송자,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과 지역민」, 『동북아역사논총』 67호, 동북아역사재단, 2020, 291쪽.

187) 『해남군사』, 1995, 557쪽.

검거하거나 자수토록 하여 지서와 농협 창고 등에 구금한 후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하였다.¹⁸⁸⁾ 형무소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나 1·4후퇴 직후에 광주형무소, 목포형무소,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하였다.¹⁸⁹⁾

<제주도 민간인 학살> (단위:건)

	전쟁전	형무소	보도연맹	부역	토벌 및 기타	합계
제주시			216			216
서귀포시			209			209
기타			4			4
합계			429			429

제주도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1년 늦은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실시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이후, 한라산을 거점으로 하는 ‘빨치산’세력이 거의 소멸했다. 정부와 군경당국은 이 시기부터 제주4·3 관련자를 비롯해 한라산에 피신했다 돌아온 귀순자와 그의 가족 동향을 사찰하고 집중

관리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시찰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¹⁹⁰⁾ 제주도의 위치도 주요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1950년 8월 하순 부산에서 제주도로 피난을 준비하였다.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할 경우, 정부와 국군은 제주도를 근거지로 전투해야 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치안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¹⁹¹⁾

제주·서귀포경찰서는 관할지서에 예비검속 대상 주민을 연행·구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제주경찰은 경찰서 유치장 및 주정공장 창고, 서귀포경찰서는 절간 고구마 창고에 관내 예비검속자들을 구금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계엄령 상황 속에서 경찰의 치안 및 예비검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경찰에게 예비검속자들을 인계받아 군 트럭에 태웠고, 제주읍 정뜨르 비행장 또는 산지향 바다로 싣고 가 총살하거나 수장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전쟁기에 전국 각 시·군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수치화 해 표로 정리해 보았다. 다음의 그림은 다섯 유형의 학살사건과 피학살자의 수치를 지도 상에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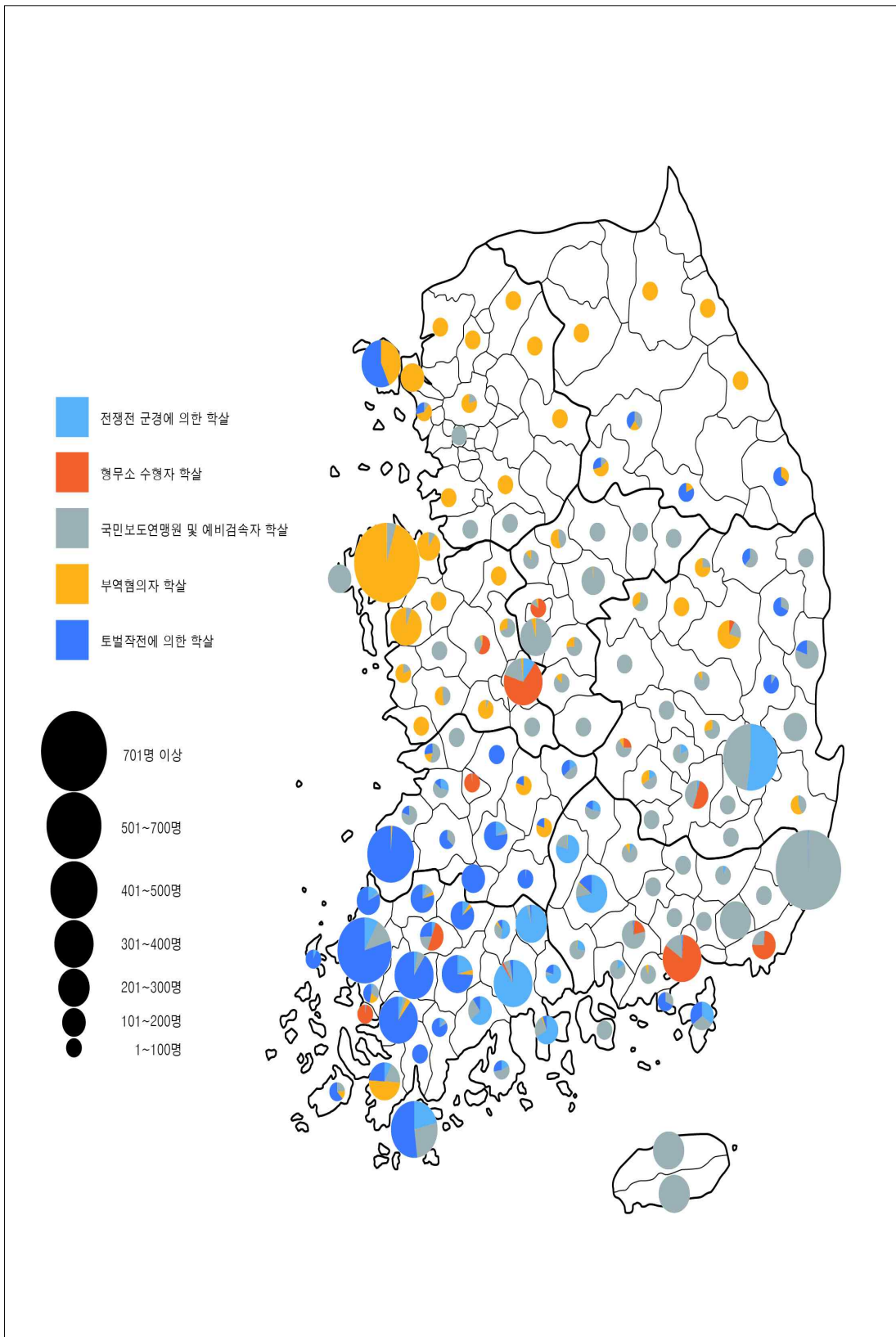
188) 이 과정에서 해남경찰서장의 승인 없는 처형을 금지하였으나 각 지서에서는 그 지시를 어기고 자의적으로 처벌하였고, 해남경찰은 그것을 인지하고도 상부인 전남도경찰국에 ‘전투 중 사망’ 또는 ‘도망자 사살’ 등으로 보고하였다.(『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8, 493-494쪽)

189) 광주형무소는 20연대 헌병대 5중대 소속 군인이 가해자였고, 목포형무소는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이, 순천경찰서 유치장은 순천경찰서 경찰이 가해자였다. 목포형무소에는 여순 10·19 관련자, 제주 4·3 관련자 등이 수감되었고,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여순 10·19 관련자들이 재판 대기 중에 있었다.

190)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67-768쪽.

191) 김00 진술(해병대 제0대대장, 2007.8.23., 2007.9.7., 2007.9.14.);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25-426쪽.

<그림 1 전국 민간인 학살 사건>



IV.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지역별 양상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군경이 생산한 문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사건 경위를 작성하면서 활용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은 한국전쟁 당시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각 시군에서 피학살자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고, 학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의 진술을 활용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보려 한다.

먼저 서울·경기도에서는 강화, 김포, 고양 등지에 피학살자가 집중해 발생했다.

강화에서는 1950년 9·28 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강화면을 중심으로 12개 면에서 부역사건이 발생하였다.¹⁹²⁾ 이 사건의 가해자는 치안대 및 특공대였다. 이들은 강화도 서도면 주문도, 강화면, 선원면 등지에서 부역 혐의자들을 연행하고 각 지서, 지서 인근 양조장·곶간 등에 구금하였으며, 갑곶나루, 옥림리 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부역사건의 가해자는 김포경찰서와 치안대였다. 김포 하성지서 소속 경찰은 “1.4 후퇴 때 여기 창고에 김포면 전체에서 잡아 온 사상불순자가 남았더랬어요. (후퇴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포까지 차로 어떻게 다 데리고 가느냐,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필이면 하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성국민학교 뒤에서 갑자기 그냥. 급하니까. M2 같은 총으로다 바바방 하고 얼른 쏘고 내뺐지요.”라고 진술했다.¹⁹³⁾ 학살 과정에 재판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와 치안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학살자가 연행되고, 구금된 장소 그리고 학살된 장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고촌면에 거주하던 자는 고촌지서 양곡창고로 연행, 구금되었고 천등고개 방공호에서 사살되었다. 대곶면에서 거주하던 자는 대곶지서 창고로 연행, 구금되었고 소사리고개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 즉 같은 면에 거주하던 자들은 같은 장소로 연행, 구금되었고 학살된 장소도 같았다.¹⁹⁴⁾

고양에서 발생한 부역사건의 학살 경위 양상도 비슷했다. 고양경찰서 경찰이 1950년 9월 28일 수복된 직후부터 지역 치안을 주도했고, 치안대는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았다.¹⁹⁵⁾ 태극단 또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9일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태극단원은 “그날 아침에 조○○ 부단장이 태극단 집합하라고 했어. 이○○이 혼시켰어요. “서장이 나한테 요구하기를 부역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문산경찰서(그 때 파주경찰서가 아니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경찰병력이 약하니까 태극단이 호송을 맡아 달라”그래. 태극단원들이 거의 다 갔어..”라고 했다.¹⁹⁶⁾

강원도에서 피학살된 자들은 군경의 토벌 작전과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되었고,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의 대가로 학살되었다. 국군의

192) 강화에서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라 1950년 10월 3일 강화의 우익청년단체를 통합하여 강화치안대가 조직되었고, 1951년 1·4후퇴고 군경이 후퇴하자 강화특공대가 재편되었다.(「강화(강화도·석도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학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08, 655-656쪽)

193)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7.8.23.): 「김포 부역혐의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8, 39-41쪽.

194) 「김포 부역혐의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8.

195) 치안대는 경찰 복귀 이전부터 지하활동을 하던 태극단, 대한청년단, 낙오 군경 등 우익인사들과 북한군 측에 의해 학살당한 인사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9.28 수복과 함께 보복 차원에서 부역혐의자를 연행하였다.

196) 이○○ 진술(2006.12.12.) 녹취록 13쪽 ; 「고양 금정굴 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 2007.

작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빨치산'에게 집을 지어주었다는 이유로 토벌되었고, '산사람' 중 '높은 사람'의 가족, 북한군 점령기에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역혐의자가 됐다.¹⁹⁷⁾

충남에서 부역사건으로 학살된 경위는 서울·경기도와 유사했다. 가해자는 군경이었고, 거주지가 같은 자들은 같은 곳으로 연행, 구금, 학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산에서 발생한 부역사건의 가해주체는 서산경찰서, 치안대 그리고 해군이였다. 서산경찰서, 관할 지서는 읍·면 창고와 경찰서·지서 유치장에 민간인들을 구금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에서 경찰서 및 지서 관계자가 부역자를 3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했다.¹⁹⁸⁾ A로 분류된 자는 처형 내지 경찰서 이송, B는 재분류 후 '처형'과 '훈방' 결정, C는 훈방되었다.¹⁹⁹⁾ 이 중 '처형'으로 분류된 자는 서산군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등 각 읍·면의 특정 장소에서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각 지서는 이 사항을 서산경찰서에 보고했다. 또 서산군 근흥면에 상륙한 해군은 주민 수십 명을 안흥항 바위와 인근 해안에서 집단으로 살해했다.²⁰⁰⁾

1950년 9·28 수복 후 홍성경찰서 유치장 각 동에는 70~80명이 구금됐고, 총 8동에 500~600여 명의 사람들이 구금됐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소향리 붉은고개로 끌려가 집단으로 살해되었다.²⁰¹⁾ 유족들은 큰 구덩이 3개에 수많은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시신이 부패되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²⁰²⁾ 홍동면 피학살자도 많았다. 홍동면에서는 경찰이 복귀하면서 치안대에게 총을 지급하였다.²⁰³⁾ 주민 200여 명은 부역혐의로 홍동지서 옆 곡물창고에 구금되었다.²⁰⁴⁾ 학살지는 송월리 모래강변, 월현리 금광구덩이, 홍동국민학교 뒷산, 홍동지서 뒷산 등이었다. 특히 송월리 사금을 캐던 모래강변은 100여 명이 넘는 부역혐의자들이 치안대와 지서 경찰에 의해 집단살해된 장소였다.²⁰⁵⁾

대전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28일경부터 7월 17일 새벽 사이 최소 1,800여 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1950년 6월 30일에 '좌익에 대한 처리'명령과 '일반사범에 대한 석방'명령이 결정되고, 7월 1일 새벽에 명령이 하달되면서 시작됐다.²⁰⁶⁾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원은 재소자신분장으로 국가보안법, 포고령, 국방경비법위반 등 좌익사범과 10년 이상의 일반사범을 분류하는 일에 참여했고, 분류된 재소자와 예비검속된

197) 학살은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덕풍마을 앞산, 정라항 앞바다,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백사장, 팔송정 뒷산 등지에서 행해졌다.〔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삼척군·영월군·원주군·횡성군-〕,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43-452쪽

198)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 형사 정○○ 등 경찰 관련 참고인들은 부역자를 분류할 때 'A·B·C'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당시 지곡지서 지서장 이○○은 '가·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서산·태안 부역혐의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9, 620쪽

199) 참고인 최○○ 진술녹취(2008.4.8); 참고인 이○○ 진술녹취(2008.4.18); 「서산·태안 부역혐의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9, 629쪽.

200) 「서산·태안 부역혐의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9, 781-782쪽.

20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3.18.);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3.16.);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633-635쪽.

202) 신청인 장○○ 진술조서(2007.8.30.); 참고인 장○○ 진술조서(2010.1.11.); 참고인 장○○ 진술조서(2010.1.11.); 참고인 장○○ 진술조서(2010.1.11.);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633-635쪽.

20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6.);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645-648쪽.

20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6.)

20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1.16.); 참고인 최성운 진술조서(2010.1.14.);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645-648쪽.

206) 참고인 이○○ 녹취진술록(2009.2.13.); 참고인 이○○ 녹취진술록(2009.1.30.);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학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14쪽.

보도연맹원 등은 형무관들에게 묶여서 헌병들이 징발한 트럭에 실려 산내 골령골로 호송되었다.²⁰⁷⁾ 호송된 자들은 준비된 구덩이에서 학살됐다.²⁰⁸⁾

충청남도에서는 부역사건으로 발생한 피학살자 수치가 높았던데 비해, 충청북도에서는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자의 수치가 높았고 그 가운데 청원이 가장 많았다.²⁰⁹⁾

청원에 거주하는 임○○은 “이승만 정권부터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당시 마을의 젊은 남성들은 좌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마을 여론과 구장의 권유에 따라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²¹⁰⁾ “마을 구장과 반장이 품앗이도 하고 비료나 고무신을 타려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남편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보도연맹 가입도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¹¹⁾

이와 같은 경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들은 경찰이 교육이나 점검 등을 이유로 불시에 소집하면, 반드시 지서나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오창창고에서 살아 남은 김○○은 “보도연맹원이 된 후 매달 1회 정도 오창지서 주관 하에 불시에 소집점검을 하여 오창 도로변 큰 마당에 모여 제식훈련과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창창고사건 발생 이전까지 7~8회 정도 소집점검이 있었는데, 마을 일을 보던 소염이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징을 치면 마을 마당에 모여 오창에 가곤 했지요. 무척 괴로운 일이었어요.”라고 했다.²¹²⁾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는 1950년 6월 30일-7월 11일에 연행·구금·학살되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김○○은 “7월 8일 오전에 들에서 논을 매고 있던 중 징소리를 듣고 가보니 마을 마당에 (마을 청년) 4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총을 멘 지서 직원 1명과 소방대원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오창지서까지 걸어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전쟁이 난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¹³⁾

연행하는 자도, 연행되는 자도 학살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은 “저는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난 것을 알았으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방송을 들었기에 아군이 진천까지 밀려 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7월 8일경 마을에 오창지서 송○○ 순경이 혼자 칼빈총을 메고 와 마을 일을 하던 소염 임○○을 통해 보도연맹원들을 모았습니다. 30여 명 정도 모이자, 송순경은 우리를 6km 떨어진 오창지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집점검 정도로 알고 따라갔습니다.”, “소집자인 송순경도 계엄하러서 군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와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지

207)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2.11.);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9.1.30.);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학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16-217쪽.

208) 산내 골령골에는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경찰이 사전에 산내 주민들과 청년방위대를 동원하여 파놓은 구덩이이었다.(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3.10), 참고인 우○○ 진술녹취록(2009.3.10),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9.3.10),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9.1.30);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2.11);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학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17쪽)

209) 위원회에서 조사한 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고서는 총 3건이다. 이 가운데 오창창고 사건을 다룬 보고서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충실하게 인용하였다.(「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2009; 「괴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210) 신청인 임○○ 진술조서 3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557쪽.

211) 신청인 박○○ 진술조서 3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557쪽.

212) 참고인 김○○ 1차 진술조서 4쪽; 2차 진술조서 2-3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560쪽.

213) 참고인 김○○(현장 생존자) 1차 면담보고서 4쪽; 2차 면담보고서 3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564쪽.

만 자신이 데려가던 보도연맹원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²¹⁴⁾

가해자는 군인 및 경찰이었다. 당시 특설자경대원은 “헌병 5-6명 정도가 지서와 오창창고 주변을 돌아다녔고 경찰은 헌병들의 지시대로 움직였”다.²¹⁵⁾ 또 한 군인은 “당시 수도사단 1연대 보병으로서 진천전투에 참가했다가 청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오창을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같은 부대 동료에게 듣기로는, 그 때 창고 안에 갇힌 사람들이 지나가는 군인들을 북한군으로 알고 함석판을 두들기면서 북한군 만세 등을 외치자, 후퇴 군인들은 자신이 북한군에게 포위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그 소리가 창고에서 난 것을 알고 창고 안을 열고 확인한 뒤 총격을 가했다”라 하였다.²¹⁶⁾ 지다가던 군인의 목격담도 있다. 김○○는 “진천 잣고개전투에 참전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오창창고 부근을 지나갈 때 아군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¹⁷⁾

경상북도에서는 전체 피학살자의 28%가 영천에서 발생했다. 영천에서는 전쟁 전 사건으로 263명, 보도연맹 사건으로 240명이 학살되었다. 전쟁 전 학살 사건의 배경에는 1946년 10월 사건이 있다. 경북의 경우 1946년 10월 2일에서 6일 사이 22개 군에서 주민 봉기가 발생했는데 영천은 봉기가 가장 격렬했던 곳 중 하나였다.²¹⁸⁾ 사건의 가해자는 영천경찰서 및 각 지서 경찰, 외지 경찰, 국군,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이었다.²¹⁹⁾

영천에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피학살자가 있었다. 그리고 피학살자의 절반가량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연행되었다. 이때는 국군이 영천 부근까지 후퇴한 시기이기도 했다.²²⁰⁾

영천군 화북면 자천지서 경찰은 “근무하면서 영천경찰서에서 내려오는 보도연맹원 검거지시를 경비전화로 직접 받은 적이 있다. (중략) 경찰 1명이 몇 개의 부락을 담당하였으며 민보단,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했다.²²¹⁾ 이 진술에서 학살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및 대한청년단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참고인들은 “1950년 8월 초 소개 명령이 난 뒤 동민들이 전부 다 피난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나가는데 삼창지서 배주임을 비롯한 경찰과 구전동 동장이 마을 입구에서 있었다. 그들은 보도연맹 명부를 쥐고 피난민 중에 보도연맹원들을 싹 다 뽑아서 데려갔다. 이때 실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도 끌려갔고 가입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많았다. (중략) 끌려 간 사람들은 영천경찰서 뒤 창고에서 만났다고 들었다. 그리고 영천에 북한군이 들어오기 직전 경찰들이 후퇴할 때 가둬둔 사람들을 한꺼번에 눈을 가리고 사바리차(군용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하였다(하

214) 참고인 김○○(현장 생존자) 1차 면담보고서 6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564-565쪽.

215) 참고인 김○○(당시 오창지역 특설자경대원) 진술조서 7쪽; 신청인 반○○ 진술조서 5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612쪽.

216) 참고인 황○○(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 군인) 통화보고서 1-2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620쪽.

217) 참고인 김○○, 당시 수도사단 8연대 장교, 진술조서 4-5쪽;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620쪽.

218)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777-780쪽.

219) 위원회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영천에서 학살된 민간인을 다섯 그룹으로 정리했다. 첫째 10월사건 관련자 또는 입산하지 않은 남로당 가입자, 입산 후 자수자 중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람, 둘째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 셋째 입산자의 심부름을 한 산간지역 주민, 넷째 구장.마을 대표 등 지역유지 중 일부, 다섯째 토벌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사살된 주민 등이다.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818-820쪽)

220)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72쪽.

221) 참고인 서○○ 면담보고서(2009.2.12.);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82쪽.

략)”하고 했다.²²²⁾

영천에서 민간인이 학살된 장소는 아작골(절골), 자양면 벌바위, 대창면 용전리(어방리) 개망골, 고경면 내 골짜기, 북안면 내 골짜기 등지였다. 현장을 목격한 고경면 주민은 “골짜기에 가보니 젊은 사람들의 시체가 겹겹으로 누워 있었어. 손을 함께 묶어 (절벽 앞에) 일렬로 세워서 총을 쏘아 하나 죽으면 옆인 사람들이 같이 골짜기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일렬로 세워서 총을 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 시체가 첩첩이 쌓이지.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 시체에 바람이 들고 부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²²³⁾ 그래서 유가족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 신청인 구○○도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임고면 아작골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골짜기가 어른 키 이상 될 정도로 깊었다. 그 골이 다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한 채 죽어 있었고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들이 부패되어 있어 결국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 하였다.²²⁴⁾

영덕에 거주하는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이후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 또는 소집되어 지서에 구금되었다. 영덕경찰서 경비계 순경은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보도연맹원 20여 명을 서장(경감 박주현)의 명령에 의해 뒤편에서 구덩이를 파고 총살하였다”라고 하였다.²²⁵⁾ 강구지서 경찰은 7월 14일 새벽 6-7시경 보도연맹원들의 손을 뒤로 하여 포승줄로 묶은 채 경비정에 싣고 나갔다. 주민들은 보도연맹원 30-40명을 실은 경비정이 강구 앞바다로 나가고 얼마 후에 총소리를 들었다.²²⁶⁾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희생 장소는 울진군 기성면 어티재, 강구 앞바다, 영덕읍 화개리 뒤편 등지였다.

경상남도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자는 전체의 66%에 이르고, 울산에 가장 많았다.²²⁷⁾

울산지역 예비검속은 7월경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CIC가 예비검속을 명령하면 울산경찰서 사찰계에서 각 지서로 지시를 내리고, 각 지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들이 대상자들을 연행하였다. CIC는 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지서까지 내려가기도 하였다.²²⁸⁾

연행된 연맹원들은 갑·을·병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에서 갑·을 등급은 유치장에, 병 등급은 연무장에 구금되었다.²²⁹⁾ 구금 장소는 매우 좁았다. 조그만 가마니 하나에 다섯 명이 있

222) 참고인 황○○·황○○·황○○도 면담보고서(2009.2.18.); 참고인 황○○ 통화보고서(2009.6.15.);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46-47쪽.

223) 참고인 최○○ 진술녹취록(2009.4.16.);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42-43쪽.

224) 신청인 구○○ 진술조서(2008.2.28.);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25)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93쪽.

226) 참고인 신○○ 진술조서(2007.11.15.); 신청인 이○○ 진술조서(2008.10.24.); 신청인 박○○ 진술조서(2009.5.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7.8.);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7.8.);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7.10.);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2010, 291쪽.

227) 경상남도 국민보도연맹원 피학살자 현황은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그 외에도 부산, 마산, 양산, 거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4쪽; 전갑생,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경계』 56, 부산경남사학회, 2005, 34쪽)

228) 참고인 김○○(당시 중남지서장); 참고인 추○○(당시 서생지서 의용경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참고인 출장조사보고」(조사3팀-198, 2007.10.22.);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961-964쪽.

었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어서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장소가 좁아서 무릎을 끌어 안고 있었다. 또 날씨가 더웠고 씻지 못해서 냄새가 많이 났다.²³⁰⁾

유가족들은 사망여부, 사망일 및 장소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유가족은 1960년 4·19 이후에 유족회를 결성하고, 유해발굴이 진행되면서 온양읍 대운산과 웅촌면 '오복재'가 학살장소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인 및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학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행된 자들은 낮에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밤에 손이 묶인 채 총을 맨 경찰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이송되었다. 그리고 트럭은 빈 채로 되돌아왔다. 경험자 이○○는 "8월 15일 초저녁에 사복을 입은 3명에게 끌려 울산경찰서에 1주일 간 구금되었다. 경찰은 8일째 저녁 구금 중이던 사람 중에서 명단을 불렀고 호명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으며, 다음 날 새벽에 이들은 차에 실려 떠났는데 아침 7시경에 돌아온 차에는 경찰들이 총만 가지고 내렸다."라고 하였다.²³¹⁾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들 역시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와 김해경찰서 경찰에게 예비검속되었다. 검속된 자들은 좌익활동 경력 및 사상 정도에 따라 갑·을로 구분되었고 김해경찰서 유치장, 김해읍사무소 창고, 김해전매소 창고 등지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80일에 걸쳐 2-3일 단위로 군용트럭에 실려 나갔고,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한림면 안하리 가자골, 창원군 동면 덕산리 덕산고개, 창원군대산면 일동리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 등지에서 학살되었다.²³²⁾

전라북도의 민간인 학살은 토벌 및 기타 사건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고창, 순창, 임실, 남원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원인은 '빨치산'의 활동 근거지였던 지리산, 회문산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 일대로 토벌작전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²³³⁾

피학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고창이었다. 가해자는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제11사단 군인, 전북 경찰, 고창 경찰 등이었다. 전국학련 고창군 2대지대장은 "당시 작전이란 것이 큰 작전은 군인들이 하고, 지방 작전은 경찰이 했는데, 군인, 경찰, 학도의용대, 청년단, 맹호대, G-2가 이리저리 얹혀서 했다."라고 했다.²³⁴⁾ 또 당시 고창 경찰이었던 참고인 이○○은 "6중대는 1950년 11월 중순 고창지역에 들어와서 두 달 정도 있다가 8중대와 교체하였"고, 고창에 주둔하면서 해리·심원사건, 선산사건, 상하 오룡사건 때 고창 경찰, 군경 유가족회, 향토방위대, 고창학련원 등을 동원하여 군경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진술에서 학살의 가해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²³⁵⁾

229) 참고인 김○○(당시 연무장 경비근무자) 진술조서 6쪽;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961-964쪽.

230) 참고인 백○○,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출장조사 결과보고」(조사3팀-222, 2007.11.02.); 참고인 김○○(참전경찰, 울산경찰서 연무장 경비근무자) 진술조서 7쪽;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961-964쪽.

231) 이○○, 「익견진술신청서」, 신청인 김일생(사건번호 다-3060호)의 제출서류.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8, 966-968쪽)

232) 「김해 국민보도연맹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233)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군경의 토벌작전 중에 부역혐의자가 학살된 사례가 많았지만, 부역사건이 아닌 토벌 작전 중 피살된 자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역혐의 실제 수치는 <표 00> 보다 더 많을 것이다.(「순창지역 민간인 학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09, 157쪽; 「고창지역 민간인 학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371쪽).

234) 참고인 신○○ 면담녹취록(2010.1.26.);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544쪽.

23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17.);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학살은 재판 없이 진행되었다. 고창 공음면 사건현장에서 구사일생한 이○○의 진술을 보면, “나는 남산마을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옥산저수지 앞밭에 갈 때까지 계속 구타를 당했다. 총살 직전에 총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덕분에 살아났다. 장교로 보이는 지휘관의 명령으로 기관총을 설치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아무런 조사나 선별과정이 없었다.”²³⁶⁾

피살된 자들은 민간인이었다. “당시 미수복지역은 '빨치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작전을 하다보면 '빨치산'인지 양민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또 작전 중 동료가 사상을 당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무조건 적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되었다.”²³⁷⁾ 상하면 하장리에서는 “산봉우리마다 보초를 세웠다. 왜냐하면 군경은 우리를 '빨치산'과 구분을 못하고 보이는 대로 쏘았고 주민들은 군경을 보면 일단 무서워 내뺄는데 내뺄다고 쏘아 버리니까 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초를 세웠다. 그래서 그날도 저수지 건너 마을 뒷산에서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다 같이 흥농으로 피난을 나가는데 뒤쳐져 있던” 자들이 경찰에게 사살되어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²³⁸⁾ 상하면 용정리에서는 토벌대가 “아들이 피란나가고 없자 '빨치산' 가족이라는 구실을 뒤집어 씌웠다.”²³⁹⁾ 또 무장면 옥산리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피란을 간 집에 할머니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90세가량의 할머니를 죽인 일이 있다.”²⁴⁰⁾

학살 장소는 바닷가, 밭 등지였다. 해리·심원 사건에서는 군경토벌대가 삼면을 포위, 바닷가 쪽으로 도망가는 피난민들을 붙잡아 학살했고, 선산 사건에서는 주민들이 피난하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몰려오는 주민들을 붙잡아 새끼줄로 손목을 묶고 옥산저수지 앞 밭으로 끌고 간 다음 기관총을 난사해 학살했다. 또 상하면 사건에서는 집마다 수색하고, 집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 학살하거나 굴속에 들어간 피난민들을 나오게 한 다음 바닷가에 세워놓고 집단학살하였다.²⁴¹⁾

전라남도는 토벌 및 기타 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이 전체의 52%에 해당한다. 함평, 나주, 영암 등 불갑산, 월출산이 있는 산악지대에서 많았다. 특히 함평에서는 20연대가 최초로 나타난 1950년 10월 22일경부터 1952년 2월 사이에 학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3대대,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등이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을 만나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충실히 남겼다. 참고인 장○○은 “군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니까 군인들이 없는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라 하였고,²⁴²⁾ 오○○는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이 공

8], 2010, 543쪽. 또 공음면 향토방위대장이었던 참고인 정○○은 “1951년 1월 말 이○○에게 실탄을 얻으러 가보니 교체되고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7.19.);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543쪽)

23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7.7.);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429쪽.

237) 참고인 홍○○ 진술조서(2007.12.2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7.12.29; 2010.1.2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7.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11.2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12.6);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7.6.28.);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540쪽.

238)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9.11.26);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467쪽.

239) 신청인 노귀상 진술조서(2009.9.23);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469쪽.

24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4.15);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447쪽.

241)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 2010, 539쪽.

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²⁴³⁾. 또 참고인 윤○○는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 와서 자신들이 주민들의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으며, (중략)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했다.²⁴⁴⁾

송사2리 해안마을 주민은 1950년 12월 12일 아침밥을 먹은 후었는데 갑자기 총소리를 들었다. 당시에 피난 가지 못한 노약자는 군인에게 사살됐다. 또 불갑산 폭도가 군유산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교전하였는데, 폭도가 산으로 쫓겨 간 후 마을에 불을 질러 남아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젊은 사람들은 미리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그러지 못하였다.²⁴⁵⁾

민간인은 '빨치산' 혐의, 부역 혐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되거나 현장에서 사살됐다. 농장마을 주민 박○○는 경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북한군에게 협조하였고, 경찰이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작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신하였다. 박○○는 3일 뒤 경찰에게 붙잡혀 손불지서로 연행되었다. 그는 경찰이 선별한 14명과 함께 포박당한 채 한청사무소로 끌려갔고, 다음날 산당고랑에서 사살됐다.²⁴⁶⁾

제주도에서는 많은 민간인이 보도연맹으로 학살됐다.

1950년 6월 25일, 제주도 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 관할 경찰서에 요시찰인 및 불순분자를 일제히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북한군이 진도까지 내려오자, 사상범을 검거하라는 상부명령이 있었고, 사찰계는 제주4.3사건 당시 공비 활동자와 그 가족, 친족 등을 예비검속하였다.²⁴⁷⁾

경찰은 의용소방대 보조를 받아 보도연맹원을 연행, 구금하였다.²⁴⁸⁾ 모슬포경찰서에서는 경찰계통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자를 인계했고, 모슬포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예비검속자들을 군 트럭을 이용하여 총살 장소로 이송했다. 경찰에서 대상자를 검속하고, 군 정보대로 정보를 넘기면, 군 정보대에서 처리하였다.²⁴⁹⁾ 해병대 모슬포부대 대원들은 1950년 7월 16일-20일경에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에게 인계받고, 그들을 군 트럭에 실어 첫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고 가서 총살했다. 부대원들은 1950년 8월 20일에도 민간인을 학살했다.²⁵⁰⁾

242) 참고인 장○○, 진술조서 4쪽, 2006. 6. 28; 「함평 11사단 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07.

243) 참고인 오○○,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함평 11사단 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07, 523-532쪽.

244) 참고인 윤○○ 진술서(2007.5.17.); 「함평 11사단 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07, 523-532쪽.

245)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3.5.); 신청인 노○○ 진술조서(2008.4.23.);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120쪽.

246) 신청인 박○○ 진술조서(2008.5.19);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76쪽.

247) 참고인 강○○ 진술(모슬포 경찰서 보안계, 2007.4.20.); 참고인 고○○ 진술(제주도 경찰국 사찰과, 2006.9.22.);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15-416쪽.

248) 의용소방대가 낮에 예비검속자들이 수감된 지서 창고 경비를 담당했고, 경찰이 밤에 경비를 담당했다.(참고인 변○○ 진술(무릉지서 의용소방대원, 2006.5.18., 2006.6.1.);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28-429쪽)

249) 김○○ 진술(해병대 제0대대장, 2007.8.23., 2007.9.7., 2007.9.14.);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425-426쪽.

250) 「제주 예비검속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396쪽.

V. 결론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인 연구자 또는 개별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은 전국 각 도·시·군별로 담당지역을 정하고, 유족을 대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가해자 측 명단을 발굴해 해당 인물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지역은 부역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이 많았다. 강원도의 경우 토벌 및 기타 사건의 수치가 가장 높았지만 부역사건의 수치도 적지 않았다. 이 지역은 북한군이 일찍 점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 강화, 김포, 파주, 고양 등지는 6월 28일 북한군에게 점령됐고, 강원도 삼척, 영동은 7월 1일에 점령됐다. 천안과 온양에서는 7월 7일에, 당진과 서산에서는 7월 12일에 경찰이 후퇴했다. 경찰과 군인이 일찍 후퇴한 지역 주민은 이른 시기부터 북한군의 점령정책에 동원되었고, 전쟁 초기부터 부역에 응해야 했다.

이 지역들은 북한군에게 일찍 점령된 동시에 국군 및 경찰에게 일찍 수복된 곳이었다. 서울은 9월 28일에, 경기도는 10월 1일에 대부분 수복되었고 충남 천안·온양은 10월 4일에 당진, 서산은 10월 5일, 7일에 수복되었다. 이로 보아 북한군이 빨리 점령하고, 국군 및 경찰이 빨리 수복한 지역은 부역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 수치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이 많았다. 경상북도는 북한군이 늦게 점령한 곳이고, 경상남도는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많은 곳이었다. 제주도 역시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다. 충청북도는 우익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는 북한군이 늦게 점령했거나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라는 이유로 학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던 지역에서 피학살자 수치가 높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서부지역은 토벌 및 기타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이 많았다. 이 지역들은 산악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을 포함한 좌익세력이 지리산, 회문산 등지로 들어갔고, 그 지역에서는 토벌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유사점이 있다. 즉 전라북도와 남도, 경상남도 서부지역은 토벌 작전 중에 학살된 민간인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학살자의 성격이나 학살방식이 달랐다. 부역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은 CIC, 경찰, 태극단, 청년단 등이 주민을 연행하고 지서, 창고에 구금했으며, 일정 장소로 이송해 학살하였다. 고양에서는 태극단이 경찰의 요청으로 학살장소로 호송했고, 홍성에서는 경찰이 치안대에게 총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청원에서는 평상시 보도연맹원을 불시에 소집하고, 경찰이 주민들을 모아 오창창고로 연행, 구금하였다. 경찰, 청년단 등이 민간인을 연행, 구금, 학살하는 과정은 조직적이었다.

토벌 및 기타 사건의 학살자는 국군 11사단, 경찰 등이었다. 당시의 작전이란, 큰 작전은 군인이 하고 지방 작전은 경찰이 했으며, 군인, 경찰, 학도의용대, 청년단, 맹호대가 이리 저리 얹혀서 하는 것이었다. 또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는 명을 내리면, 소속 중대 군인은 지시를 이행하는 작전이었다.

민간인은 부역자의 가족, 부역 혐의를 이유로, 품앗이를 하기 위해 비료나 고무신을 타기 위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또 군인이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마을에 불을 지르는 상황에서 몸을 피하지 못한 노약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를 활용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을 살펴보았다. 다만, 그 과정에는 유족이 신청 안 한 사건, 조사 중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성과물을 수용해 보완할 것이다.

발표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인 끊임없는 관심 끝에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많은 한계가 있었음에도 ‘과거사 정리’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1쪽) 하지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뜻밖에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 정부에 의한 ‘희생 인정’ 또는 배·보상의 대상으로 변모·축소된 데에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민감 자료’의 입수에 있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신진 학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조사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이 연구는 하나의 연구 이상의 의의를 가집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14년 이후에야, 그것도 한국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서야 이것이 시도된 점에 한국현대사 전공자로서 많은 반성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 발표문이 아직까지도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²⁵¹⁾로 남아있는, 수많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현대사 전공자인 저 역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시도하지 못 했습니다. 발표자들과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하나마 발표에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이 연구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연구 역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주의’에 의거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6~7쪽) 하지만 그 외에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지역별 민간인 학살의 특징을 보여줄 때 고려해야만 하는, 여러 가법지 않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조사 시점에 따라 ‘희생 확인’과 ‘희생 추정’, 그리고 ‘진실규명 불능’의 비율이 달라졌던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경우 조사가 늦게 시작되었을수록 ‘진실규명 불능’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제일 먼저 조사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보고서가 발간된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으로 삼은 진실규명대상자 159명이 모두 ‘희생 확인’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여, 부산과 마산, 진주의 형무소에서 최소 3,417명의 재소자가 ‘희생’되었음을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조사에 착수하고, 가장 마지막에 보고서가 발간된 ‘중부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으로 삼은 진실규명대상자 47명 중 단 한 명만이 ‘희생 확인’ 결정되었고, ‘희생 추정’은 두 명인 데 반하여 ‘진실규명 불능’은 44명에 달했습니다. 사

25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제1조(목적).

건의 전체 규모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 질병, 추위,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도 모두 ‘희생 확인’ 결정하였던 데 반하여, 가장 늦게 조사에 착수한 ‘중부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및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 질병, 추위,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사 착수 시점에 따른 ‘진실규명 불능’ 비율의 변화는 정권의 교체 등에 따른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보수화가 한 가지 원인인데, 그렇다면 ‘진실규명 불능’의 비중 증가는 비단 형무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경우, 지역별로 조사 시점이 언제였는지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시간과 예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조사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일례로 ‘피해자 현황조사 및 기초사실조사’의 경우 시행된 지역보다 그렇지 못 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비단 1기 진실화해위원회만의 한계는 아니지만, 각 경찰서의 신원조회기록 등 지역별 피학살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 역시 불균등하게 입수되었습니다. 또한 활동 종료를 앞두고는 각 조사관들 사이에 조사 현황이 활발하게 공유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군경 및 형무관의 진술이 동일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보고서에서는 활용되지 못 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는 홍보의 부족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이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유족들이었습니다. 1·2기 진실화해위원회 모두 ‘신청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몰라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 한 수많은 유족들을 직면해왔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족과, 각지의 접수 공무원들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될 수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신청되지 못 하였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족과 공무원들이 직계가족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제3자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를 고려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덧붙여 기존 연구 및 집계계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및 교차검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소재 자료를 활용하여 해방 후 남한 지역의 정치 동향과 폭력의 양상 등을 전국에 걸쳐 파악한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와,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과 형무소 재소자 학살,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한 북한 측의 보도를 정리한 신경득의 연구²⁵²⁾,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등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유족회의 자체 집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 및 집계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도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제목에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명시하여 분석의 폭을 보다 명료히 제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와 더불어 이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252) 신경득,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싶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신청을 못 한 유족들뿐만 아니라, 신청을 안 한 유족들도 다수 만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1949년 11월 기준으로 최소 1,380명에 달하는 ‘자수·전향자’가 파악되고, 충남 서산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 직후 400~500명에 달하는 국민보도연맹원이 대전으로 이송되었음이 유족 증언과 미군 기록으로 밝혀졌음에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각각 8명과 6명의 진실규명대상자만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13명과 49명의 ‘희생자’만이 규명되었습니다. 홍성의 경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12명의 진실규명대상자만이 진실규명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사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희생자가 신청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다른 사료 속에서 파악되는 학살 규모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학살 규모의 차이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전쟁 당시 그 수많은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는 오늘날 왜 진실규명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도, 이 연구는 유의미한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